

월간
재정포럼 8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10년 8월호 제170호

- 현안분석** • •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김진수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연도 경험을 중심으로/ 박노욱

정책토론포트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외

주요국의 조세동향 • 영국 긴급예산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부동산과 허위의식 · 손재영
현안분석	06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 김진수
	24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연도 경험을 중심으로 · 박노욱
정책토론포트	51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61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공공정책포럼	74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주요국의 조세동향	80 영국 긴급예산 의회 제출 외
정책흐름	94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102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
	103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106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
	109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112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114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재정통계	120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외
이슈 & 포커스	156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23.6% 외



부동산과 허위의식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원장

또 다시 인사청문회 태풍이 몰아치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총리, 장관,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문제는 단골 메뉴가 되었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에게 거세게 추궁을 하던 국회의원들도 정작 자신이 같은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운동권 출신이든 교수 출신이든 부동산 논란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은 공통적이고, 아마도 남 비난하기 좋아하는 언론인들도 실제 뒤져보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번에도 위장전입의 그물에 걸려든 후보자들이 여럿이다. 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대법관이 위장전입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는다.

위장전입의 목적은 자녀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려고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국회는 자녀교육 목적에 대해서는 다소 관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추궁하는 듯하지만, 꼭 두 가지 목적이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의석 수에 따라 좌지우지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던 장상 전 총리서리 같은 분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각오해야

인사청문회에 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최고 엘리트층이다. 결국 이들이 대표하는 한국의 엘리트들은 한결같이 불법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인가? 필자는 법이 있으면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을 각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장전입이나 부동산 투자가 법을 정해서 막아야 할 정도로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위장전입을 통해서든 아니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택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비난이 쏟아진다. 이렇게 비난을 퍼붓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부동산을 가지고 돈 벌지 말아라”는 것이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돈을 벌

면 상관없지만 부동산은 건드리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주장은 부동산, 특히 주택은 자산이 아니다, 또는 자산이어서는 안된다는 믿음을 반영한다.

그러나 주택을 포함한 모든 부동산은 자산이다. 투기 의혹을 비난하는 신문도 그 지면만 넘기면 어디에 투자해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기사가 가득하다. 남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 버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도 결코 자기 집값이 올랐을 때 그 차익을 사회에 헌납하거나 기부하지 않는다. 자신과 관련되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부동산이 자산증식 수단임을 당연시하면서,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중 잣대를 들이대기에 워낙 익숙하다보니 이제는 그런 위선에 대해서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물론, 부동산을 통한 자산증식, 특히 여러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투기를 비난하고 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내가 집을 여러 채 가지기 때문에 남이 집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 그 예이다. 주택을 나누는 배분기제가 그 같은 제로-섬 게임이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주택의 총 수가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택은 토지와 자본이 결합되어 얼마든지 생산될 수 있는 상품이다. 볼펜이나 사과 같은 재화에 비해 생산기간이 길어서 단기적으로 그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힘들 뿐이다.

다주택 보유, 비난의 대상이 아닌 순기능 감안해야

현재와 같이 미분양 주택이 넘쳐 나는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주택을 사서 자산증식을 도모하도록 한다면, 건설회사는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 밀린 월급과 하도급 대금을 줄 수 있고, 다주택자가 소유한 집들이 임대 시장에 나오면 무주택자가 셋집 구하기 쉬워진다. 훗날 집값이 오를 때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서 집값 상승의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 다주택 보유는 결국 아무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러한 완충작용이 부동산경기 사이클의 진폭을 줄여왔다고 생각된다. 참여정부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강력히 억제하면서부터 이러한 자생적 경기조절기능이 쇠퇴하였고, 그 결과가 현재의 주택경기 침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부동산, 특히 주택을 사고팔아서 자산증식을 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

부동산, 특히 주택을 사고팔아서 자산증식을 하는 데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러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까지도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

.....
국민들에게는
그 도덕률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만, 그러한 인식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까지도 이와 다르게 행동한다. 이들 엘리트 계층에게 죄가 있다면, 자신도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도덕률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위선이다. 국민들에게는 그 도덕률을 지키라고 법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기회만 있으면 빠져나가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치인들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자신도 꼭 지켜야 할 법이라고 생각했다면, 부동산에 대해서도 현재와 같이 과중한 세금이나 규제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제에 주름살을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집단 위선에서 벗어나는 인식전환이 있어야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금 부담을 낮추고, 공직자 인선 때마다 벌어지는 사회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KIPF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김진수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연도 경험을 중심으로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미국 IRS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 동향과 시사점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jjnskim@kipf.re.kr)

체납정리 인프라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자 최근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나 관련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I. 서론

조세체납은 납세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그 이행기간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즉, 국세(관세 제외), 관세 및 지방세의 납세자가 각각 그 납세자에게 부과된 세금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을 조세체납이라고 한다. 부과된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한 조세체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누적체납액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재정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자진납세 의욕을 저하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우리나라 국세(관세 제외)체납 현황을 살펴보면 확정된 조세채무 중에서 납부되지 않는 조세체납의 비율이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체납발생총액은 19조 3,560억원으로 징수결정액 174조 6,073억원의 11.1%에 달한다. 또한 체납발생액 중에서 현금으로 정리하지 못하고 결손처리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2008년 기준으로 체납발생액 중에서 결손정리된 금액은 6조 9,577억원으로 현금정리 7조 1,061억원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 우리나라 조세체납의 특징은 한편으로는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조세가 가능한 현금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부터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 출국규제제도, 관허사업제한제도,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제도, 체납·결손자료

를 신용정보기관 제공하는 제도 등의 체납정리 인프라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정리 인프라의 성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자 최근에는 미국과 호주 등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국세나 지방세 등의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러 전문가나 관련 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체납징수업무를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를 장기간 논의한 결과, 민간에 위탁했다가 민간위탁의 운영결과를 검토한 후 다시 민간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에서는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미국의 연방세 체납 현황 및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책방향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체납징수업무를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것인지를 장기간 논의한 결과, 민간에 위탁했다가 민간위탁의 운영결과를 검토한 후 다시 민간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미국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II. 미국의 조세체납 현황

1. 조세체납 현황

미국의 조세체납 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체납발생총액에서 차지하는 본세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2,162억달러로서 체납발생총액의 75%를 차지하였으며, 가산금과 가산세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734억달러로서 체납발생총액의 25%를 차지하였다. 2007년의 체납발생총액은 2,901억달러로서 징수결정액 2조 6,915억달러의 1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비율은 2002년 14.2%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10% 초반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징수불가능한 체납조세는
파산, 경제적 어려움,
납세자 소재불분명, 징수유예와
같은 이유로 징수할 수 없는
조세채권을 의미한다.

〈표 1〉 미국의 조세체납 현황

(단위: 십억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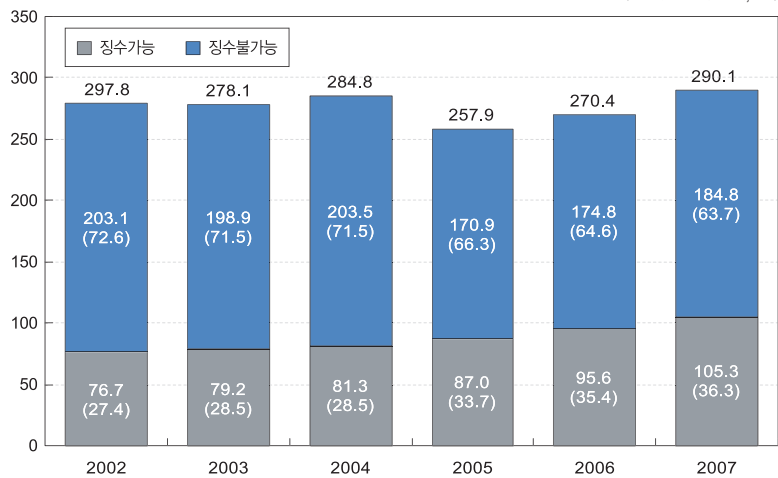
연도	본세 (A)	가산금 · 가산세 (B)	체납발생총액 (C=A+B)	징수결정액 (D)	C/D
2002	180.9	98.8	279.8	2,016.6	13.9
2003	182.6 (0.9)	95.5 (-3.3)	278.1 (-0.6)	1,952.9	14.2
2004	190.9 (4.5)	93.9 (-1.7)	284.8 (2.4)	2,018.5	14.1
2005	184.5(-3.4)	73.4 (-21.8)	257.9 (-9.4)	2,268.9	11.4
2006	198.9 (7.8)	71.5 (-2.6)	270.4 (4.8)	2,518.7	10.7
2007	216.2 (8.7)	73.4 (2.7)	290.1 (7.3)	2,691.5	10.8

주 () 안은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GAO(2008), p. 28; IRS, *SOI Data Book*, 각 연도

체납발생총액 중에서 징수가능한 체납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7.4%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36.3%를 기록하였으며, 징수불가능한 체납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72.6%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7년에는 63.7%를 기록하였다. 징수불가능(non-potentially collectible)한 체납조세는 파산, 경제적 어려움, 납세자 소재불분명, 징수유예와 같은 이유로 징수할 수 없는 조세채권을 의미한다¹⁾.

[그림 1] 체납발생 총액의 구성

(단위: 십억달러, %)



자료: GAO(2008), p. 28

1) GAO(2008), p. 13

징수가능한 체납조세은 징수 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active collection status)과 그러하지 않은 사건(non-active collection status)으로 구분된다. active collection status는 체납고지, 전화연락, 직접연락 단계로 구분하며, 본격적인 징수 단계를 거치지 않는 상태인 non-active collection status는 대기 사건, 보류사건으로 분류된다. 대기사건은 다음 단계의 징수절차를 거치기 위해 담당자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며, 보류사건은 자료 부족으로 징수가 보류된 사건이다. 대기사건의 대기기간이 365일을 초과하면 보류사건으로 넘어간다.

징수가능한 체납조세 중에서 징수절차를 밟고 있는 사건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2년 62.2%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75.3%를 기록함으로써 실제 징수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건의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체납정리의 내역은 현금정리, 경정,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구분된다. 2007년 기준으로 체납정리된 금액 중에서 현금정리의 비율은 41.0%이며, 경정의 비율은 28.0%이다. 또한 소멸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비율은 31%이다.

<표 2> 징수가능 체납조세의 처리 현황

(단위: 십억달러, %)

연도	active collection status				non-active collection status			합계 (C=A+B)
	체납고지	전화연락	직접연락	계(A)	대기사건	보류사건	계(B)	
2002	14.3	13.3	20.1	47.7 (62.2)	21.5	7.6	29.1 (37.9)	76.7 (100.0)
2003	13.7	15.4	21.5	50.6 (63.9)	21.3	7.3	28.6 (36.1)	79.2 (100.0)
2004	15.8	14.6	23.4	53.8 (66.2)	20.8	6.7	27.5 (33.8)	81.3 (100.0)
2005	21.1	21.5	24.5	67.1 (77.1)	15.0	4.9	19.9 (22.9)	87.0 (100.0)
2006	21.4	17.9	32.7	72.0 (75.3)	19.5	4.0	23.5 (24.6)	95.6 (100.0)
2007	22.8	19.6	36.9	79.3 (75.3)	22.0	3.5	25.5 (24.2)	105.3 (100.0)

주: () 안은 합계에 대한 비중임.
자료: GAO(2008), p. 29.

체납정리의 내역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금정리, 경정,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구분된다. 2007년 기준으로 체납정리된 금액 중에서 현금정리의 비율은 41.0%이며, 경정의 비율은 28.0%이다. 또한 소멸시효완성으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비율은 31%이다. 경정(abatement) 사유는 다양한데, 연방 내국세법 제6404(a)조에서는 세액이 과도한 경우, 제한기간 경과 후 부과, 실수로 또는 위법하게 부과된 경우에 국세청에 경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체납고지는 우리나라의
임의징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체납자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이다.

〈표 3〉 체납정리 내역별 비중

(단위: %)

연도	현금정리	경정	소멸시효완성	합계
2002	41.0	23.0	36.0	100.0
2003	34.0	25.0	41.0	100.0
2004	37.0	20.0	43.0	100.0
2005	30.0	24.0	46.0	100.0
2006	39.0	28.0	33.0	100.0
2007	41.0	28.0	31.0	100.0

자료: GAO(2008), p. 15.

2. 체납징수 절차

가. 체납고지(notice)

체납고지는 우리나라의 임의징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가산세와 가산금을 포함한 납부세액을 고지하고 체납자의 이행을 구하는 절차이다. 체납고지의 절차로서 IRS는 먼저 체납자에게 '30-day letter'를 발송한다. '30-day letter'는 가산세, 가산금을 포함한 예정납부세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납세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 즉, 예정납부세액 인정, 세금신고서 제출, 신고의무가 없다는 증빙 제출, 국세청 심사국에 예정납부세액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 만일 '30-day letter'를 발송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체납자의 대응이 없으면 IRS는 체납자에게 다시 '90-day statutory notice'를 발송한다. '90-day statutory notice'는 '30-day letter'와 유사한 내용과 조세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청원권(right to petition)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 안에 체납자의 대응이 없으면 예정납부세액은 확정된다. 국세청 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확정된 납부세액에 대해 5주 동안 4번 독촉고지를 한 후 6주가 지나면 전화연락이나 직접연락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나. 전화연락(telephone contact) 및 직접연락(in-person contact)

전화연락과 직접연락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을 담보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 전화 또는 직접 납세자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우선특권을 공시하고 압류·매각하는 절차이다.

1) 우선특권(Lien)

우선특권은 특정의 채권자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일반재산 또는 특정물건으로부터 우선분배를 받을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 국세청은 체납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 주택, 자동차, 채권 등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우선특권 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체납조세에 대한 우선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조세 채무가 정해져야 하고,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독촉고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국세청이 체납사실을 고지한 후 10일 이내에 체납자가 답을 하지 않거나 체납액 전액의 납부를 거절하여야 한다.

2) 압류(Levy)

압류는 조세채권의 추심을 위해 재산을 압수하는 것으로서 직접 재산의 점유를 탈환한다는 점에서 우선특권과 구별된다. 체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 선박, 주택뿐만 아니라 제3자가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의 임금, 퇴직금, 배당금, 예금, 임대료, 채권, 생명보험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3) 매각(Sale)

일반적으로 지역 신문에 매각예정공고를 내거나 지역 우체국이나 공공기관에 대자보 공고를 한다. 체납자에 매각통지서 원본을 전달하거나 최근 알려진 체납자의 주소에 내용증명우편(certified mail)을 발송한다. 재산이 부패되거나 즉시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고 후 10일 안에는 매각을 집행할 수 없다. 매각 전에 국세청은 최저입찰가격을 산정하여 체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최저입찰가격은 선순위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가격을 제외한 후 공매가격의 80% 이상에서 결정된다. 체납자가 이 가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나 감정평가사에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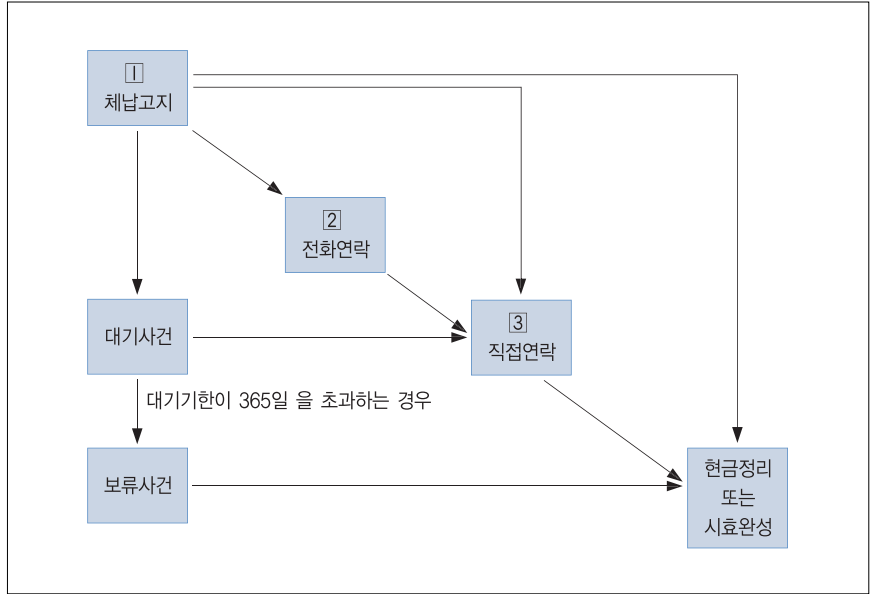
다. 체납정리

최종적으로 '징수불가능(not collectible)'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위의 단계를 거쳐 현금정리 또는 시효완성으로 체납정리된다.

전화연락과 직접연락은 우리나라의 강제징수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을 담보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해 전화 또는 직접 납세자를 찾아가 우선특권을 공시하고 압류·매각하는 절차이다.

채납자가 일시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IRS는 분납약정, 일시연기, 체납액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림 2] 미국 국세청 체납조세 징수절차



라. 납부방식

채납자가 일시납을 하지 못하는 경우 IRS는 다음과 같이 분납약정, 일시연기, 체납액 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²⁾.

1) 분납약정(Installment Agreement)

채납자는 분납약정을 체결하고 자동이체나 급여차감방식을 통해 매달 체납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분납약정은 일반적으로 소멸시효 기간 안에 체납액 완납을 목표로 매월 균등상환을 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체납액 완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납약정(partial payment installment agreement)을 할 수 있다.

분납약정의 효력으로서 채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는 반면, 가산세나 가산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체납조세에 대한 우선특권 공시를 할 수 있다. 분납약정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뿐만 아니라, 채납자의 분납신청에 대한 심사기간과 약정 위반으로 인한 분납약정 종료 후 30일 동안과 분납약정 종료나 분납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심사되는 기간에도 재산압류가 금

2) IRS, The IRS Collection Process (Publication 594), pp. 5~7

지된다.

2) 일시연기(Temporary Delay)

체납자의 재무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국세청은 일시적으로 체납조세 징수를 연기할 수 있다. 일시연기 기간 동안 국세청은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일시연기를 하더라도 가산세나 가산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우선특권 공시도 할 수 있다.

3) 체납액 조정(Offer in Compromise)

국세청은 확정된 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또는 확정된 세액을 납세자가 완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³⁾, 또는 국세청이 세액을 감경할 만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한 사정을 가진 경우에 법적으로 원래 체납액 이하로 체납액을 조정(감경)할 수 있다.

2006년 7월 16일부터 체납액 조정에 의한 납부방식에는 일시불(Lump Sum Cash), 단기납부(Short Term Periodic Payment), 장기납부(Deferred Periodic Payment)가 있다. 일시불은 조정승인 고지로부터 5회 이하 분납으로 납부해야 하며, 단기납부는 국세청이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5개월 안에 납부해야 하고, 장기납부는 25개월을 넘을 수 있지만 남은 소멸시효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미국은 1996년에 국세징수 업무를 민간법률회사나 민간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징수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시행 1년 만인 1997년에 중단되었다.

III. 미국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제도

1. 제도의 연혁

미국은 1996년에 국세징수 업무를 민간법률회사나 민간추심회사에 의뢰하여 징수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시행 1년 만인 1997년에 중단되었다. 그 이유는 납세자 정보, 비밀유지와 납세자 권리 보호 등의 다양한 문제점 때문이기도 했지만, 주로 IRS의 직접비용에 기회비용을 합친 비용보다 징수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2004년 고용창출법(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에 의해 국세청(IRS)이 민간추심회사에 체납징수업무 위탁계약을

3) 납세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 납세자의 재산과 미래 소득의 합계보다 큰 경우에 한함

2009년 3월 IRS는 민간위탁징수기관에 대한 체납징수업무 위탁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중지된 상태이다.

허용함으로써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재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체납조세의 저조한 징수실적이 국민에게 미국의 조세제도의 공정성과 자발적인 납세협력 측면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재무부(Department Treasury)의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재무부는 IRS가 민간추심회사(PCA; private collection agencies)에 체납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 시켜주도록 요청하였던 것이다. 고용창출법에 의해 2006년 3월 IRS는 3개 회사와 체납징수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9월부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제도는 시행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민주당 등 많은 집단들로부터 폐지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체납징수 민간위탁 폐지를 포함하는 2008년 납세자보호 및 간편화법(Taxpayer Assistance and Simplification Act of 2008; H.R.5719)이 110회기(2007~2008)에 제출되었으나 하원만 통과한 채 회기만료로 채택되지 않았다⁴⁾. 그 후 2009년 2월 3일부로 '체납징수업무 민간위탁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1986년 내국세법 개정을 위한 법률'(H.R.796)이 111회기에 제출되어 있다⁵⁾. 2009년 3월 IRS는 민간위탁징수기관에 대한 체납징수업무 위탁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은 중지된 상태이다.

2. 민간위탁 요건 및 절차

IRS는 납세자가 이의제기하지 않은 사건(예를 들어, Form 1040, 1040A, 1040EZ를 신고한 납세자)과 1과세연도 이상에 체납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민간추심회사(PDA; Private Debt Agency)에 이송한다. 다만 체납회수를 위한 별도의 기준, 금액, 유형은 IRS가 선별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민간추심회사가 위탁받을 수 있는 체납징수업무도 법률상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 즉, 납세자 소재 파악, 체납액 완납 요청, 분할납부 제안(전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납세자로부터 금융정보 입수 등의 업무에 한정된다. 분할납부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IRC 제6306(b)(1)조), 체납액 조정,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강제력 행사는 세무공무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기능이기 때문에 민간추심회사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민간추심회사가 실제로 세액을 징수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지도한다.

4) <http://www.govtrack.us/congress/bills/110/5719>
 5) <http://www.opencongress.org/bill/111-h796/show>

실무상 민간추심회사는 사건이송시 기준으로 징수세액의 21~25%를 서비스료로 받는다. 민간추심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료는 국세청과 체결한 조세징수계약(tax collection contract)에 근거하여 징수한 금액의 25%와 국세청의 강제집행활동을 통해 징수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IRC 제6306(c)조).

미국의 체납조세징수업무 민간위탁제도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여 제도적으로 다양한 보호장치를 확보하였다. 국세청은 모니터링을 통해 민간추심회사와 그 소속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모니터링에는 민간추심회사 직원과 납세자 간의 전화통화 기록 점검, 민간추심회사에 대한 납세자 설문조사, 민간추심회사에 대한 감사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민간추심회사 직원들에게 납세자 권리 보호에 대한 사전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 민간추심회사가 민간기업의 이윤 극대화 논리에 따라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보다 징수우선주의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 민간추심회사의 직원은 과세정보 보호에 대한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보유출이나 무단정보 열람시 형사처벌을 받는다. 정보유출시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무단정보 열람시 1,000달러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민간추심회사의 징수업무에 대한 실적 평가를 위해 국세청 내부에 민간추심회사 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였다. 관리 전담부서는 납세자와의 전화연락, 체납액 징수와 기타 관련 업무의 집행이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업무와 민간추심회사의 업무실적과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3. PDC의 절차

IRS의 역할은 PCA에 대한 감독과 지원 등이며, PCA는 납세자의 권리 및 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기준에 따라 체납회수 활동을 수행한다. PCA가 수행하는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PDC(Private Debt Collection Program)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 ① IRS의 선별기준에 따라 체납활동 대상 선정
- ② IRS는 체납자에게 PCA를 통한 체납회수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서신으로 통보
- ③ IRS는 PCA에게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송부

실무상 민간추심회사는 사건이송시 기준으로 징수세액의 21~25%를 서비스료로 받는다. 민간추심회사에 지급하는 서비스료는 국세청과 체결한 조세징수계약에 근거하여 징수한 금액의 25%와 국세청의 강제집행 활동을 통해 징수한 금액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IRS의 역할은 PCA에 대한 감독과 지원 등이며, PCA는 납세자의 권리 및 정보 침해 최소화를 위한 여러 기준에 따라 체납회수 활동을 수행한다.

- ④ PCA는 IRS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서신으로 체납자에게 통보
 - 국세청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민간추심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한 납세자의 주소로 고지서(notification letter)를 발송해야 한다. 이 문서에는 납세자의 계정이 징수 목적으로 국세청의 하도급자(민간추심회사)에 배정된 점을 언급하여야 한다.
- ⑤ PCA는 서신이 도달한 후 3일 이내에 체납자에게 전화로 연락 시작
 - PCA는 체납자와 연락을 함에 있어서 시간, 장소, 방법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체납자의 주소지에 연락하여야 하며, 체납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직장에 연락할 수 없다. IRS 또는 체납자가 PCA에게 체납자의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의 존재를 통보한 경우, PCA는 체납자에게 직접적인 연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대리인을 통해서 체납회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민간추심회사 직원은 연락하는 상대방이 납세자임을 확인할 때까지 어떠한 납세정보도 공개해서는 안된다(IRC 제6103조). 민간추심회사 직원이 보고할 수 있는 정보는 그 직원의 이름, 회사 이름, 전화번호, 민간추심회사가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납세자의 이름, 민간추심회사가 체납액에 대해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에 국한된다.
- ⑥ 체납자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PCA는 체납자의 거소 또는 전화번호를 찾기 위한 채무자 수색(electronic skip-tracing) 수행(이 경우 체납자의 제3자에게 연락 금지)
- ⑦ PCA는 체납자와 협의를 통해 연체된 세금의 완납 또는 분할납부를 유도
- ⑧ 체납자와 PCA간의 체납금액 조정(완납 또는 분할납부)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PCA는 최저 100달러에서 최고 10만달러까지 회수할 수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IRS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관
- ⑨ 체납자가 PCA와 체납금액에 대한 조정(완납 또는 분할납부)을 거부하는 경우, PCA의 체납징수 활동은 중지되고 IRS에게 이관

4. 민간위탁 현황

민간추심회사를 통해 징수한 세수(gross revenue)는 2007년 3,100만달러, 2008년 5월 31일까지 2,330만달러를 기록하였다⁶⁾. 2007년에 징수한 세수 중

6) IRS TAS(2008), p. xxx-xxxi.

2,470만달러만 수수료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630만달러는 수수료 미지급 대상이다. 수수료 미지급 대상은 ① Federal Payment Levy Program(FPLP)⁷⁾을 통한 징수, ② State Income Tax Levy Program(SITLP)⁸⁾을 통한 징수, ③ 수정신고에 따른 납부, ④ 민간추심회사에서 반송한 후에 이루어진 납부와 같이 민간추심회사의 실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위탁된 체납사건 중 수수료 미지급 대상 이외에도 국세청이 직접 징수한 금액은 1,260만달러로 집계되었다. 직접징수 대상은 ① 자동 상계(offset) ② 민간추심회사가 체납자에 연락하기 전에 체납자의 사건이 민간추심회사에 위탁되었음을 고지받고 체납자가 직접 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간추심회사를 통해 징수한 세수는 2007년 3,100만달러, 2008년 5월 31일까지 2,330만달러를 기록하였다. 2007년에 징수한 세수 중 2,470만달러만 수수료 지급 대상이고, 나머지 630만달러는 수수료 미지급 대상이다.

〈표 4〉 미국의 체납국세 민간위탁 실적

(단위: 백만달러)

회계연도	수수료 지급대상 (A)	수수료 미지급 대상(B)	위탁징수합계 (C=A+B)	국세청 직접징수(D)	위탁체납액 합계 (C+D)
2007	24.7	6.3	31.0	12.6	43.6
2008 ⁹⁾	16.4	6.9	23.3	-	-

주: 1) 2008. 5. 31까지의 실적임.
자료: IRS TAS(2008)의 내용을 표로 작성.

IV. 체납징수 민간위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1. TAS의 평가

국세청(IRS) 내부의 독립조직인 TAS(Taxpayer Advocate Service)의 납세자보호담당관(national taxpayer advocate)은 매년 체납징수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효율성, 투명성, 위탁사건 문제, 훈련, 비밀보호, 납세자 권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을 의회에 보고하였다⁹⁾.

2008년 TAS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¹⁰⁾에 의하면 체납징수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국세청 스스로 징수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납세자 체납사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국세청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ACS(Automated Collection System)는 납세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체납조세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조와 목적에서 민간추심회사(PCA; private collection agencies)의 체납징수 프

7) FPLP는 IRC 제6331(h)조에 의해 2000년 7월부터 국세청(IRS)이 연방세 체납액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납세자의 재산과 재산에 대한 권리를 압류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를 하려는 프로그램임.

8) SITLP는 IRS가 주세(state tax) 환급금을 압류함으로써 체납 세금을 징수하려는 프로그램임.

9) IRS TAS, National Taxpayer Advocate (2009), (2008), (2007), (2006).

10) IRS TAS, National Taxpayer Advocate (2008).

ACS와 PDC를 통해 징수한 유사사건을 비교한 결과, ACS가 PDC에 비해 체납징수 실적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ACS를 통해 체납사건의 13%를 징수한 반면 PDC는 체납사건의 4%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그램인 PDC(private debt collection program)와 비슷하다. ACS와 PDC를 통해 징수한 유사사건을 비교한 결과, ACS가 PDC에 비해 체납징수 실적이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ACS를 통해 체납사건의 13%를 징수한 반면 PDC는 체납사건의 4%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세청의 조기 개입이 PCA에 위탁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더 유리한 점을 지적하였다. 2008년 3월까지 국세청에서 PCA에 위탁한 18만 1,210건의 체납사건 중 20%에 해당하는 3만 6,000건의 체납사건만 해결하고 나머지 체납사건은 해결되지 못한채 6개월 이상 보류되어 있다. 보류사건의 경우 가산세와 가산금의 부담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사건들은 국세청이 조기에 개입하여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유리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PCA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많은 체납사건에 대해 불필요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납세자의 정보를 장기간 민간에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은 PCA에 위탁할 후순위사건을 분류하는 작업 대신에 PCA에서 처리하지 못할 사건의 유형을 평가하여 이들 사건이 처음부터 PCA에 위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위탁의 장점으로 언급되는 민간 분야의 효율성 학습은 국세청의 징수업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체납업무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국세청이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오히려 민간 분야에서 사용되는 많은 실무적 기술들을 사용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조직이라고 판단된다. 국세청이 PCA의 징수업무에서 보완해야 할 영역을 발견함으로써 국세청이 PCA 보다 납세자의 체납사건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납세자의 권리와 사생활권에 대한 장기 위협을 지적하였다.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사생활권을 위한 엄격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만, PCA의 목적이 이익 극대화이고 징수업무 위탁에 대한 혜택이 징수금액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2008년 FTC(Federal Trade Commission) 보고자료에 의하면 매년 다른 분야에 비해 PCA에 대한 이의제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CA 직원은 납세자의 권리와 비밀보호를 위반한 경우 국세청 공무원과는 달리 당해 직원을 그 사건에서 제외시키는 것 이외에는 해고조치와 같은 다른 제재수단이 없다. 납세자의 권리와 비밀보호를 위반한 경우 국세청 공무원은 파면되거나 다른 중대한 제재를 받지만, 민간추심회사 직원은 승인받지 않은 정보유출시 형사 또는 민사상 제재를 받을 뿐이다.

2009년 TAS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¹¹⁾에서는 2008년 보고서에서 지적한 네 가지 이유 이외에도 PCA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PDC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첫째, PDC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세수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IRS는 2008년도의 PDC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서 765만달러의 예산이 소요되고 2,340만달러 내지 2,960만달러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체납징수금액을 2,340만달러와 2,960만달러의 중간값인 2,650만달러로 가정할 때 직접 비용인 765만달러와 PCA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를 제외한 순체납징수액은 1,400만달러 정도이다. 만일 국세청이 직접 765만달러를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ACS에 투자하였다면, 9,180만달러 내지 1억 5,300만달러의 체납징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IRS의 데이터에 의한 ACS의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이 13 내지 20 정도의 수준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낮은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더라도 PDC를 통한 체납징수액은 국세청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ACS에 의한 체납징수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둘째, PDC 프로그램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PCA에 대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765만달러라고 하지만, 실제 이 비용에는 PDC 프로그램의 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비용이 제외되어 있다. 예를 들면 765만달러에는 IRS에서 PDC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MITS(Moderniz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s), TAS 대표자 등과 관련한 비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Office of Chief Counsel, Office of Legislative Affairs, TAS 직원 등의 비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PDC 프로그램의 비용은 실제비용보다 과소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IRS가 이미 체납징수를 시도하였던 사건을 PCA에 위탁하기 때문에 PDC의 체납징수업무는 단순히 전화연락을 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쉬운 업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2. IRS의 비용 효율성 분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RS는 PDC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이 프로그램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체납징수 민간위탁 프로그램의 비용 대비 효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2009년 IRS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ACS와 민간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PDC의 비용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였다¹²⁾. 2007년 4월에 ACS와 PDC에 배당된 체납사건 중 각 500개를 표본추출해서 분석해 본 결과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결

낮은 투자수익률을 적용하더라도 PDC를 통한 체납징수액은 국세청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ACS에 의한 체납징수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11) IRS TAS, National Taxpayer Advocate (2009).

12) IRS, IRS Private Debt Collection Cost Effectiveness Study, 2009.

체납징수액 1달러당 비용은 ACS가 0.07달러로 PDC의 0.24달러에 비해 1/3 이하 수준이며, 체납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ACS가 11.4%로서 PDC의 3.8%에 비해 3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를 얻었다. ACS의 경우 체납액 680만달러를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 5만 3,545달러를 들여서 실제로는 77만 5,302달러를 징수하였다. 반면 PDC의 경우 체납액 1,170만달러를 징수하기 위하여 비용 10만 5,621달러를 들여서 실제로는 44만 3,438달러를 징수하였다. 체납징수액 1달러당 비용은 ACS가 0.07달러로 PDC의 0.24달러에 비해 1/3 이하 수준이며, 체납액 대비 실제 징수액의 비율은 ACS가 11.4%로서 PDC의 3.8%에 비해 3배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ACS와 PDC의 비용 효율성 비교

(단위: 달러, %)

	체납징수액 (A)	비용	체납징수액 1\$당 비용	체납액 (B)	A/B
ACS	775,302	53,545	0.07	6,800,000	11.4
PDC	443,438	105,621	0.24	11,700,000	3.8

자료: IRS, Cost Effectiveness Study, 2009.

V.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용하다가 최근 문제점의 발생으로 인해 다시 민간위탁을 중지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미국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에 관한 정책 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와 국세청에서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민간위탁을 주장하는 전문가나 관련 단체가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이 국세청에서 직접 체납징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나 관련 단체가 국세청 내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이를 증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수치를 확실히 보여주지 못한다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국세청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세청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

으로 대응하여 직접 이러한 작업을 수행해 본다면 향후 체납징수업무의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009년 미국의 IRS는 국세청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ACS와 민간추심회사의 체납징수 프로그램인 PDC의 비용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체납징수액 1달러당 비용은 ACS가 0.07달러로 PDC의 0.24달러에 비해 1/3 이하의 수준이며, 체납액 대비 실제 징수액은 ACS가 11.4%로서 PDC의 3.8%에 비해 3배 정도의 수준이라는 결과를 얻었다. 물론 이는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후 실제 소요된 비용을 계산하여 얻은 결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내부 자료를 이용한다면 사전적으로 소요 비용을 추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체납 관련 전문가나 민간단체가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체납징수업무의 위탁 범위와 그에 따른 법률적인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미국이 체납조세징수업무의 민간위탁제도 폐지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기본논리는 체납징수가 정부의 고유한 업무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조세징수는 IRS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IRC 제6301조). 또한 Debt Collection Improvement Act of 1996와 Federal Activities Inventory Reform Act of 1998 등의 법률에서 공익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의 경우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였다고 하나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 체납조세 징수절차의 임의단계인 독촉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 위탁하였다고 보여진다. 이 정도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도 앞에서 논의하였던 많은 문제점들이 노정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촉, 압류, 매각, 배분 중에서 현재 매각만을 KAMCO에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 것인지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로서 법률적 징수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만일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한다면 체납징수업무의 역할을 국세청과 민간추심회사가 분담하여 전체적으로 충분히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요건과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독촉, 압류, 배분 등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이 확대되는 경우 위임, 위탁, 대리, 대행 등의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면 민간추심회사의 지나친 채권추심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일부 신용정보회사의

최근 미국이 체납조세징수업무의 민간위탁제도 폐지를 뒷받침하는 법적인 기본논리는 체납징수가 정부의 고유한 업무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조세징수는 IRS의 고유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민간위탁을 통한 체납징수 실적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반면, 불법적·강압적 징수행위를 유발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법추심행위에서 보듯이 민간추심회사도 체납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체납자나 주위 사람들에게 지나친 추심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불법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상세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PCA가 체납자와 연락을 함에 있어서 시간, 장소, 방법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으며, 민간추심회사 직원에 대해서도 다양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체납징수업무가 민간에 위탁된 후 만일 불법추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결국 국세청이 원성을 받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은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적절한 민간추심회사의 선정이 필수적이며, 선정된 민간추심회사의 채권추심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민간추심회사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국세청이 체납징수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민간추심회사에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받은 민간추심회사와 직원이 개인 정보를 자의든 타의든 유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엄격한 보호규정이 필요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도 국세청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위한 엄격한 보호규정을 두었지만 PCA의 목적이 이익 극대화이고 징수업무 위탁에 대한 혜택이 징수금액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체납징수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PCA에게 지급하는 형태는 PCA의 불법적, 강압적 징수행위를 유발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도 발생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본다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민간위탁을 통한 체납징수 실적은 큰 기대를 할 수 없는 반면, 불법적·강압적 징수행위를 유발하여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납세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은 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많은 논의를 거친 후 국세청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한다면, 체납징수업무를 국세청과 민간추심회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충분히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요건과 범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후, 체납징수업무를 시범적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결과를 평가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을 확대하든지 폐지하든지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KIPR**

체납징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확대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참고문헌>

- 김진수 · 한상국, 『체납징수업무의 효율화 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9.
- IRS, *Cost Effectiveness Study*, 2009.
- , *Private Collection Agency(PCA) Policy and Procedures Guide*, 2008.
- , *The IRS Collection Process*, Publication 594(Rev.7-2007).
- IRS NTA, *2008 Annual Report to Congress*, 2008.
- , *2009 Annual Report to Congress*, 2009.
- IRS TAS, *The National Taxpayer Advocate's Report to Congress; Fiscal Year 2009 Objectives*, 2008.
- GAO, *Tax Debt Collection; IRS Has a Complex Process to Attempt to Collect Billions of Dollars in Unpaid Tax Debts*, 2008.
- OECD, *Tax Administration in OECD and Selected Non-OECD Countries: Comparative Information Series(2008)*, 2009.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성과계약 도입 효과와 정책과제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연도 경험을 중심으로



박노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npark@kipf.re.kr)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큰 변화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I. 서론

고령화와 소득 불평등의 증가와 더불어 실직자,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약계층에게 기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서비스 제공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 중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도입되는 성과계약의 효과와 정책과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큰 변화는, 지속적으로 소득을 보조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한다는 것과 서비스 제공기관의 성과관리를 강화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요 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여 기존 자활사업에 성과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인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성과계약을 도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정책적 쟁점은 다양하다. 본고에서는 2009년도에 시행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1차연도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에 성과계약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2000년에 제정된 기초생활보장법과 더불어 도입된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방안의 모색을 위해 도입되었다. 기존의 자

활사업은, 복지 혜택의 수혜와 연계하여 근로 의무가 부과된 자활사업이 도입되었으나, 일부에서는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 자활사업의 도입은, 지속적인 복지 혜택의 제공이라는 전통적인 복지 모형에서 경제적 자립을 복지사업의 목표로 하는 생산적 복지 또는 능동적 복지로의 정책방향의 전환과 연계되어 있다. 그러므로 자활사업의 성과를 논할 때, 탈수급 실적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근로 유지와 자활공동체를 통한 자긍심 유지 등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을 탈수급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기존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에 직면하여 보건복지부는 자활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새로운 사업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기존 자활사업의 탈수급률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타개책의 하나로 민간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시적인 유인을 제공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접근법을 채택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사업 수행기관에게 취업과 탈수급을 사업의 목표로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연결시킴으로써 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사업성과를 제고하겠다는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마디로 성과계약 방식에 근거한 사업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의 본격적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본고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희망리본 프로젝트)의 1차연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주요 정책적 쟁점에 대한 검토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유의할 사항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단정적으로 사업의 성과 자체를 평가하는 내용이 도출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1차연도 성과평가의 주요 내용은, 취업률을 중심으로 사업의 성과를 1차적으로 점검하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적절한 정도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부분과 성과계약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쟁점에 대해 1차연도 사업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부분으로 구성된다. 본고는 1차연도 성과에 대한 평가이므로, 사업 자체의 성과평가보다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였는지와 향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개선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 1차연도 성과평가의 배경, 평가의 주요 쟁점 및 평가 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주요 성과관리형 자

새로운 방식의 사업의 본격적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위험요소들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정부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의 개념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

활시범사업의 쟁점별 분석을 수행한다. 제Ⅳ장에서는 간단히 사업의 성과를 제
 시하고,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다.

II. 평가의 배경 및 방법

1.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및 현황

가.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국제적 동향

우리나라에서의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직접적인 도입 배경은 서론에
 서 살펴본 대로, 기존 자활사업을 통해서 사업참여자들의 탈수급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
 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배경 외에도, 좀 더 크게 보면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복지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정책의 전환을 시도한 OECD 국가
 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의의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서
 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였
 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의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의 하나로서 정부가 직접 서
 비스를 제공하는 형태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welfare state)
 의 개념이 최근에는 많이 바뀌고 있다. 직접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
 (service provider) 역할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간접적인 역할
 (service enabler)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변화에는 정부가 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깔
 려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 변화에 따라, 정부는 크
 게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된다. 첫째는, 재원의 조성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활
 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고 둘째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
 의 역할이 증대되고 정부는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환경을 마련하고 계약
 을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이 설정된다.

먼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지출보다는 민간의

재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방식으로의 노력이 이루어지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 조성에 민간의 기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기부액에 대해서 조세감면을 제공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공재원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서비스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과 사용료를 연계시키는 방식이 도입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입법화를 통해 기업이나 특정 그룹의 개인에게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부담을 부과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취업 서비스의 경우, 외국의 경우 별도의 공공조직이 취업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우리나라도 직업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는 공공 조직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호주·네덜란드·영국·미국을 중심으로, 취업관련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때 민간이란, 비영리기관뿐 아니라 영리기관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민간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이나 성과에 근거한 계약 등의 수단이 병행하여 도입된다. 사업자 간의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민간에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여 시장과 유사한 여건을 마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현금이나 바우처(서비스 사용권)를 서비스 수혜 요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성과에 근거한 계약을 도입하는 방식은, 민간사업자와의 계약에 있어서 사업의 결과와 보수를 연결시키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는, 민간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서비스 제공자들과의 계약방식에도 성과에 근거한 계약이 포함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의 변화와 사업 추진 방식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내용도 변하고 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소득보조나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라고 불리는데 장기 실업자 또는 만성적 실업자에게 근로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복지 지출의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동시에 취약계층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에의 의존이 고착화되어 근로 및 자립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부작용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소득보조나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목적을 두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는 공공 조직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것이 깔려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전략은,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적 복지' 라고 명명되어 2000년부터 추진되었으며 현 정부에서는 '능동적 복지' 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전략의 주요 요소는 다양하며 국가마다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소득보조 수혜기간을 제한하고, 소득보조 수혜자의 의무를 강화하며,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취업지원 서비스 관련 행정체계 및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다. 소득보조 수혜기간의 제한의 사례는 미국의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서 개인이 평생을 통하여 소득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60개월로 제한하고 있다¹⁾. 이러한 기간 제한은 무제한적인 보조로 인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만성적 의존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형태의 제약조건 부과는, 소득보조 수혜자에게 일정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의무적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훈련이나 근로활동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나 정부 제공의 근로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보조 수혜자에게 새로운 의무나 제약조건을 부과하는 방식과 더불어, 취업지원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는 공공 조직적 성격을 가진 기관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간조직이 가진 유연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민간조직에 취업지원 서비스를 위탁하였을 경우, 성과계약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민간조직과의 계약 형태는 다양한데, 취업지원 서비스의 경우 취업 달성과 연계되어 성과급이 설정된 계약 형태가 가장 직접적인 성과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계약 형태의 도입 시 중요한 쟁점은, 민간과 정부의 위험 분담 문제와 민간의 전략적 행동의 방지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렇게 결과지향적인 성과계약을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효과를 제고하는 시도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과정 및 산출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있다. 예를 들어 상담 횟수나 알선 횟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특정 수준의 서비스 내용이나 활동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고 기관들이 수행하도록 하는 형태의 노력도 있다.

취업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제도적 개혁의 노력으로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1) TANF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게 저소득층 지원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포괄보조금(block grant)로서, 이러한 수급기간의 제한의 현실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주정부가 다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계속적으로 소득보조를 할 수 있으므로, 실제적으로 60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으로 인해 소득보조가 중단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있다. 소득보조 관련 행정과 취업지원 관련 행정의 통합을 통하여, 저소득층 소득보조사업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 소득보조사업의 일정한 실업급여 지급 행정과 취업알선 행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취업 자체의 난이도가 높은 계층에 대한 소득보조와 취업지원 행정이 통합된 경우는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업급여 지급 행정과 취업알선 행정의 통합뿐 아니라, 사회복지급여 지급 행정도 통합된 곳이 있다.

외국의 현황을 보면, 실업급여와 취업지원 서비스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는 쉽게 발견되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를 감소시키고자 하는 의도와 연계되어 있다.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등에서는 양 행정업무를 통합시켜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를 감소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복지급여나 장애보조급여 등의 행정과 취업지원 행정을 통합시킨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뉴질랜드의 Work & Income New Zealand, 노르웨이의 NAV, 영국의 Job Centre Plus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조직이나 예산의 통합 없이도 다른 조직의 사무소를 각 지역의 한 곳에 위치시킴으로써, 기관 간의 조율을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도 발견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지역에서 자체 재원조달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로의 행정적·재정적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재원조달을 일임하는 경우, 수혜비율(caseload)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1996년에 100% 지역재원조달 방식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 성인의 수급률이 1994년과 2002년 사이에 급감하여, 캐나다의 경우는 절반, 미국의 경우는 2/3로 감소하였다. 네덜란드도 2004년 100%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바꾸었다. 이렇게 지방정부에 재원조달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지역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전략(activation strategy)를 추진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재원조달은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사업관련 행정은 지방에서 이루어질 경우, 지방정부의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방에의 권한 이양과 더불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성과관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는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영화나 성과계약 방식이 도입되고 있다는 위에서의 논의와 연결된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과관리는 민간사업자나 비영리기관 등의 서비스의 직접 제공자에 대한 부분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자율권 부여에 수반되는 성과관리의 강화도 포함된다.

지방정부의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자율권 부여 및 지역에서 자체 재원조달하는 방식으로 지방정부로의 행정적·재정적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정부에 재원조달을 일임하는 경우, 수혜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현금지원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수혜자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복지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를 요약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이 개인에 대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 배양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경제적 자립을 시키겠다는 사업의 수단과 목적 자체의 변화와 더불어, 서비스 자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의 운영 방식 및 관련된 행정 체제의 개편을 통한 구조적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이러한 국제적 변화 추세의 일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의 도입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취업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2000년부터 시작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금지원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아니라 수혜자들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복지로 개념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생산적 복지의 취지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근로조건이 부과되는 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자활사업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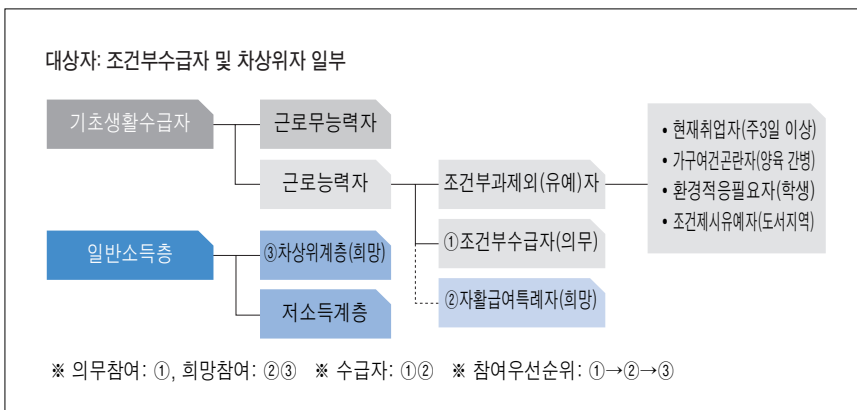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한다.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자활사업의 내용에는 자활공동체 사업,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취업연계 사회복지서비스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 명시적인 자활사업의 목표였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동시에 자활사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현금지원의 형태에서는 벗어난다고 하는 시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자활사업 참여 대상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림 II-1]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나누어진다. 근로능력자는 다시 조건부과 제외자와 조건부 수급자로 분류된다. 자활사업에의 참여 의무가 제외되는 조건부과 제외자는 현재 주 3일 이상 근로하고 있는 경우이거

나, 양육 및 간병 등의 가족여건 사유, 학생, 도서지역 거주자 등의 사유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수급자를 의미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자와 조건부과 제외자를 제외한 조건부 수급자가 일차적인 자활사업 대상자이다. 이외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중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상향하지만, 일정기간 기초생활수급의 특례를 주는 자활급여 특례자가 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계층 중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 120% 미만인 차상위 계층도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자활사업 참여의 우선순위는 조건부과수급자 → 자활급여특례자 → 차상위 계층 순서이다.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서도, 근로능력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 및 비취업 대상으로 분하여 차별화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림 II-1] 자활사업 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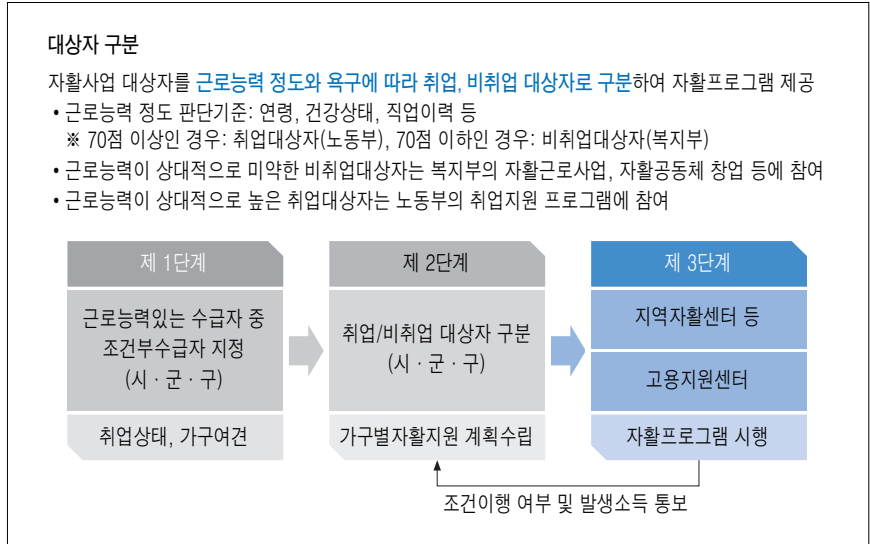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활사업 대상자 중에서도, 근로능력 정도와 욕구에 따라 취업 및 비취업 대상으로 구분하여 차별화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근로능력을 판정하기 위해서 근로능력 판정기준을 활용하여, 취업대상자는 노동부의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비취업대상자는 복지부의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공동체 창업 등에 참여한다. [그림 II-2]에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흐름을 요약해 주고 있다²⁾.

2) 이렇게 복지부의 자활사업 참여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낮아 취업이 어려운 집단이므로, 경제적 자립을 사업의 성과판단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다. 그러나 취업이 어려운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한다는 것뿐이지, 경제적 자립을 추구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사업의 목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취업을 포기하고 다른 경로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전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복지부 자활사업 내에서는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지원 등 기타 등으로 사업 내용이 분류되고 있다.

[그림 II-2] 사업 대상자 구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참여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2008년 12월 현재 7만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동부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는 참여자는 2,243명이고, 복지부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68,246명이다.

<표 II-1> 자활근로 및 자활공동체 사업 현황

(단위: 명)

계 (a+b)	소계 (a)	복지부(a)							노동부 (b)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창업 지원 등 기타	
		시장 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인턴형	근로 유지형	지자체형			
70,489	68,246	10,647	23,900	145	23,292	193	1,625	8,444	2,243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부 자활사업 내에서는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 지원 등 기타 등으로 사업 내용이 분류되고 있다. 자활사업의 내용과 담당 기관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표 II-2>와 같다.

〈표 II-2〉 자활사업의 유형과 실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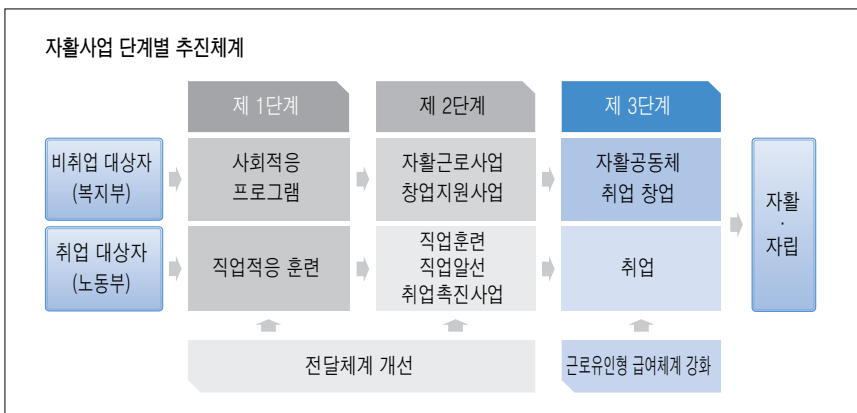
자활급여종류 (구체적인 사업지정)	기준(근로능력접수에 의한 판정 포함)	사업실시 기관
직업적응훈련	근로역육 고취 및 직업적응훈련이 필요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고용지원센터, 직업적응훈련기관
취업알선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창업훈련)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은 노동시장에서의-취업이 가능한 자	고용지원센터
자활공동체사업		고용지원센터
자활공동체사업	자활공동체사업 참여욕구가 높은 자 기술습득 정도·노동 강도가 높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위탁기관
자 활 근 로	시장진입형	민간위탁기관, 시·군·구 등
	인턴형	
	사회적일자리형	
근로유지형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참여가 가능한 자 간병·양육 등 가구여건상 관내사업만이-가능한 자	시·군·구 등
디딤돌 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알코올의존 및 우울증 등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의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상습적인 조건불이행자 등	정신보건센터등 정신보건시설, 사회복지관, 대학연구소, 지역자활센터 등
생업자금융자	공동체 및 개인창업을 희망하는 자	시·군·구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공동체에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취업대상자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림 II-3〉에서는 〈표 II-2〉에 제시된 사업들이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보여준다. 근로능력에 따라 수급자들을 취업대상자와 비취업대상자로 분류하여, 노동부와 복지부가 역할을 나누어 담당한다.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공동체에의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취업대상자는 취업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추진 경로가 설정되어 있다.

〈그림 II-3〉 자활사업의 단계별 추진체계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이 이루어진 비율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부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존의 자활사업이 운영되어 왔으나, 성과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자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자활사업이 시작된 지 9년이 지났지만, 실제 자활사업을 통해 탈수급이 이루어진 비율은 지극히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낮은 수준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2009년부터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존 자활사업에서도 일정액을 평가에 근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지만 유인의 강도는 약하였으며, 기본적으로는 242개 지역자활센터에 평균 10억 여원의 운영비가 지급되는 형태이다.

이에 비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서는 복지부와 민간사업자 간에 명시적인 성과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 성과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 1인당 기본 사업비가 고정금으로 지급되고, 취업성공, 취업 6개월 유지, 탈수급 달성이라는 단계별로 별도의 성과급이 추가적으로 지급되게 구성되어 있다³⁾. 그리고 성과관리형 사업의 전국적 확대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내용을 보면, 자활사업에서의 변화가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업의 초점이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경제적 유인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서 성과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2. 평가의 주요 쟁점 및 평가 방법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연도 성과평가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와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다. 시범사업의 도입 목적 자체가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경제적 자립)이라는 측면에서의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은 취·창업과 탈수급이라는 기준에 있다. 한편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는, 성과계약형 취업연계서비스에 관련된 정책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평가의 주요 쟁점과 방법론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기 이전에, 시범사업 1차연도 평가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성과의 평가에는 중기적 시각이 필요하다. 취업연계를 위한 서비스 제공에도 시간이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일정기간의 취업 유지를 통해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므로 1차연도 사업의 종료시점에서 사업의 궁극적 효과인 경제적

3) 자활특례대상자가 존재하므로, 탈수급보다는 생계급여 중단 여부로 탈수급 기준을 변경하여 2010년 시범사업에는 적용될 예정이다.

자립이라는 기준으로 평가가 곤란하다. 그리고 사업의 다른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1차연도의 경험만을 가지고 단정적인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1차연도 성과평가는 단기적인 취업률 중심의 성과분석과 주요 쟁점별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사업의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는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을 요약하는 수준에서 간략히 정리하고 사업 운영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한다.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들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취업실적에 근거한 성과계약을 도입할 경우, 무엇보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과계약에 명시적으로 경제적 유인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조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익성 극대화를 위해 전략적 행동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있다. 취업연계 복지사업의 경우, 이러한 전략적 행동은 취업 난이도가 낮은 집단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취업이 용이한 집단에게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전자를 크리밍(creaming)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크리밍의 일종으로서 파킹(parking)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하는 장치로서는 적절한 계약조건 설정과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모니터링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또 다른 쟁점은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위험 부담 문제이다. 사업의 중요한 성과판단 기준인 취업률, 취업유지율, 그리고 탈수급률과 같은 주요 성과지표는 사업 자체의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쟁점은 이러한 사업 외적인 요소에 의한 위험 부담을 정부와 민간이 어느 수준으로 나눌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외부 위험의 대표적인 것이 경기변동으로 인한 실업률의 변화와 사업 대상자 수의 변화이다. 외부요인으로 인해 취업 난이도가 증가하고 사업 대상자 수 자체가 변화할 경우, 어떻게 민간 사업자에게 위험 부담을 지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성과계약에 의한 사업 추진 초기에는 사전적으로 계약 내용에 이러한 외부요인을 담기가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외부요인의 변화가 민간사업자의 수익성에 어떤 크기로 영향을 미칠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의 실업률이 특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계약조건을 재협상한다는 조항이 명시적으로 성과계약에 포함되기도 한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이러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위험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어떤 수준으로 나누어 질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성과계약에 있어서 사업의 성

취업실적에 근거한 성과계약을 도입할 경우, 무엇보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과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강한 경제적 유인을 주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과와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기본급의 크기가 민간사업자의 운영 경비보다 크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사업자는 위험부담을 전혀 지지 않는 경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위험 분담을 위해서는 고정급과 성과급 크기 자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고, 외부요인의 변화 크기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계약 내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 다음에 살펴볼 민간사업자 간의 유효경쟁 유지 문제와 결합될 경우, 위험 분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다음 문제는 민간사업자 간의 유효 경쟁의 문제이다. 취업연계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게 되므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 대규모 사업자를 활용할 경우, 규모의 경제 실현과 거래비용의 감소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 유효 경쟁의 유지에는 불리하게 된다. 이미 민간사업자를 통해 취업연계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보면,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기간이 지나면서 서비스 제공자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효 경쟁이 유지되지 않으면 정부가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위에서 언급한 위험 분담의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실질적으로 모든 위험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성과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에게 강한 경제적 유인을 주게 되면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의 발생문제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운영의 자율권을 대폭 위임하는 블랙박스식 접근법을 취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국가의 경우, 취업 성과의 조작, 부적절한 비용 집행, 그리고 비용 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관찰되고 있으며, 부정행위의 발생과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이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논의된다.

이러한 부정행위의 방지와 억제에 위해서는, 감사 수준의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담당 정부 조직은 사업의 성공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상적으로는 사업 담당 조직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에 의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성과관리형 사업의 재정적 함의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도입 목적은 탈수급 기준의 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 수혜자의 경제적 자립을 가져오고 예산의 절감 효과를 가져온

다는 것이다. 성과관리형 사업의 경우, 기존 자활사업보다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사업 성과의 제고를 통한 재정절감 효과의 입증은 사업의 정당성 확보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재정절감 효과를 증명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재정절감 효과의 입증 을 위해서는 성과계약 방식 도입에 따라 증가된 총사업비용과 추가적인 행정비용과 사업 대상자가 경제적 자립을 통하여 정부의 보조에서 벗어남으로써 절감되는 정부 지출의 감소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성과계약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관계된 주요 쟁점 외에도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 또는 역할 분담의 문제이다. 특히 취업 연계 사회복지 서비스 자체가 의미하듯이 취업관련 사업이 주요 영역이 노동부와 취약계층 대상 사업이 주요 영역인 보건복지부 사이의 역할 분담 또는 협력관계 형성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부처 간 사업의 중복성 또는 역할 분담의 문제이다.

Ⅲ. 시범사업의 주요 쟁점별 분석

1. 주요 쟁점 개요

이미 제Ⅱ장에서 논의된 성과관리형 시범사업과 관련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민간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억제
- 정부와 민간의 사업상 위험 분담
- 민간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효 경쟁 유지
- 부정행위의 억제
- 재정절감 효과
- 정부부처 간의 역할 분담

아래에서는 각 쟁점별로 1차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보자.

우리나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크리밍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는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서비스 제공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성과계약의 내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가지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취업이 용이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cream-skimming 또는 creaming현상이라고 불린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선정된 사업 대상자 중 취업 난이도가 낮은 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집중 지원되고, 취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상자에게는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되는 경우로서 creaming의 또 다른 형태로 parking 현상이라고도 불린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에 의한 크리밍 현상의 문제 발생 소지는 미약하며 파킹의 문제는 발생 소지가 있다. 사업 대상자 선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가 의뢰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므로, 민간사업자에 의한 크리밍의 발생 소지는 거의 없다. 크리밍 문제를 방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크리밍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는 방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시범사업 지역인 경기와 부산 지역의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비중이다.

- 경기지역의 경우, 수급자 비중이 70%, 차상위 비중이 30%
- 부산지역의 경우, 수급자 비중이 85%, 차상위 비중이 15%
- 기존 자활사업의 경우, 수급자 비중이 72.6%, 차상위 28.4%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비중만 본다면,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취업 난이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상위 계층을 의도적으로 많이 포함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유의할 사항은, 기존 자활사업에는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가 대다수이지만,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수급자 중 조건부와 제외자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조건부 수급자와 조건부와 제외자 중 조건부와 제외자의 취업난이도가 낮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조건부와 제외자의 경우, 많은 경우가 근로의 장애요인(가정 여건,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조건부 수급자보다 취업이 더욱 어렵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시범사업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크리밍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였다

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사업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이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므로,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의 의욕이 높은 집단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상과 같이 크리밍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였으나, 시범사업의 성과계약 내용상, 사업자들에 의한 파킹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성과계약에 취업난이도를 반영하여 성과급이 책정되지 않았으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를 집중 제공하여 성과를 달성할 유인(parking)이 존재하는 것이다. 현행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계약 내용에는 사업 참여자에 대한 최소 서비스 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취업, 취업유지, 탈수급에 대한 성과급 기준에는 취업 난이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성과계약의 내용상,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유인이 존재하고, 실제 1차연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파킹 현상이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자는 크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비스 관련 데이터를 보면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중앙자활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부산지역 참여자의 경우는 근로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를 제공받을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경기지역의 경우는 이런 현상이 관찰되고 있지 않다. 부산지역은 근로능력점수가 10점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확률이 11.0%p 증가하나, 경기지역은 0.2%p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파킹 현상으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취업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이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고는 판단된다.

이렇게 서비스 제공량의 차이가 취업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다면, 실제 서비스 수혜자들이 느끼는 만족도도 취업 난이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점검해 보자.

경기와 부산의 시범사업 참여자 2000명 중 3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사업 참여자의 특성상 면접 대상을 확보하는 일이 대단히 어려웠으며, 설문조사 수행기관인 동서리서치에 의하면 거의 2000명 사업 대상자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시도한 끝에 300명을 확보하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설문조사 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편의(bias)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업 참여자는 사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응답할 가능성

성과계약의 내용상, 취업난이도가 낮은 집단에게 서비스가 집중될 유인이 존재하고, 실제 1차연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파킹 현상이 어느 정도 관찰되고 있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제공 주기, 전반적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하게 관찰되지는 않으므로, 파킹 문제가 심각하게 현장에서 인식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 난이도의 차이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양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다면, 사업 참여자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이에 대한 반응이 관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취업 난이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제공 주기, 전반적 만족도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표 IV-1〉 취업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취업지원서비스	서비스내용은 내가 원하던 것이었다	서비스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	제공횟수가 적당	제공주기가 적당	전반적으로 만족
전 체	4.2	4.1	4.1	4.1	4.3
수 행 기 관					
경기자활센터	4.1	4.2	4.0	4.1	4.2
부산자활센터	4.3	4.0	4.1	4.1	4.4
참 여 자 유 형					
경 기 유 형1	3.9	4.3	4.0	3.9	4.2
경 기 유 형2	4.3	4.2	4.0	4.1	4.2
경 기 유 형3	4.0	4.1	4.1	4.1	4.2
부 산 유 형1	5.0	5.0	5.0	5.0	5.0
부 산 유 형2	4.1	4.1	4.1	4.1	4.4
부 산 유 형3	4.0	3.8	3.8	3.8	4.3
부 산 유 형4	4.2	4.0	4.1	4.1	4.4
부 산 유 형5	4.4	4.2	4.1	4.1	4.4
부 산 유 형6	4.3	3.9	4.2	4.2	4.4

주: 1. 경기지역은, 세 유형으로 취업 난이도에 따라 사업 참여자를 분류하였고,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유형에 관계없이 모두 5점 척도에 평균 4.2로 나타남
 2. 부산지역은, 여섯 유형으로 사업 참여자를 분류하였으며, 취업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척도에 평균 4.3과 4.4에 분포함
 3. 사업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실행한 프로파일링에 근거하여 조사한 내용이므로, 별도의 근로능력평가기준(조세연 보고서)에 근거한 결과와 바로 대응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은 있음

3.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의 적정성

정부와 민간의 위험 분담은 성과달성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인의 발생으로 인한 위험 분담 문제로서,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사업 대상자 수의 증감과 주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위험 분담문제는 성과계약의 내용에 반영되며,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사업 시행 초기에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크기를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일정 범위 이상의 외부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때는 재협상에 임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기도 한다. 한편 외부요인의 변화에 따른 위험의 크기에 대해 합의가 가능한 경우는, 계약조건에 일정 범위의 외부요인의 변화가 발생할 경우 취업성공 성과급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기도 한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계약 내용에 이런 위험 분담에 관한 문제가 명시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계약조건에 위험 분담의 문제가 담기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위험 분담은 사업을 위해 지급되는 기본급과 성과급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기본급의 크기가 실제 사업비용을 보상하고 남는다면, 사업 수행기관의 위험 분담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반대로 기본급의 크기가 실제 사업비용보다 상당히 낮다면, 사업 수행기관이 위험의 많은 부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목표는 초과 달성되어, 1차연도 사업에 있어서 사업 수행기관의 위험 분담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표 IV-2〉 시범사업의 기본급 및 성과급 구조

구 분	기본급	성과급		
		취업(창업)	6개월 이상 지속시	(수급자)탈수급 (차상위자)소득규모
1인당 지원액 (430만원)	150만원	85만원	85만원	110만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경우는, 1차연도 시범사업 내용만으로는 정부의 위험 분담 크기를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사업비 감소 요인을 발굴하여 기본급을 줄이고, 시범사업 3년차에는 기본급과 성과급 크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목표는 초과 달성되어, 1차연도 사업에 있어서 사업 수행기관의 위험 분담 문제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계약 관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업 수행기관과의 성과계약 디자인의 적정성 확보와 사업 대상자 관리 발굴 및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4. 서비스 제공자의 유효 경쟁 유지와 모니터링 기능 확보

민간서비스 제공자와의 성과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 간의 유효한 경쟁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만약 다수의 민간서비스 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민간사업자와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열위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서비스 제공자가 독점적인 위치에 있게 되면,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업 수행기관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사업의 특성상 동일지역의 수행기관의 재계약율이 상당히 높으며, 사업 수행기관의 수요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우리나라는 사업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유효 경쟁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유효 경쟁을 염두에 둔 사업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존 자활사업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민간영리기관 등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다수의 사업 수행기관이 존재함은 확인되고 있다. 1차연도 시범사업에는, 경기지역은 기존 광역자활센터가 주축이 되어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방식, 부산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개입하여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였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이 서비스 제공자에서 계약 관리자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사업 수행기관과의 성과계약 디자인의 적정성 확보와 사업 대상자 관리 발굴 및 관리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과계약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여 확보하고 사업대상자의 필요를 파악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성과계약에 프로파일링에 근거한 성과급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사업 대상자의 취업난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을 정부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과계약 내용에 담긴 비용 및 성과급의 적정성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역량이 필요하다.

1차연도 시범사업에서는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링을 수행할 역량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프로파일링의 수행을 위해서는 프로파일링을 위한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고, 개발된 프로파일링 도구를 활용하여 적용할 역량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존 자활사업에서는 기초지자체의 복지담당자들이 근로능력 판정을 수행하였으나, 성과계약의 경우는 명시적인 경제적인 유인과 결부되므로, 보다 전문화된 인력이 일관성 있게 프로파일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더불어, 사업 수행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 및 평

가 기능의 강화 필요하다. 1차연도 시범사업은 중앙자활센터에서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했으나,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수행에 곤란을 겪었다.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계약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기구의 역량 확보가 필수적이다.

5. 기타 쟁점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재정절감 효과를 1차연도 사업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1차연도 사업의 성과가 목표치를 초과 달성함으로써 긍정적인 첫 출발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취업 난이도가 높은 사업 대상자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향후 시범사업 기간 동안에 1차연도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또는 정합성 문제가 있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과 중복성 또는 정합성 문제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판단된다. 기존 자활사업의 구도하에서는, 사업 대상에 있어서는 조건부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사업 대상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고, 근로능력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인 대상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사업 대상자의 구분이 이루어져 왔다.

자활사업에서는 일반 수급자와 차상위층 가운데에서도 희망자에 한해 참여가 이루어졌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은,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두고, 성과계약의 도입과 사례관리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사업 대상자로는 수급자와 차상위층을 포함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차상위, 차차상위층과 근로 능력이 있는 기존 수급자도 포함한다.

이상의 두 사업 간의 쟁점은 사업 대상자의 중복과 사업에서 제공하는 유인 체계의 부정합성 문제이다. 사업 대상자의 일부 중복은 사업 간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양 사업이 사업 참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유인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취업자에게 일회성의 취업성공 보너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서 제공하지 않는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업 참여자의 입장에서는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보다는 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유인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인의 부정합성으로 인해, 두 사업 간에 비생산적인 충돌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는 보건복지부

사업 대상자의 일부 중복은 사업 간의 경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할 수도 있으나, 양 사업이 사업 참여자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유인이 다를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1차연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수급자들의 성과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와 노동부가 협의하여 풀어야 할 숙제이다.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과도 대상자의 중복과 유인체계의 부정합성 문제가 있으나,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 사업이므로 지속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희망근로사업은 종료하되, 지역밀착형으로 사업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기존 보건복지부와 노동부 사업과의 관계를 점검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향후 신규 사업 도입 시 유사 목적의 기존 사업에 대한 점검과 조율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자활사업과의 관계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기존 자활사업은 시범사업과의 조율을 통해 사업 참여자의 적절한 배분을 도모하여 사업 참여자의 혼란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선정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기존 자활사업과 시범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사업 대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IV.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과 시사점

1. 1차연도 시범사업의 성과 요약

1차연도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취업률과 취업유지율에 있어서는 상당히 양호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차상위 계층뿐 아니라 수급자들의 성과도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취업 연계율 목표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명시적 유인을 도입하는 방식의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판단된다.

각 지역에서 보고한 취업 관련 실적(2010년 2월말 현재)은 다음과 같다⁴⁾.

〈표 V-1〉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취업자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취업성과급 신청대상자 (최저임금 이상 직장 1개월 이상 근무)	381 명 (창업 1인)	38.2%	351 명 (창업 16인)	36.7%

4) 여기에 보고된 수치는 제Ⅲ장의 분석에서 도출된 수치와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제Ⅲ장은 각 사업 수행기관이 중앙자활센터에서 관리되는 DB에 입력하여 보고한 자료에 근거하고 있고, 여기서는 중앙자활센터의 서류 접수를 통한 실적치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취업이나 취업유지율의 실적치를 취업성과급 신청대상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성과급 신청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제 취업률이나 취업유지율과는 시차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앙자활센터의 DB 수치는 각 사업 수행기관 사례관리자의 입력 오류 및 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표 V-2〉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6개월 이상 취업유지자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인원	비율	인원	비율
6개월 취업유지성과급 신청대상자	147 명	79%	84 명 (창업 8명)	60.1%

주: 6개월 이상 취업유지자는 (2010년 2월까지의 취업유지 성과급신청대상자수/ 2009년 9월까지의 취업자성과급 신청대상자 수)로 계산되었음.

〈표 V-3〉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탈수급 예상자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탈수급신청 대상자수	77 명	67 명

주: 1. 이상의 수치는 2010년 2월말 현재 수치로, 1차연도 사업의 최종 성과는, 일정기간이 소요되어야 확정 수치로 파악 가능
 2. 이상의 수치는 2010년 2월말 현재 성과급 신청자 기준이므로, 실제 실적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3. 계약서상 최소 성과 목표
 - 취업(창업률) : 20%(200명)
 - 6개월 이상 취업유지율 : 60%(120명)
 - 탈수급률 : 10%(100명)

다만, 취업처의 특성은 여전히 근로 여건과 조건이 양호하다고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자의 임금 분포는 다음과 같다.

- 경기지역 : 월 836천원~월 120만원 82%
- 부산지역 : 월 836천원~월 120만원 53.1%

〈표 V-4〉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지역 취업자 임금분포

월임금	시범지역	경기지역	부산지역
83.6만 ~ 120만원 이하		82 %	53.1 %

한편,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편향(bias)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업 대상자의 특성상,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참여자의 경우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을 확률이 크므로, selection bias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서비스 내용, 서비스양, 취업 성공 요인, 취업 직장에 대한 만족도 등에 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참여자의 유형이나 중도

시범사업에서 제공된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설문조사 대상 선정에 있어서 편향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 설문조사 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SERVQUAL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공감성이라고 나타났다.

탈락자 여부, 거주 지역, 성별 등에 따라 만족도의 차이가 유의하게 다르지 않다. 다만, 취창업 성공자 여부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만족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SERVQUAL 방식으로 측정한 결과,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 제공의 공감성이라고 나타났다. 공감성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수혜자들의 문제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에서는,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서비스의 유형성(tangibles), 신뢰성(reliability), 대응성(responsiveness), 보증성(assurance), 공감성(empathy)으로 분류하여 측정하였다.

2.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개선 및 발전 방향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정책과제 자체를 논하기 전에, 시범사업 자체가 가진 한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시범사업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성과를 제고하려는 시도이지만,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제도 자체가 수급자들에게 탈수급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취업을 통한 탈수급 유인이 강화되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근로소득 증대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벗어나는 경우, 각종 현물급여 혜택이 중단되므로, 수급자의 탈수급 유인이 미약하다. 수급기간의 제한이나, 수급권을 일정 연령 이하의 계층에게는 제한하는 방식을 검토하여, 소득 창출을 통해 탈수급 하고자 하는 유인을 제도 내에 갖출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 사업 참여자의 자립 동기는 부족한 상태에서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제부터 시범사업과 관련된 정책과제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기회주의적 행동을 최소화할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1차연도에서는 성과계약의 조건이 사업수행기관이 전략적/기회주의적 행동을 할 유인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주의적 행동의 양상이 심각하지는 않았다. 부산지역에서만, 근로능력 점수가 높을수록 서비스 제공량이 많아지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나, 참여자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참여자 유형에 관계없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므로, 파킹(parking)으로 인한 문제가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회주의적 행동의 유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은 1차 연도의 현상은, 선택된 두 개 지역에서만 진행되는 시범사업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니터링이 집중될 것임을 인식하므로, 현저한 파킹(parking) 전략을 채택하기에는 사업 수행기관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차연도에는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인천과 전북지역으로 확대되므로, 사업 수행기관의 전략적 행동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파일링 수단이 개발되지 못한 이유로, 2차연도 성과계약에도 취업 난이도에 근거한 성과급 조항이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2010년에는 1차연도 시범사업과 자활사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업 난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 수단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의 3차연도 계약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직접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 난이도와 연계된 성과급 구조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계약 구조를 활용하여야 한다. 취약계층의 취업이 정책의 목표라면, 취업난이도가 높은 경우의 취업 성공에 지급되는 성과급의 크기가 커야 하며, 반대로 취업을 제고 자체가 정책 목표일 경우는, 취업 난이도에 따른 취업성공 성과급의 차등폭이 작아도 될 것이다.

프로파일링에 연계된 성과계약뿐 아니라, 서비스 제공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거나,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차년도 계약에 연계시키는 방식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억제할 수도 있다. 외국 사례에 의하면, 프로파일링에 연계된 성과계약 방식만으로는 완벽하게 기회주의적 행동을 방지하지 못하므로, 서비스 제공의 최소 기준을 명시하거나,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재계약과 연계시키거나,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둘째, 정부와 사업 수행기관과의 적절한 위험 분담 문제를 기본급과 성과급의 적정 크기와 연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성과계약의 기본급과 성과급 크기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초기이므로 판단하기에는 빠른 측면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측면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동부의 일자리 관련 DB를 공유하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취업처 발굴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 기본 사업비를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1차연도 사업 수행기관이 2차연도에도 연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와 부산지역의 경우, 1차연도와 달리 고정비용이 상당히 절감되

시범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직접적인 모니터링에 의해 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어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취업 난이도와 연계된 성과급 구조를 기본적인 수단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발굴, 서비스 기준 개발, 사업 참여자의 프로파일링 관련 업무,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앙기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므로, 계약금액 자체의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차연도 시범사업 계약에는, 취업 난이도와 연계된 성과계약 요소를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본급과 성과급의 절대적 및 상대적 크기에 대한 조정도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가격 경쟁 요소를 포함하여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유효 경쟁 여건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의도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사업 수행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지역은 기존 자활사업 경험에 근거한 사업 수행기관이 선택되었으며, 부산지역은 지자체 직영 성격이 강한 비영리기관이 선택되었다. 2차연도 사업 수행지역으로 인천과 전북지역이 선정되어 지역의 다양성이 확대되고, 사업 수행기관도 민간영리기관이 참여하여 수행기관의 성격도 다양화되고 있다. 향후 시범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 추진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넷째,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운영을 위해 사업대상자 발굴, 서비스 기준 개발, 사업 참여자의 프로파일링 관련 업무,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앙기구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중앙자활센터의 인력과 역량으로는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기획, 운영 및 조정 역할 수행에 난점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시범사업의 확대를 염두에 둔다면, 사업 대상자의 발굴과 사업 대상자의 취업난이도에 따른 프로파일링, 사업 수행기관의 모니터링의 기능 수행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중앙기구의 역량 개발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의 중복성과 유인체계 부정합성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강점은 지자체를 통한 사업대상자 발굴과 취약계층의 수요에 부합하는 사례관리의 제공이므로, 차상위 계층보다는 수급자와 수급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사업대상으로 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는, 취업 성공에 대해 취업 성공자에게 일회적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대상자는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 이상의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런 일시적 성공 보너스는 취업 성공자에게 일회성 유인을 제공하여 왜곡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과관리형 자활사업과의 유인체계의 정합성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취업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변화 추세 가운데 하나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취업 서비스 제공 행정과 복지 서비스 제공 행정 간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 사업평가 방법론에 부합하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를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자와 비교될 수 있는 집단의 사업 개시 전 초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업 종료 시점에서 비교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생산과 관리에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IP**

취업연계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 중요한 변화 추세 가운데 하나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취업 서비스 제공 행정과 복지 서비스 제공 행정 간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박노옥,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회서비스 성과관리 외국사례 분석』, 한국조세연구원, 2008.



정책토론회 리포트

-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 일 시 2010년 7월 29일(목) 10:30~12:30
-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10:30~10:4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10:40~12:00 주제발표 및 토론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 ▶ 사 회 자 곽태원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 발 표 자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원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자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박인례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정헌배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조성기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
현진권 이주대 경제학과 교수

(가나다 순)

12:00~12:3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2:30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7월 29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향

성명재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상원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배경 및 목적

- 주류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대부분의 나라에서 규제와 관리의 대상
 - 식품으로서의 기본적 안전성 확보, 높은 세율에 따른 탈세 방지, 사회 전체의 과다소비 억제 필요, 불법집단과 연계되었던 역사적 배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주류에만 적용되는 높은 기준의 행정관리가 존재

- 우리나라도 주세법령 및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제조·판매의 면허 부여, 높은 세율의 부과와 징수, 검정·검사 등의 관리 및 통제가 주류 행정의 주된 요소로 자리잡아 왔음.
 - 1990년대부터 개방화와 더불어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강한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최근 술에 관한 안전관리업무 및 전통주 육성 등이 식약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 주류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통제 및 세수확보 차원에서의 접근이 주류 산업의 성장을 막고 있으며, 자유로운 시장기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최근 제기
 -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에서 탈피하여 자발적 경쟁 유도와 적극적 산업육성을 통한 세계적

브랜드 확보로 정책기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
 • 그렇지만 주류라는 재화의 특성상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정당국의 역할도 반드시 요구되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검토 필요

2. 현황

- 주류는 음료의 하나로서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음주관련 외부불경제로 인해 규제·관리의 대상
 - 주류관련 규제는 제조·유통·소비단계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존재
 - 제조단계: 제조면허제, 제조시설기준, 품질기준 등
 - 유통단계: 판매면허, 주류 판매장소, 시간규제 등
 - 소비단계: 주세 과세를 통한 수요·소비 억제를 유도

-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류 과다소비 및 무분별한 소비 방지를 위해 국가마다 높은 수준의 행정관리제도 유지
 - 대다수의 경우 주류 제조·판매면허제(또는 국가전매제)를 실시하고 고율의 세율을 부과
 - 단, 프랑스 등 일부의 경우 와인 등 자국의 주력 상품에 대해 주세를 무세화하는 경우도 있음.
 - 그러나 증류주 등 독주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면허제도를 시행하는 등 엄격히 규제

- 그 이면에는 적절한 세원관리의 필요성도 크기 때문
 - 일반적으로 독주일수록 주세율이 높고 탈세의 경제적 유인이 크기 때문에 세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도 면허제를 엄정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많음.

3. 개선방안

-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였을 시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인위적 경쟁제한에 따라 경제적 지대 발생
 - 신규진입 제한에 따른 소비자 선택 제한
 - 반면에 무분별한 시장진입에 따른 자원 낭비의 가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음.
- 시장여건에 부응하기 위해 면허제 개선 및 시설 기준 현실화에 대한 논의 필요
 - 소주·맥주 등의 경우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부 주종에 대해서는 면허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가능
- 중장기적으로 면허행정의 타 부처 이관 문제는 세원관리가 과세당국 고유의 업무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
 - 본원적 주류행정은 과세당국이 보유·관리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일반적
- 상기와 같은 제도 개편은 이해관계와 정책의 효율성, 소비자후생,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토론 요약

경쟁 가능한 신고제가 바람직

박기백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과거에는 술의 제조가 자유로웠다고 들었는데 일본 점령기 이후 통제의 필요성에 의해 규모가 축소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술도가'란 개념이 생겼으며 통제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다.

품질기준은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로 나뉘었다. 시설기준은 사전적 통제이다. 시설기준이 좋다고 품질이 좋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므로 품질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좋은 물건을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만 거기에 맞는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사전적 통제인 면허제라는 것은 소수의 사람에게 술을 제조·판매할 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불가피하게 독과점 이익(경제적 지대)이 발생한다. 이러한 지대는 정부가 흡수해야 한다. 술에 대한 면허라면 굉장히 큰 금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면허제보다는 신고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쟁과 다양성을 통하여 혁신이 발생하고, 품질이 좋아진다. 다양한 업체가 있다면 경쟁 속에서 좋은 품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물론 업체 수가 아주 많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4~5개의 업체가 있더라도 그 속에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할 수 있다. 어쨌든 사전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면허제나 시설기준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원이 술 분야로 과다 배분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자원배분은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다만, 술의 경우에는 외부효과가 있고 그래서 통제하고 있는데 수량을 통제하면 독과점 이익이 발생하므로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통제가 바람직하다.

주무부서라는 것은 누가 업무를 맡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식품안전과 관련되어 있으면 식품 담당부서가 담당하면 될 것이고, 탈세가 문제가 된다면 국세청 등 관련 부서가 하면 된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재무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관련 정책보다는 세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본적으로 국세청은 제조 유통과 관련된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해당 부서에 넘기는 것이 맞다고 본다.

술, 재화 특성상 면허제 유지해야

박인례 / 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주부교실중앙회 사무총장

주류산업의 규제 완화 이슈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인 진입규제 완화의 한 아이টে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경쟁력 강화와 주류산업에서의 진입규제 완화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의문이다.

주류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면, 소비자 측면에서 소비자의 선택과 후생이 증대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소비자운동에서는 주류시장의 규제 완화 문제보다는 주류가 가지고 있는 외부불경제 효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금주운동, 절주운동, 청소년 음주문제 해결 방안 등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술소비 증가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와인, 위스키, 브랜디와 같은 고가 주류들의 소비가 눈에 띄는데, 브랜디는 320%가 증가하였고 위스키는 147%, 와인은 615%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맥주는 26.8% 증가, 소주는 1.5%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의 알코올 중독자가 200만명에 이르고 있

는데, 중독자 가족까지 포함해서 살펴보면 대략 1,000만명이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 치료율이 매우 낮고 고착하기 쉬운 질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술 광고가 넘쳐나서 청소년들과 여성들에게 알코올이 쉽게 접근되고 있다. 한편, 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적 책무로서의 예산 책정은 지자체와 정부가 50:50인데 작년에는 중앙정부의 예산 20억원이 삭감되었다.

러시아와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음주가 국가경쟁력을 저해시킨다고 판단하여 향후 10년간 술 소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증가한다고 주류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의구심이 든다.

새로운 시장은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게 된다고 판단했을 때 술 소비는 늘어나게 된다고 생각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세수증대, 기업은 이윤창출,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혜택이 있겠지만, 과연 사회적 비용인 20조원을 넘어서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다.

오늘의 발제와 관련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술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면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과 만족을 위한 다양한 품종, 고품질의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시설규모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대신 시설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술은 식품으로서 품질 및 안전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행정업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한 가지 관련 업무에 대해서 여러 행정기관이 담당할 경우에 중복되는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이 전담하는 것이 맞고, 품질과 안전 문제는 식약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술 품질정보를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소식을 접했다. 세무당국이 내는 술 품질정보가 어느 정도 소비

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부처 간 이해관계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소비자 관점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첫째 주류시장의 경쟁정책을 시장진입의 관점보다는 다양한 품종, 고품질, 안전이 경쟁이 되는 주류시장으로 유인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통주의 경우 농림수산물부가 전담을 하는데, 전통주의 과대 과장광고가 시장을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제 강화 필요성을 느낀다.

셋째 음주 연령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에 대한 주류산업의 책무가 동반되어야 한다. 사행산업의 경우 법적으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서 도박 중독자 예방 및 치료에 쓰이게 되는데 주류산업도 하나의 정책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류산업 현실 감안한 정책제시 필요

정헌배 /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주류산업의 정책변화는 그것이 규제개혁이든, 공정거래나 청소년보호를 위한 것이든 정책이 나아갈 바를 제시하는 동일한 논리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개선방향 제시는 이러한 논리에 대비해서 현실 상황을 어떻게 고쳐갈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가 특이하여, 과연 술 산업 규제에 어떤 논리를 적용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이상적인 모델이 있다면 어떻게 적용하고 그에 다가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다.

예를 들어, 주류 제조면허제를 신고제로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non-sense로 본다. 농민 대다수가 술을 만들기 위해 포도를 경작하는 프랑스의 와인과는 달리 우리 농민은 식용 산업에 사용한 후 남은 잉여농산물로 술을 만드는데 그런 면에서 신고제를 할 경우 엄청난 시장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주류 제조면허제도의 개선방안 역시 이러한 논리와 현실을 감안하여 미래상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국가, 산업, 개별 기업, 소비자라는 네 가지 차원에서 다시 보아야 한다. 본 토론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국가정책과, 주류산업, 주류 제조업체, 소비자 차원에서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본 토론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논리(logic)	현실(Status)	미래(Future)
국가정책	제조는 풀고 유통은 묶고	제조는 묶고 유통은 풀고 *점진적 개선중...	맥주, 소주 과도한 기준 60kl 이하로 조정
주류산업	자율 경쟁구조 대외 경쟁력 확보	대기업, 영세업체 양극화 현상 초대형, 초영세	공존의 장
주류업체	다양성, 차별성 지속가능성(윤리성)	표준화, 규격화 비윤리성	우리 농산물 가공업체 문화적 선도자 사회적 기업
소비자/ 음주자	소비자선택 안정성	선택은 많으나 교육 이 없다 안전성 담보	소비자 교육 정보의 투명성

국가적 차원의 논리는 술과 관련 제조는 많이 풀고 술을 살 때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좋은 술이 다양하게 생산되도록 하되 소비자의 술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철저히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 세계적인 논리다. 우리나라도 이를 외면해 온 것은 아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지만 제조, 즉 시설기준을 너무 묶어

둔 경향이 있다. 맥주나 소주들은 여타 기업들이 진입하기에 힘든 상황으로 그 진입규제를 풀어야 할 때로 본다. 맥주의 경우 준거기준으로 일본의 경우처럼 60kl 정도로 줄여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산업을 보면 소비자보호나 sin tax 등 조세문제가 있지만 건전하게 산업을 살려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 주류산업의 현실은 양극화되어 있다. 대중주와 전통주는 현실이 극명하게 나뉜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세기업과 대기업이 공존하는 것이다. 꼬냑의 경우 3,000개의 술 관련 업체들이 모두 공존공영하는 성공적인 케이스를 보여준다. 정책적 방향이 공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개별 기업 차원을 보면 좋은 상품의 생산으로 기업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시대가 품질을 요구하고 있고 정확한 정보 또한 요구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sustainable)한 system이 필요하다.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만드는 곳은 사회적 책임을 저야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키는 것이 기업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농림부에서 표준화, 규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안전하지 않은 술을 제조하는 기업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문제를 보면 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하고, 선택 가능성은 높아져야 하며, 안전성은 국가가 쥐야 한다. 막걸리 유산균 논쟁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된다. 또한 술인데 피부가 좋아진다는 등 국가가 홍보하고 있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소비자 교육은 필요하지만 제도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하다.

신고제도 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이는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동종 주류의 술 제조자가 많을 때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는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의 제조업체를 위해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나서는 것은 행정비용이나 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주류 행정의 주무부서를 식약청으로 하든 국세청으로 하든 중요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품질이다. 만약 지금의 제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이는 먼저 국세청의 서비스 품질을 제고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제도의 목적과 실행의 주체 문제라는 측면에서 보아야 하며 시설기준은 너무 낮춰서는 안 된다. 단순 경제논리로 가기에는 산업이나 사회적 현실이 따라주지 못한다고 본다.

현실적 기반 위에서 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 필요

조성기 / 한국주류연구원 연구본부장

논의를 크게 시설기준, 면허제, 소관부처의 문제로 축약하였다.

한국은행의 Macro Data를 살펴보면, 주류시장 성장성이 타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류시장의 수요가 지난 15년 정도 정체되었고, 향후 10년 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는 일본의 자료에서도 나타났던 문제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도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현재 주류산업의 현실이다.

수익성과 생산성 중에서 먼저 생산성을 본다면 1인당 부가가치액이 상당히 높다.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살펴봤을 때 생산성이 이렇게 높는데 과연 경쟁력이 낮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문해 본다. 수익성 추이는 다른 산업보다는 높지만 최근에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지난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타 산업에 비해서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

단된다.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문제는, 국가고객만족도지수(NCSI)의 1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고객만족도(CS)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선택권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과연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선택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선택권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소비자만족도조사(NCSI)에서 고객만족도(CS) 결과가 현재 72점이다.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승용차의 경우 70점, 휴대폰의 경우 71점이며, 다른 음료산업의 경우 69점이다. 이런 결과를 보았을 때 과연 소비자들이 술이 다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면허제와 관련하여 오늘날의 면허제도 문제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가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술에 대한 합의가 변화하지 않았는데도 변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면허제도, 시설기준, 소관부처의 문제가 사실은 술이 무엇이나 하는 국민적인 합의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술에 대한 시각은 상반되어 있는데, 한 쪽은 술이 소비자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외부 효과를 동반할 수 있다는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한 쪽은 식음료와 같은 일반 재화로 보는 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적 입장이다. 후자의 시각이 농가소득 문제, 국가경쟁력 문제와 함께 대두되면서 신고제로 바꾸면 술 종류가 다양화되고 경쟁력이 높아져서 좋은 술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대척점에서 출발해서 국정철학이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 주류산업은 국제청을 중심으로, 면허제를 중심으로, 시설규제를 중심으로 틀을 만들어 현재의 시장을 만들어 왔는데, 그런 틀을 바꾸는 것이 과연 필요한 시점인지, 과연 주류산업의 경쟁력이 낮

은지, 소비자 선택권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음주문제자가 늘어나고 있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술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WHO에서도 규제를 강화할 것을 주장하는데, 술 진흥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여 보자고 주장하는 나라는 아무리 데이터를 찾아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21세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격 문제하고도 연관되지 않나 생각한다.

세부적인 논의를 해보면, 진입규제를 완화하면 주류의 품질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소비자 만족도를 보면 과연 소비자 선택권, 품질 다양화가 문제인가를 살펴볼 수 있다. 소비자 만족도는 잘 아다시피, 술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부터 기대와 가격을 비교한 가치, 재구매 상황, 불만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지표인데, 국가경쟁력을 갖춘 다른 상품에 비해서 높지 않은가? 이런 것을 본다면, 소비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허수라고 생각한다.

술 산업에서 본다면 현재 규제가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희석식 소주의 경우 63종이며, 증류식 소주의 경우에는 면허권이 35개가 있다고 데이터에 나오는데, 현재 100가지 소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맥주의 경우 2개 회사에서 15종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소형 양조장(microbrewery)의 데이터를 보면 77개가 있는데 여기에 술이 3~4가지가 나온다고 한다면 맥주는 약 200여 가지의 상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 선택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과학적인 문제제기인지 의문이다.

비교해서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4개의 맥주회사에서 23개 주종을 만들어 내고 있고, microbrewery가 수 백개가 있기는 한데, 주요 4개 회사에서 주요 제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몇 개라도 좋은 제품이 많이 있으면 경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규제를 완화해서 진입이 시작되면 시장이 다양화될 것이라고 발표자료에 적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였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현재 수요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생존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이 무엇으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주질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탈세의 위험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과거에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았고, 사실 서구에서도 현재까지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이 증류식 소주와 맥주시장에 들어오게 될 경우 현실적으로 부작용이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기업의 경우에도 유통 장악력이 있는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요 감소 또는 정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주의 경우 일부 허용되는 첨가물과 도수 변화 또는 물을 새로 개발하면서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대기업이 들어와도 특별한 것을 만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다양성보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희석식 소주의 특성이 아닌가 한다. 맥주의 경우에도 얼마만큼 다양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신고제로 한다고 할 때 과연 우리나라가 신고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다. 신고제를 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스위스, 덴마크, 독일을 들 수 있는데, 스위스는 주류가 생산 독점제에 있는 특수한 상황이다. 덴마크는 인구가 500만명이며, 나라 전체가 규제 없이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1500년대부터 맥주순수령으로 품질을 관리해 왔고, 소·영세업체들이 산지에서 만들고 있다. 와인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신고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필요한 주류의 수입이 가능한 열려 있는 느슨한 면허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을 경우 부작용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시장에서 전부 나타날 것으로 예

상된다.

시설기준 현실화의 경우에는 일본처럼 바꾸자는 것이 한 가지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 실제로 시설기준을 완화했지만 행정지도로써 소주, 청주 면허를 허가하지 않은 지 오래 되었다. 따라서 국세청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 행정지도로써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설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소주, 청주에 진입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에 면허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때 시설기준을 완화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윤은 낮아지고, 수요는 감소하는 시점에서 시장을 착각하고 진입하는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면허제도밖에 없는데 면허제를 바꾸게 된다면 국세청이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

소관부처의 문제는 통합행정이라는 시스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농림수산부에서는 전통주 진흥과 함께 술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알코올 함유량이 6%인 막걸리의 세율은 5%인 반면에, 알코올 함유량이 4.5%인 맥주의 경우에는 72%의 세율을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막걸리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조세형평성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원료문제의 경우 2012년에 농수산부가 농가를 지원할 수 없게 된다면, 주류기업이 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여 농가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시장 조정은 농수산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실제로 기업의 수가 무한정 늘어나서는 안 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수준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술을 무한정 늘리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주류 보관문제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식약청이 보관문제까지 모두 망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만약에 대기업이 유통과정에 신고제로 들어오게 되면 영가판매로 인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시장혼란이 발생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럴 경우에 없어지는 회사가 발생하게 되면 세원관리에도 문제가 생기게 된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주류에 대해서 나누어진 행정부처가 행정적으로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술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철학과 행정문제와 같은 본질적인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가 의문이다. 현재 느슨한 면허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 이상 과연 더 개선할 수 있겠는가?

시설기준도 우리나라 특유의 사정이 있는 것이고, 진입규제의 문제도 오히려 지금과 같이 대기업 시스템에 영세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품질 다양화와 주종 다양화의 경우에는 제조방법과 소프트웨어 규제는 현재도 남아 있는데 하드웨어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를 규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술 수요 증가에 따르는 주류제도 개선 절실

현진권 /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기본적으로 사고의 차이를 많이 느낀다. 정부의 목표는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고 시장참여자는 합리적이라는 가정하에 이루어진다.

오늘 내용은 mix되어 있다. 술은 사회적 비용이 커서 줄여야 하며(백퍼센트 동의한다), 소주가 주는 사회적인 비용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은 행정의 문제로 상관이 없다.

품질규제란 말이 발제문에 많이 있지만 술은 나쁜 것도 있다. 나쁘면 가격이 싸고 좋으면 비싸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니멈을 컨트롤해야 한다. 품질규제는 시장에 맡겨

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이 망하리라는 사고는 경직적인 사고로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공급자가 자기 자신의 사업이므로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한다. 또 하나 육성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기능과 육성과는 다른 개념이다.

세원관리와 면허제와의 연관성을 보면 66년도 주류개혁을 할 때 행정상황은 100명당 1대의 컴퓨터가 있던 시절로 그 수준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다. 지금은 국세청 직원보다 컴퓨터 수가 더 많다. 세원관리와는 별개의 문제다.

본 토론자가 주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술은 식품이고 앞으로 술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문제의 키포인트는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주류산업이 제도로 인해 한계를 맞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개방화 시대로 독일 맥주나 일본 사케 등 소비자들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데, 왜 60년대 체계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면허제는 경제학적으로 확실하다. 공급자의 선택은 정부보다 합리적(rational)이라는 것이다. 농업의 경우 수익이 없는 산업이지만 앞으로 술이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규제는 input control이며 정부 규제는 input control을 하지 않는 방향이 많다. 민간은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아이디어로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포털사이트에 맥주 클럽이 존재할 정도로 수요가 높다. input control을 없애고 output control로 가야 한다. 정부는 등급만 주고 다음 판단은 소비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

누가 행정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슈가 있다. 술은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핵심 산업이다. 그 지방 재원으로 생산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나가려면 중앙정부의 그러한 체



제를 지방정부에 넘겨야 한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체제를 넘기는 데는 술만큼 좋은 아이템이 없다고 본다. **KIP**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 일 시 2010년 8월 9일(월) 15:00~17:00
- 장 소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
- 진행순서
 - 15:00~15:10 개회사
 - ▶ 개 회 사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15:10~16:30 주제발표 및 토론
 -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 ▶ 사 회 자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
 - ▶ 발 표 자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 토 론 자 김낙희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김원일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 오유택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 이상기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 장경덕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장현재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가나다 순)

16:30~17:0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17:00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8월 9일 한국조세연구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은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요약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 세무검증제도 도입방안 -

전병목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1. 배경

- 우리나라의 세원투명성 수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현금 대체 거래수단 도입 및 활성화로 전반적인 세원투명화에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들은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지출금액 소득공제제도 등으로 그 효과성을 제고
- 거래투명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직접적으로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이 필요
 - 간접적인 거래투명성 제고의 효과도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성실한 세무신고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
- 그러므로 납세자 개인의 납세순응노력을 유도하는 체계 구축을 통해 거래정보 투명화로 이루어진 성과가 실질적인 성실소득신고로 나타나도록 해야 함
 - 기존의 전반적인 거래정보 투명화 노력은 거시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세원투명화라는 미시적 입장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높음
 - 구체적으로 개인의 투명한 세무신고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정책인 세무조사와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가능한지 검토

할 필요

- 성실한 세무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검증제도의 도입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세무신고 투명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주로 간접적인 검증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집중되어 왔으며 그 결과 세원투명성은 개선 추세
 - 미시자료에 기반한 학술연구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은 1990년대 50% 수준에서 2000년대는 50~80% 수준으로 개선
 - 성명재(1999)에서는 1994년 51.8%, 1995년 50.7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철인(1998)은 1994년 48.2%, 1995년 55.4%로 추정
 - 전병목 · 안종석(2005)은 자영업자 소득보고율을 64~78%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며 노영훈 · 김현숙(2005)은 54.2%로 추정
 -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통계와 국세청 신고소득을 비교한 소득신고율은 2005년 34.6%에서 2008년 48.0%로 크게 증가
 - 세원투명성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로 이용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2008년도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사용실적은 401.1조원으로 민간최종소비의 71.9% 수준이며 이는 2006년 기준 58.5%보다 크게 높아진 수준
- 한편 납세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은 세무조사인데 세무조사 비율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인원 대비 세무조사 비율은 2004년 0.21%에서 2008년 0.11%까지 하락

- 조사비용이 낮아진 것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인원도 2004년 4,370명에서 2008년 3,335명으로 크게 하락
- 반면, 확정신고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무조사를 통한 납세순응도 향상이라는 기능은 상당히 약화된 것이 사실
- 이러한 세무조사 비율은 미국, 일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납세순응을 유도하는 제도로서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위축
 - 2005년 기준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0.18%는 미국의 0.56%, 일본의 1.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 실시조사 이외의 간편조사까지 포함할 경우, 각각 2.92%(미국), 3.60%(일본)으로 그 격차는 더욱 증가
- 낮은 세무조사 비율은 탈세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
- 자영업자의 소득투명성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절대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으며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정책수단 도입이 필요
 - 기존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통한 세원투명화 정책의 효과는 그 유효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비용부담도 상당한 수준(2008년 1.5조원)
- 제도 도입의 두 가지 목적, 즉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과 세원투명화 제고 중 세원투명화 목적은 상당부분 약해지는 중
- 향후 유사한 성격의 지원제도 도입도 세수감소와 함께 거래수단 선택 왜곡 등의 비용을 초래
- 또한 고용구조상 소득과약이 어려운 자영업 부문 비중이 외국에 비해 높은 것도 세원투명성

제고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구조

- 자영업주, 무급 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자영업자의 전체 고용 중 비중은 2008년 기준 31.3%로 OECD 15.8%, G7 10.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 전반적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장제도, 사업용 계좌제도, 가산세 강화 등의 정책이 의도적인 탈세자를 줄이는 데는 한계
-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사업자의 업종별 소득탈루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이 필요
- 세무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납세순응도, 즉 소득탈루율 하락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라는 측면에서 효과가 제한적임을 시사
- 세무사의 책임소재 확인이 어렵고 시장에서의 영향력 측면에서도 경쟁적 공급자 지위에 있는 세무사가 수요자의 성실신고를 강하게 유도하기 어려운 입장

3. 개선방안

- 납세자들의 낮은 자발적 순응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 납세순응정책인 세무조사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 비슷한 납세순응도 제고 효과를 갖는 검증수준을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세무검증제도를 유력하게 검토해 볼 필요
 - 추가세원으로 세무조사 확대비용을 조달할 경우, 징수/지출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부담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불리
 - 동일한 검증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갖는 불확실성 등에 대한 부담감도 감소 가능
 - 단, 시장의 역학관계에 따라 세무사의 세무검증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한 제도설계, 지속적인 개선/모니터링이 중요

직접적 납세순응 유도방안별 장단점

	장점	단점
세무조사 확대	- 납세순응도 향상 - 낮은 세무조사 비율이 야기하는 대상 선정에 대한 불만 감소	- 정부규모 증가에 따른 비용 상승
외부 세무검증 도입	- 납세순응도 향상 - 민간 활용에 따른 효율성 증가(민간비용 v.s. 정부 비용) - 심리적 부담감 감소	- 효과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 개선노력 필요

- 세무검증제도는 일정금액 이상 수입을 가지면서 세원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높은 현금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사에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 세무검증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신고서 외에 세무사가 작성한 “검증확인서”를 함께 제출
 - 세무검증제도 대상 사업자 범위는 일정소득 이상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 종사 사업자
 - (예) 수입금액 5억원 기준 적용시 : 약 19,000명
 - 세무검증확인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고 이에 대한 외부감시 시스템이 존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바람직
- 세무검증 내용은 성실한 세무신고 유도 목적이므로 기존의 주요 조세회피 방안들을 포함
 - 구체적인 세무검증 내용을 담은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증

- 세무사의 탈세 방조·조장 예방, 사업자의 성실신고 간접 유도, 시간·비용 면에서의 실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할 필요
- 세무검증 체크리스트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 세무검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확인서를 제출한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부실 세무검증이 밝혀질 경우 세무사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부과
 - 징계의 종류는 과실 정도에 따라 과태료, 직무정지, 등록취소로 구분
- 단 체크리스트에 따라 성실히 검증한 세무사는 제외
 - 징계대상 부실 세무검증의 내용은 과실 여부 혹은 체크리스트 검증 위반사항 등으로 구체화할 필요
- 세무검증을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무조사 우대,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등의 혜택 제공
 - 무작위추출방식 정기조사를 배제
 - 종합소득 확정신고기간 연장(5월말→6월말) 등
- 세무검증비용은 납세자가 부담하며 동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가는 비용에 대해 일정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 허용
- 세무검증제도의 의도적 회피유인을 줄이기 위하여 추계신고제도 보완, 검증 세무사 사전신고 등의 방안을 추진
- 시행시기는 2011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2012년 신고시부터 시행

토론 요약

세무검증제도 반대

- 세무검증 비용·책임 세무사에게만 전가 -

김원일 /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

발표자(전병목)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실상 전문직종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전문직종의 투명성이 과연 부족한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한다. 특정 대상에게 세무검증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그 직종의 세금 탈루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05~2007년까지 3년 동안 세금탈루를 조사한 결과 현금수입업종은 46.6%, 기타업종은 44.6%인 데 반해 전문직종은 26.5%로 절반 수준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전문직종을 탈세직종으로 인식하게끔 오인하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이는 전문직에 대해 필요 이상의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며 지나친 세무간섭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전문직에 대해서 각종 의무 부여, 가산세 상향 조정, 간이과세제도 배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50% 과태료 부과, 세파라치제도 등을 시행하여 왔다. 제도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와 앞으로의 추이에 대해 검토한 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세무검증제도와 관련하여 정부는 납세이행 비용 발생 부문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주기보다는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최근 10여 년 동안 납세자 고유의 의무와 거리가 먼 지급조서 제출의무, 사업용 계좌 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 셀 수 없는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런 실상은 징세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징세비는 100원당 0.71원이고, 일본은 1.54원,

프랑스는 0.97원 등이다. OECD 회원국 중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2배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징세비는 거의 최저수준이다. 이는 과세당국의 노력도 있지만 납세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세무검증 비용이 모두 세무사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차별적 세무검증 비용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에게는 부당한 처사이다. 법에 명시해서 비용 부담을 강제하지 못하는 한 그 비용과 책임이 모두 세무사에게 전가될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반대한다.

세무검증 업무 범위, 내용, 방법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오윤택 / 인덕회계법인 부대표

먼저 오늘 세무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의 토론자로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한국조세연구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발표자의 발제 논문은 세무검증제도의 필요성, 도입방안, 기대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훌륭하다고 평할 수 있다.

본 토론자는 먼저 세무검증제도 도입 취지, 필요성 및 전반적인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특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제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회지도층의 경제사회적 책임 제고와 솔선수범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정책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제도가 특정 개인사업자만을 검증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고, 신고납부제도의 전제가 되는 납세자 성실성 추정 원칙을 해치고 있다는 만만치 않은 반론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응논리를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 등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토론자는 관련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실효성 제고 문제는 법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첫째, 검증업무의 공정성과 소득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장부기장대리인과 세무검증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보다 이론적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장부를 기장한 세무대리인이 세무검증을 수행할 경우 자기가 기장한 것을 자기가 검증하는 모순이 발생되고, 세무대리를 위임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되어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도 세무검증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기장대리를 하고 세무신고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세무검증제도는 이러한 현행의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대리 환경하에서의 한계를 개선코자 도입하는 것이므로 장부기장대리 담당자와 세무검증 담당자를 분리하는 것이 좀 더 원칙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납세자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사업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기장대리인과 세무검증자에게 이중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여야 하므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만일 납세자의 측면에 중점을 두어 두 업무의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제도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도적 뒷받침으로는 검증업무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명시, 정상적인 검증보수 지급장

치 및 부실 세무검증에 대한 책임과 처벌제도의 마련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검증 비용의 부담은 과세당국이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세무검증제도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과세당국 고유 업무인 신고서의 검증업무 일부를 사전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고 특정 개인 사업자들에게만 일괄적·강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검증비용은 신뢰성 있는 과세자료를 이용하고 그로 인해 세무행정 비용 절감, 세수증대라는 편익을 얻는 과세관청이 세무검증 비용을 전액 부담(즉 비용공제 효과를 감안 하더라도 세액공제율 65%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세무검증 비용의 일부만을 세액공제(예; 50% 세액공제)해 주는 것은 납세자들로부터 동 제도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는 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다.

셋째, 세무검증에 대한 보수는 과세당국에서 정하여 공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업자와 세무검증자 간에 검증비용을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세무전문가 시장을 고려할 때 저가수입으로 인한 부실검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기장대리인이 세무검증을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장대리인이 세무검증 보수를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여 부실 세무검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한다. 세무검증 보수는 수입금액의 일정비율로 정하되 비율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감 누증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실검증의 경우 납세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세무검증자에게는 징계 및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세무검증의 업무 범위와 내용 및 업무수행 방법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화되어야 한다. 발제자가 제안한 체크리스트 방식은 이를 위하여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의 주요 내용

을 보면 수입금액의 충분성과 완전성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와 문답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하는 한편, 적격증빙 수취 대상거래,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거래 업무무관비용 및 가공 인건비 분야에 있어서는 해당 거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요구하거나 증빙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와 문답을 하고 확인서를 징구하는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제도 운용에 있어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확인서 양식은 과세당국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격증빙 수취 대상거래, 사업용 계좌 사용 대상거래 업무무관비용 및 가공 인건비 분야와 관련하여서는 거래증빙과 장부와의 일치 여부 확인의 범위를 벗어나 거래의 진위 및 진정성에 대한 검증까지를 요구하는 듯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수용 가능한 세무 검증 업무에 대한 보수수준과 세무검증자에게 부여된 조사 권한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세무검증은 장부와 제시된 증빙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 등 서류상의 검토에 한정되어야 하며 제시된 서류의 진위 및 진정성에 대한 검증까지 확대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세무검증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무검증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가피하게 업무무관비용 및 가공 인건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검증하여야 할 사항과 거래 유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증사항과 검증방법을 명시하고, 세무검증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항과 방법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책임지며 부실검증시 이에 대한 징계 및 처벌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실 검증을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1월 부가세신고기한(1월 25일)까지 세무검증자를 선임하여 보고토록 하고, 그 내용을 공인회계사회나 세무사회로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감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세무검증 업무는 납세자의 자발적 판단에 따라 위임받은 대리업무라기보다는 조세정책적 목

적에 따라 납세자에게 일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직무 내용, 세무검증자의 권한 및 징계 등에 대해서는 세법(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세법의 규정에 부응하여 특정 세무검증자 집단이 세무검증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전문가업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차적으로 관련 전문가업법의 보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무검증제도 법 위반 소지 있어

이상기/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발표와 관련하여 세원투명성 확보라는 제도 목적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제도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도입 여부의 타당성 측면에서 보면, 세무검증제도는 국가에 부여된 조세에 관한 조사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다. 이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본다면 법률이 아닌 사인에게 과세근거를 부여함으로써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법률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세무검증제도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사무를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되어 정부조직법 제6조의 위임에 따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많으며, 표현이 과하긴 하지만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여 자기 채무에 대해서 스스로 확정하여 신고하도록 이미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객관적 오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세무검증제도를 강제하는 것은 자기 부과제도의 취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대상사업자를 볼 때 특정 직업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대상사업자로 한정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이미 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화 등 많이 규제되고 있는데 세무검증제도까지 나아간다면 과잉금지원칙 위배 문제로 헌법상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혹여 도입을 한다면, 세무검증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임의적 제도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고납세 방식의 취지와도 부합될 것이다.

검증기관의 범위는 세무법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조사기능 측면에서 국가 기관업무 대행이라는 측면에서 '세무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 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책임에 대해서는 단순한 행정적 제재뿐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까지 검토될 수 있고 부실검증에 대한 민사책임 등 다각도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세무검증제도 찬성 - 소득탈루 줄일 수 있어 -

장경덕 /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항상 명분론과 현실론이 대립한다. 본 토론자의 소견으로 이번 세무검증제도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현실론이 명분론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현실론을 단순화해 보면 결국 성실납세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업계의 어려움으로 제도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조금만 비약해 보면 어느 정도의 탈루는

넘어갈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듯하다. 근로소득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문제는 해당 업종의 탈루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나인데, 특히 세부 업종별로 분명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해서 아쉽고, 반면 업계에서도 반대되는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본 토론자와 같은 언론인이나 일반인 입장에서는 탈루가 이루어진다는 추측, 즉 기존의 통념을 바꾸기는 힘들 듯하고, 오히려 강하게 반대할수록 탈루가 이루어진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상당한 탈루가 없다면 오히려 세무검증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업 자체의 이미지나 신뢰도 제고에도 효과가 있을 듯하다.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나 세액공제를 통해서 비용을 사실상 제로 또는 제로에 가까운 비율로 낮춰 주겠다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를 받지 못하는 타 업종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듯하다.

결론적으로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이해관계의 상충부분은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에 대한 검증을 위해 다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도 검토해 나가야 하고 자율규제를 통해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강화 및 신뢰기반이 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불성실 납세자들이 실질적으로 평판 리스크를 안도록 자율규제와 동료들 간의 압력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가능하다고 본다.

현실 외면한 무리한 정책추진 지양

장현재/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겠다.

먼저 세무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제시하면, 첫째 세무검증제도는 불공평하고 모순적인 발상이라는 점이다. 납세의무는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되며, 납세협력의무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세무검증제도를 많은 사업자 중에서 유독 전문직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조세공평주의에 역행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이다.

둘째, 의료업을 주된 탈세업종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의료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10. 4월 시행)이며, 불이행시 50%의 막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와 사업용 계좌 이용 강제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인들은 수입이 누락될 수 없도록 과표가 양성화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의료업은 고소득 전문직이며 소득탈루가 농후한 직종이라는 빈약하고 설득력 없는 근거로 세무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불공평한 처사이다.

셋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실태를 무시한 정책추진이라는 점이다.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모자라는 저수가로 상당한 의원이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4년간 평균 1,900개소의 의료기관이 폐업을 신고하고, 심지어는 개인파산 신청까지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의사는 기장에 대해 기장수수료를, 소득세 신고시 세무조정수수료를 지급하는데, 또다시 세무검증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경영환경이 열악해져 가는 의사들에게 납세이행 비용을 전가

시키는 것이다.

넷째, 세무검증제도는 행정편의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이라는 점이다. 누락된 과세원을 발굴하는 과표양성화 노력은 정부의 엄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무검증제도를 통하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정부정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 보건복지부에서 마련 중인 1차의료활성화 대책방안 추진은 고사한 채 기획재정부가 1차의료기관을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만일, 정부에서 세무검증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 모두 도입해야 하며, 법인에도 적용해야 한다. 의료업 등 일부 전문직종 등만을 잠재적인 탈세자로 취급하여 세무검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으며, 만일 세무검증을 꼭 해야 된다면 전체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대규모의 상업적 거래를 하고 있는 법인 형태의 사업자에 대해서도 사전검증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무리한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교육 등 지속적인 제도 및 홍보를 통해 과세표준의 양성화 정책은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병행해 부여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제세무대리가 유지되는 현실에서는 세무검증제도 필요

홍기용/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오늘 발표자께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많은 어려운

과제를 잘 발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강제세무대리, 다른 나라에 없는 위험적 제도

먼저 이번 세무검증제도의 존재 이유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의세무대리제도와 강제세무대리제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다. 강제세무대리의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임의세무대리를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현대의 조세행정은 대부분 이러한 신고납세제도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개인사업자에게 세무대리인에 의한 강제세무대리를 통해 세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는 세금신고 자체를 받아 주지 않으며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했으면서도 자기가 자기 세금을 스스로 계산해서 직접 낼 수 없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예를 들어 일정 소득규모 이상의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에는 자기 세금을 옆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낼 수밖에 없다. 본 토론자는 이 제도가 헌법의 자기의사결정권,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성실성추정원칙 및 소득세법상 신고납세제도를 위배했다는 면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보아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무검증제도, 납세자에게 검증비용 강제 부담

또한 납세자는 이번 발표문과 같이 강제세무대리 외에도 추가로 세무검증을 받도록 요구받고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강제세무대리에 따른 세무대리비용 이외에 세무검증에 따른 검증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는 강제세무대리의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처럼, 세무검증제도도 마찬가지다. 어느 나라에서도 강제세무대리제도와 세무검증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세무검증제도도 강제세무대리제도의 위험성 논리와 동일하게 위

험적이라고 생각된다.

강제세무대리 존치 현실에서 세무검증제도 반대는 비논리적

임의적 세무대리제도에서 세무대리인은 납세자로부터 비용을 받아 행하는 납세자의 대리인이지만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정부에 세무대리의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질 것이 없다 할 것이지만, 강제세무대리제도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강제세무대리제도하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납세자에게 준조세적 납세협력비용까지 전가시키며 세무대리인을 통해 강제로 세금신고를 시키고 있는 것인데, 당초 정부는 세무대리인이 세무검증 등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 제도를 도입하였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세무대리인에게 이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법규를 두지 않아 왔다. 이 점에서 임의적 세무대리제도와 다르게 강제세무대리제도에서는 세무대리인도 정부에 세무검증 등 그에 합당한 책무를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강제세무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세무대리인에게 “검증확인서”의 제출 의무 등 일정한 책임을 부여한 이번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타당한 면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면에서 저는 이에 찬성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강제세무대리제도는 임의세무대리와 아무런 차이가 없이, 납세자의 비용으로 세무대리인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만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의세무대리제도하에서는 세무검증제도의 존치 이유가 없다.

강제세무대리비용과 세무검증비용 정부 부담해야

다만, 이번에 세무검증제도를 채택하더라도 몇 가지 보완할 사항은 있다.

첫째, 세무검증의 대상을 일부 고소득자에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제세무대리의 적용을 받는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고소득자 외에 다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세무대리제도는 폐지되어야 논리적으로 맞다.

둘째, 기존 강제세무대리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계도 검증비용 외에 세무대리비용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제도는 강제성이 있다는 이유 외에도 현장에서 검증비용과 일반 세무대리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검증비용과 세무대리비용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래야 강제세무대리제도 및 강제세무검증의 대상이 되는 모든 납세자에게 납세협력비용이 전가되는 것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납세자에게 세무검증료를 강제 부담시키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해 주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강제세무대리의 적용을 받는 다른 납세자도 세무조사를 면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어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세무검증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는 강제세무대리의 불이행시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면에서 이중적 제재가 될 수 있다. 강제세무대리와 세무검증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 또한 모두 세금징고의 전제사항이므로 이중제재라고 할 것이다.

강제세무대리제도 폐지시 세무검증제도 존치이유 상실
결론적으로 본 토론자는 강제세무대리제도와 세무검증제도는 모두 납세자에게 과도한 준조세적 납세협력비용을 부담시키고, 정부의 부과징수책임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전가시키며, 또한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장차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유의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제세무대리제도가 이러한 여러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무시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강제세무대리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일정

책무를 부여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세원투명성, 세무검증을 통한 해결이 바람직

김낙회/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토론자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크게 납세자 입장, 납세대리세무 입장, 제3자 언론의 입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 특정계층, 전문직만 대상으로 하는가'가 가장 큰 의문사항인 것 같다. 그러나 세원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백여 번 정도 있었고, 사업자에 대한 투명성과 과표양성화 문제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중 거래외형을 노출시키는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의사 직종의 경우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로 거의 모두 드러나고 있으며 양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문제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라 비용의 문제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 세무검증을 통한 해결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세원투명성이 낮은 나라는 없다.

물론, 세무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인력 보강을 통해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무조사 확충은 어려움이 있다.

세무검증제도는 비용양성화에 포인트를 두고자 했다. 특정업종 대상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시행 초기단계에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예상치 못한 문제점들을 거르고자 함이다. 또한 전문직은 사회적 책임이 있으므로 정부가 대상 선정에서 일반 납세자들과 차별적으로 고려하였다.

세무사 업계 쪽 어려움도 충분히 공감한다. 성실 세무사들에게는 제도 도입으로 인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을의 위치에서 세무검증이 가능할지의 문제는 고민하고 대안 방안도 마련하겠다. 세무사 입장에서 성실하게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후에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조치하겠다. 또한 일부 불성실 세무사에게로 고객이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현재 검토중이다.

제3자 입장인 논설위원의 의견은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 과표양성화를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왔고,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세금부담이 가능하도록 의료비나 교육비 공제를 통해서 제대로 세금납부를 하게 한다면 세금부담은 적어질 수 있을 것이다. **KIPF**

공공정책포럼



■ 제7회 공공정책포럼

공공정책포럼 소개

공공정책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정책담당자로 구성된 본 포럼은 공공기관정책의 현안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을 통해 정책수요를 청취하고 연구와 관련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한다.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제7회 공공정책포럼 개요

- 주 제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 일 시 2010년 7월 21일 07:30~09:30
- 장 소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
- 진행순서
 - 07:30~08:00 조찬
 - 08:00~08:05 인사 말씀
 송대희 KDI 초빙연구위원
 - 08:05~08:45 주제 발표
 안종범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08:45~09:25 자유 토론
 - 09:25 폐회

* 본 원고는 2010년 7월 21일 서울 팔레스호텔 스카이볼룸에서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를 주제로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개최한 제7회 공공정책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 요약입니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의 내용이 소속기관이나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 인사 말씀

송대회/공공정책포럼 위원장

현재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우리 포럼의 역할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표자께서 지적하는 보수체계 및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전반적 문제들에 대한 함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요약

공공기관 개혁과 보수체계 선진화

안종범/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1.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

공공기관의 개혁은 이념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규모 축소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경제 측면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민영화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개혁이 시도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공공기관 선진화로 후퇴되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공공기관 개혁은 민영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선 공공요금을 적정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바람직한 개혁 방안이다. 현재 원가 이하의 요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기업 부채가 증가한 상황이다. 선진국의 경우 공공요금을 낮게 유지하기보다, 사후적 과정을 통해 보조가 필요한

특정 집단을 지원하고 있다. 전력, 가스, 수자원 등 고갈할 수 있는 에너지의 경우는 미래 자원확보 차원에서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장기적, 점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 부담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선진화도 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을 비교하였을 때 임금 외에도 안정성, 복리후생 등 여건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것이 지나치면 민간의 인재 확보에 있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구축효과가 일어나게 되므로 해결이 필요하다.

2. 공공기관의 사회적 비용과 개혁과제

공공기관의 사회적 비용은 정부 지원에서 비롯된다. 알리오시스템 분류에 따르면, 정부의 명시적 지원은 원가를 반영할 수 없는 각종 출연·출자·보조·위탁사업비 등을 가리킨다. 암묵적인 지원으로는 보증수수료 등 정부의 암묵적 채무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비예산적 정부지원, 재정자금의 사회적 비용 등이 있다. 재정자금의 사회적 비용은 조세로 인한 소비·노동 공급 감소 등 초과부담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시장변화에 경직적으로 대응하여 민간이 맡으면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나 사행산업까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하기 위한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공공성의 훼손과 연결하여 비판하여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존치 이유를 공공성 확보로만 설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공성의 개념을 폭 넓게 해석하여 법이나 제도로 이를 보장하되, 대신 민간기업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공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바른 방향이다. 영국의 시장테스트(market test)는 이러한 맥락의 제도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비용 절감과

생산성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과중한 평가로 인한 기관의 부담은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오히려 저해한다. 또한 지나치게 빈번하고 중복적인 평가, 평가결과 환류체계 미흡으로 인한 경영개선 실효성의 저조도 문제이다. 현재의 평가대상 기관 간 비교 역시 부적절하며, 대신 해외나 민간의 유사 기업 또는 해당산업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유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개혁은 민간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비효율을 제거할 필요가 높아지면서 대두되었다. 현 시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기업 부채관리 역시 개혁의 논의대상이다. 특히 정부사업 대행으로부터 발생한 부채와 그렇지 않은 부채를 구분하여, 부채 관리 및 국민 부담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이 필요하다. 부채 문제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구조개혁을 위한 존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민영화 등 다양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일도 진행되어야 한다.

3. 공공기관 보수체계 문제점과 개선과제

공공기관의 보수체계가 시장임금 수준과 다른 이론적 이유를 3가지 들 수 있다. 경영진과 관련된 대리인 비용(agency cost), 정규직 노동조합에 의한 공기업의 포획(capture), 감시·감독 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터널링(tunneling) 현상의 만연이 그것이다. 노조로부터의 오랜 관행이 큰 요인이었음을 감안할 때 문제 해결이 수월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면, 민간보다 공공부문의 보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다. 공공부문의 직업 안정성도 민간과의 큰 차이이다. 공공기관의 보수체계에 대한 비판은 생산성보다 높은 인건비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 내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사업 부문이 많은 것처럼 보수관리 측면에서도 정부 정책지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임금피크제·선택적 복지제도·잡세어링·청년인턴제 등 현 정책이 과연 공공기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공기업 내 노조의 문제도 비판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비판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칙적으로는 임금수준이 민영화과정에서 시장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나, 현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임금수준을 공무원 수준에 맞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구체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설정함과 동시에, 개혁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유효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향후 성과급의 차등폭 확대, 직무 및 성과주의 연봉제 강화, 기본급 모델의 체계화, 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 차별화 측면에서 접근해 가는 것이 개선 과제가 될 것이다.

■ 자유 토론

박진 / KDI 국제정책대학원

사회적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연장 문제가 이슈이고, 특히 공공기관이 정년연장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문제와도 연관이 있을 것인데, 이에 관한 의견을 문의한다.

안중범 / 발표자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의 강화·정년연장과 연계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개선안이라 생각한다.

박용성/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발표에서 언급된 영국의 시장테스트(market test)와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 첫째, 시장테스트를 통해 정부기관의 법인화와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시도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의 기준이 있을 것이다. 평가시에 이러한 기준을 경제학적으로 정량화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 둘째, 최근 영국에서는 시장테스트 외에 시장성·경합성·도전성을 기준으로 한 가치테스트(value test)를 실시한다. 가치테스트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있다면 현재의 평가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할지 궁금하다.

안종범/발표자

법인화 및 민영화를 실시하는 기준과 이를 계량화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발표 중 존치평가를 주장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평가제도 개선도 모호해야 할 것이다.

배준호/한신대학교 일본지역학과

발표 내용에 대한 찬반 논의도 중요하겠지만,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계 등 전문가의 연구와 논의 이전에 정책입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해결방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평가제도 개선 등이 시급한 문제라 하겠다.

임해중/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많은 변화를 추구해 왔다고 여겨지나, 오늘과 같은 의견들을 통해 부족함을 보완하고 제도개선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수체계 개선은 기관 내부의 체계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성과연봉제 실질 차등폭 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석유공단 등의 경우 제도 정착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을 모시고 좋은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년연장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다.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정년연장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으나, 다른 한편 청년실업 문제 등도 심각하다. 특히 대졸인력의 쓸림은 공공기관 보수체계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정년연장 문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기관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관 내 노사 간 협의 등 해결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하겠다.

강봉구/한국마사회 부회장

성과급 차등폭 확대 사안은 지침을 통해 이미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다. 우리 기관의 경우 BSC를 도입하여 부서별 평가까지 시행 중인데, 개인평가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많다. 성과창출 유도를 위해서는 차등폭을 키워야 할 것이나, 개인성과 평가에 있어 객관성, 정확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른 기관의 좋은 사례를 듣고 싶다.

안중범/발표자

개인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여러 모형을 통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본다. 우리 대학의 경우도 평가 항목을 지표화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표를 통해 장기적으로 객관적이고 비교 가능한 결과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겠다.

조성일/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평가제도와 관련하여 첫째, 공공기관의 영업직 외 관리직 및 지원직에 대한 개인 성과평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 생각한다. 현재의 성과평가제도는 본인, 상위 및 하위 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도의 시행을 거듭하여 객관성이 확보된다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의 유형 분류와 관련, 공기업에 대해서는 현재의 평가제도가 아니라 글로벌 마켓 리더 기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공공적 성격을 지닌 기업 중 벤치마킹 대상을 찾기 어려운 기관의 경우는 평가를 통해 경영성과를 끌어올릴 수 있겠다.

송대희/KDI 초빙연구위원(좌장)

80년대 초부터 평가 참여 및 연구를 수행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평가 문제에 대한 개선은 국가 선진화 과정의 한 단계일 것이다. 평가는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한 사람을 격려하여 성과를 극대화하거나,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여 조직을 발전시키는 상반된 목적을 모두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의 문화에서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도 역시 평가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는 것은 평가 당사자와 해당 기업의 해결 노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건택/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민간과 공공기관 모두에서 기획업무를 수행해 본 결과, 공공기관이 이제까지 개혁과 민영화 등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직 개선할 부분도 많지만, 그동안 정부와 기관이 함께 노력하였던 것에 비해 지나친 비판도 제기되는 것 같다. 공기업의 경우 여러 감사 및 평가 등으로 인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과 업무능력 등에 있어 민간에 비해 결코 부족하지 않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지방대 출신 등 민간보다 다양한 인재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관 역시 자율경영대상기관으로서 경영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질책과 동시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과 격려가 필요할 것이다.

박정수/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보수체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현안을 되짚은 발표와 토론이었다. 향후에도 정부·기관·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가 합심하여 공공기관의 역할을 제고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축적하는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가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DB 구축 등에 힘쓰고 있다. 8월 포럼에서는 서울대학교 김화진 교수가 공

공기관 지배구조에 관하여 발제할 예정이며, 9월에는 경영평가단 이창우 단장과 2009년 경영평가를 검토할 것이다. **KIP**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10-14

요약

- 영국 재무장관은 2010년 6월 22일 긴급예산 (Emergency Budget)을 발표함
 - 긴급예산에는 영국의 구조적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연간 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 및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세계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은행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정책과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제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호주 의회는 2010/11 예산안을 승인하였으며, 예산안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자원초과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2010/11에 적자예산(△396억호주달러)을 편성하였으며 2015/16에는 흑자예산으로 전환하고자 함
 - 예산안의 주요 과세조치는 근로소득 면세점의 확대, 이자소득세 인하, 법인세율의 인하, 자원초과이윤세의 부과임

1. 영국 긴급예산 의회 제출

- 재무장관 오스본은 2010년 6월 22일 긴급예산 (Emergency Budget)을 발표함
 - 긴급예산에는 국가의 구조적 결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까지 연간 40억파운드 규모의 재정지출 축소 및 증세정책이 계획되어 있음
 - 세계분야에서는 부가가치세 및 자본이득세 세율 인상, 은행세 도입 등을 통한 증세정책과 아울러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인세제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가. 법인세 분야

- 법인세제를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함
 - 현행 28%의 법인세율을 2011년 4월부터 4년 동안 매해 1%p씩 인하하여 2014년 4월에는 24%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며, 소규모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 역시 2011년 4월부터 현 21%에서 20%로 1%p만큼 인하함
 -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주요 서부 경제권 중 가장 낮은 세율 국가이자 G-20 국가 중 낮은 세율에 속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영국의 법인세율

과세소득	세율(%)	
	변경 전	변경 후(2011. 4~)
~ 300,000파운드	21	20
300,001 ~ 1,500,000파운드	한계세율 ¹⁾	한계세율 ¹⁾
1,500,001파운드 ~	28	27

주: 1) 한계세율(marginal rate) 구간에서는 27%(현행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계산 후 한계공제(marginal relief)를 공제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함. 이 때 한계공제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함.

$$\text{한계공제(marginal relief)} = \frac{7}{400} \times (M - P) \times \frac{1}{P}$$

* M: £1,500,000

* P: 법인세 과세소득+간주투자소득

* I: 법인세 과세소득

- 영국의 일부 지역에 창업한 회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를 경감함
- 창업 후 3년 동안 고용주는 고용 후 첫 12개월 동안 발생한 고용주 부담 국민보험료 중 첫 5,000파운드를 면제받음

-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의 경우 경제적 내용연수 등을 반영하여 공제율 및 공제금액을 인하 조정함
- 2012년 4월 1일부터 자본공제율을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현행 20%에서 18%로, 장기 내용연수자산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8%로 인하 조정함¹⁾
- 2012년 4월부터 연간투자공제(Annual Investment Allowance) 한도금액을 10만파운드에서 2만 5,000파운드로 인하함
- 100% 초년도 공제(first-year allowance) 대상 자산에 신규 무탄소차량(zero-emissions goods vehicle)을 추가함

- 2011년 1월 1일부터 은행 등을 대상으로 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s)에 기초하여 과세하는 은행세(bank levy)를 도입함
- 은행세의 도입 목적은 은행 등이 저위험성 자금을 조달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것임
- 이는 미래 실패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미래 경제위기에 대비한 자금이 아닌 경제위기를 반영한 부담금에 해당함
- 은행세의 적용대상은 은행, 건축조합(building society) 및 국외은행의 영국지점으로 단, 총부채가 20억파운드 미만인 은행 등의 경우 은행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세율로는 당초 0.04%를 계획했으나 0.07%로 인상하여 적용할 계획임
- 정부는 올 여름 금융부문과 상의하여 하반기에는 은행세에 대한 최종 상세안을 발행할 예정임

나. 개인소득세 분야

- 증세정책으로 2010년 6월 23일부터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세(CGT) 세율을 인상하되, 기업가공제를 적용받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특례 혜택을 제공할 방침임
- 현행 자본이득세율로는 18%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 긴급 예산안에서는 개인소득세에서 고율세율(40%) 및 추가세율(50%)²⁾ 구간을 적용받는 고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자본이득세율을 10%p 인상(18% → 28%)할 계획임
- 단, 기본세율(basic rate) 구간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1) 개인의 경우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함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

- 한편, 기업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기업가공제(entrepreneurs' relief) 적용대상인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이와 아울러 기업가공제 금액 역시 300만파운드만큼 인상할 계획임
- 요건을 갖춘 생애 첫 자본이득 중 200만파운드를 공제하던 것을 500만파운드를 공제하는 것으로 인상 조정함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와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금액 인상, 자녀공제 금액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을 경감할 방침임
- 65세 이하인 개인을 대상으로 인적공제(personal allowance) 금액을 2011년 4월 6일부터 현행 6,475 파운드에서 7,475파운드로 1,000파운드만큼 인상 조정함
- 한편, 고율세율(higher rate) 구간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인적공제 금액 인상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기본세율(basic rate) 구간 한도금액은 인하할 계획임

- 구체적인 금액은 소비자물가지수(RPI)가 확정되는 9월에 정해질 예정임
- 개인저축계좌(ISA) 한도금액을 2011년 4월부터 소비자물가지수(RPI)에 연동하여 인상 조정함
-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의 경우 2011년 4월부터 자녀요소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RPI) 변동에 추가하여 150파운드 만큼 인상 조정함
- 또한 2012년 4월부터는 자녀요소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RPI) 변동에 추가하여 60파운드만큼 인상 조정할 계획임
- 보험료율(Insurance Premium Tax Rate) 역시 2011년 1월 4일부터 인상하되,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높게 적용함
- 표준요율(standard rate)의 경우 현 5%에서 6%로 1%p 인상하되, 고율요율(higher rate)은 인상폭을 높여 현 17.5%에서 20%로 2.5%p만큼 인상함

다. 부가가치세 분야

- 2011년 1월 4일부터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행 17.5%에서 20%로 인상 조정함
-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으로 연간 13억파운드 규모의 추가 세수확보가 기대되고 있음
- 한편, 경감세율(reduced rate)의 경우 현행 5%의 세율을 그대로 유지함

2) 현재 영국에서 개인소득세는 기본세율, 고율세율, 최고세율 등 세 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누진 과세되고 있음

영국의 개인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배당소득	기타소득
기본세율(basic rate)	~ 37,400	10 20 ¹⁾
고율세율(higher rate)	37,400 ~ 150,000	32.5 40
추가세율(additional rate)	150,000 ~	42.5 50

주: 1) 저축소득 중 첫 2,440파운드에 대해서는 10%의 세율(starting rate)을 적용함. 단, 납세자의 비저축소득(non-savings income)이 동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저축소득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2. 호주의 2010/11예산안

가. 개요

- 호주 정부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자원 초과이익(resource surplus profits)에 대해 새롭게 과세(levy)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0/11예산안을 2010년 5월 11일에 발표하였음
 - 2010년 5월 11일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2010년 6월 24일에 양원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6월 28일에 의회를 통과함³⁾
- 호주 정부는 396억호주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⁴⁾
 - 총세입은 3,218억호주달러이고 총세출은 3,546억호주달러이며 그 결과 순운영수지(net operating balance)는 △328억호주달러임
 - 순자본투자(net capital investment)는 △68억호주달러임
 - 호주 정부는 순운영수지와 순자본투자를 합하여 396억호주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호주 정부는 예산안에서 GDP의 1%를 초과하는 조세 수입이 달성될 때까지는 조세지출의 증가를 2%로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2015-16에는 흑자재정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예산안의 주요 목적(Initiatives)은 과세조치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 인프라의 구축 및 발전, 재

생에너지의 효율성 도모, 전체적인 경제성장, 강력하고 공정한 분배, 국민건강을 위한 의료시설의 네트워크 강화임

- 과세조치를 통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예산안은 근로소득면세점 인상, 이자소득세 감소, 표준공제 인상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예산안은 성장유지를 위한 기술투자(6.61억호주달러), 새로운 인프라펀드(560만호주달러), 철도네트워크 재생(10억호주달러)을 포함하고 있음
- 재생에너지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안은 재생에너지 미래펀드(6.52억호주달러)를 포함하고 있음
- 전체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예산안은 자원초과이익세(Resource Super Profits Tax, RSPT) 부과, 법인세율의 인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감가상각자산 증 즉시 비용화 대상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강력하고 공정한 분배를 위해 예산안은 연금지출액(Super Guarantee)의 인상(9% → 12%), 소득이 37,000호주달러 이하인 소득자에 대한 분배금 증가(500호주달러), 소득이 50,000호주달러 이하의 고연령근로자에 대한 분배금 수취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의료시설의 네트워크를 위해 예산안은 의료시스템의 현대화에 22억호주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3) <http://parlinfo.aph.gov.au/parlInfo/search/display/display.w3p;query=Id%3A%22legislation%2Fbillhome%2Fr4359%22>

4) <http://www.budget.gov.au/2010-11/content/overview/html/index.htm>



나. 소득세 관련 예산안

- 소득세와 관련된 주요 세제조치는 근로소득면세점 인상, 납세자 표준공제 인상, 이자소득세 감소 방안이 있음
- 2010년 7월 1일부터 호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제 범위를 확대함
 - 16,000호주달러의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면제함
 - 이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면제되는 세액을 1,500호주달러로 인상함⁵⁾
- 납세자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을 500호주달러에서 1,000호주달러로 인상함
 - 납세자가 근로와 관련된 비용 및 납세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세무상 공제받기 위해서는 재무기록을 남기고 지출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지만, 납세자표준공제는 납세자가 관련 비용을 입증할 필요 없이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임
 - 납세자표준공제금액은 2012/13(2012년 7월 개시 사업연도)은 500호주달러이고, 2013/14(2013년 7월 개시 사업연도)는 1,000호주달러로 인상함
- 소액저축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자소득 1,000호주달러까지는 소득세를 50% 감면함
 - 소득세를 감면하면 납세자가 이자가 발생하는 상품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이는 호주의 금융시스템을 더욱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대상이 되는 이자는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예금, 채권(bonds), 사채(debentures), 연금(annuity)의 이자임
- 이 조치는 570만명의 저축자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기타조치로서는 은행의 원천징수세 인하와 관리투자신탁의 과세구조를 특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조치로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의 단계적 인하를 고려하고 있음
- 관리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s)에 대한 과세구조를 특정화하여 확실성을 증가시키고 복잡성을 감소하며 납세비용을 낮추고자 계획하고 있음

다. 법인세 관련 예산안

- 법인세와 관련된 주요 세제조치는 법인세율의 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감가상각자산 중 즉시 비용화 대상 확대가 있음
- 법인세율을 30%에서 29%로 인하하여 호주 세율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2010년 5월 11일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에서는 중소기업의 즉각적인 2%(30% → 28%) 세율 인하, 대기업은 단계적으로 2%의 세율 인하를 계획하였으나, 자원초과이윤세의 영향으로 인하폭이 제한됨
 - 2013/14(2013년 7월 개시 사업연도)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구별 없이 전체 기업에 대하여 29%로 법인

5) 소득세율은 0~6,000호주달러까지는 0%, 6,001~37,000호주달러까지는 15%(2010/11기준)이므로, 소득이 16,000호주달러인 경우에 6,000호주달러는 세금이 "0"이고, 10,000호주달러는 세율 15%를 적용하여 세액은 1,500호주달러가 됨. 이 때, 1,500호주달러까지 세액이 감면되므로 16,000호주달러가 근로소득의 면세점이 됨

세율을 인하함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비용화가 가능한 감가상각 자산의 기준금액을 1,000호주달러에서 5,000호주달러로 인상함
 - 이 조치로 기업의 현금흐름을 증가시키고 감가상각의 계산을 간소화하여 세무신고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이 조치는 2012/13부터 적용됨

라. 자원초과이윤세 관련

- 가장 논란이 되었던 세제조치는 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자원초과이윤세(Resource Super Profits Tax)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임
 - 호주 정부는 자원이윤세에 대한 과세가 자원산업 초기단계에 경감시켰던 세금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임
- 호주 정부는 논란을 거치면서 최초 의회에 제출했던 (안)보다는 광산업계 등의 입장을 반영하여 2010년 7월 2일에 자원초과이윤세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였음
 - 최초안보다 세율을 낮추고(40% → 30%)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과세액을 감소함
 - 2012년 7월 1일부터 호주의 국내외 자원생산업체는 연간 수익의 30%를 자원개발초과이윤세로 지급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인프라 건설 등에 사용
 - 5,000만호주달러 이하의 자원운용이익은 자원초과이윤세를 면제함
 - 철광석(iron ore)과 석탄(coal) 외에 자원운용에 대해서는 자원초과이윤세를 면제함

동향 10-15

요약

- 네덜란드는 투자지분면제제도를 개정하여, 포트폴리오 투자로 판단된 경우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지분면제제도를 허용함
- 덴마크 의회는 2010년 6월 16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법안(Bill L221)을 제정함
- 스위스 연방의회는 2010년 6월 24일 단일세율 도입(6.2%) 및 면세항목 축소(29개 → 8개)를 통해 부가가치세제를 간소화할 계획임을 발표함
- 대만은 2010년 7월 1일부터 대만 내에서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결정함

1. 네덜란드 지분면제제도 적용요건 완화

- 네덜란드는 2010년 조세계획(tax plan for 2010)에서 발표된 지분면제제도(participation exemption)의 적용에 관한 시행령(degree)을 2010년 7월 12일 발표함
 - 발표된 시행령은 2010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2010년 조세계획에 따르면, 지분면제제도에 대한 적용요건의 완화에 관한 내용이 있음
- 지분면제제도 : 특정배당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완전히 과세에서 면제되는 제도



- 네덜란드의 법인세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인은 국내원천소득과 해외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할 의무를 부담함
- 지분면제제도가 적용될 경우, 특정한 배당·외환차익·주식에 관한 자본이득 등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됨
- 지분면제제도의 적용요건은 ① 지분율 요건과 ② 보유목적 요건임
 - 지분율 요건 : 투자회사는 자회사 자본 중 최소 5%를 소유해야 함
 - 보유목적 요건 : 지분은 사업목적으로 보유되어야 하며, 단순히 포트폴리오 투자로 보유하여서는 아니됨
 - 다만 보유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회사 자산의 50% 이하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분면제제도가 적용될 수 있음
 - 5% 이하의 지분투자는 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류됨
- 개정된 투자지분면제제도에 따르면,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판단된 경우라도, ① 과세가능요건(subject-to-tax test)과 ② 자산요건(asset test)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지분면제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이전 제도의 경우, 투자지분 자체가 포트폴리오 투자로 분류되지만 않으면 적어도 5%까지의 자회사 지분도 지분면제제도가 적용됨
 - 보유한 지분이 포트폴리오 투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목적에 따라 결정됨
- 과세가능 요건 : 변경제도에 따르면, 투자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지분면제제도는 거주

상태에 있는 자회사가 충분한 세율로 이윤세(profit tax)를 부담하는 경우 적용됨

- 현재, 이윤세는 10%의 세율로 과세됨
- 만약 이윤세가 충분한 세율로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 ① 과세표준이 매우 작을 경우, 또는
 - ② 외국회사가 과세상 특혜를 입을 경우에는 지분투자면제제도는 적용되지 않음

- 자산요건 : 자회사의 자산은 저율과세 투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구성되어서는 아니 됨

2. 덴마크 소득세법 개정

- 의회는 2010년 6월 16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법안(Bill L221)을 제정함

가. Bill L221의 주요 내용

- 일반 급여인상을 반영하여 세법에서 연단위로 자동 조정해 온 각종 인공공제 및 소득세 과세구간 등을 2011년과 2013년 사이 동결함
 - 15%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구간의 경우 최저금액의 인상(DKK389,900 → DKK409,100)을 연기하여 2011년이 아닌 2014년부터 적용함
- 2011년 자녀수당(child allowance)에 한도금액을 도입하고 자녀수당 금액을 2013년까지 5%만큼 점진적으로 인하함
 - 현재 덴마크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비과세 자녀수당을 수취하고 있음
 - 총자녀수당 금액은 자녀의 수 및 연령에 따라 결정됨

덴마크의 자녀수당

연령	연간 자녀수당(자녀당 적용) ¹⁾
~ 2세	DKK16,428
3 ~ 6세	DKK13,004
7 ~ 17세	DKK10,232

주: 1) 2009년 기준 금액

- 2011년부터 자녀수당에 한도금액을 도입하여 연간 자녀수당 수령액을 자녀 수에 관계없이 DKK35,000으로 제한함
- 또한 자녀수당 금액은 2013년까지 5%만큼 점진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3. 스위스 부가가치세 간소화 추진

- 연방의회(Federal Council)는 2010년 6월 24일 단일세율 도입 및 면세대상 축소를 통해 부가가치세제를 간소화할 계획임을 발표함
- 이를 통해 사업가의 부가가치세 행정업무 역시 대폭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가. 부가가치세 단일세율 도입

- 2018년부터 부가가치세에서 경감세율을 폐지하고 6.2%의 단일세율 체계를 도입함
 - 현재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율은 7.6%의 표준세율과 3.6% 및 2.4%의 경감세율로 구성되어 있음
 - 3.6%의 경감세율은 호텔 객실, 별장, 캠핑장 등의 대여에 적용됨
 - 2.4%의 경감세율은 식음료, 가금류, 어류, 종묘, 식물, 곡식, 사료, 의약품,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및 텔레비전 회사 서비스 등에 적용됨
 - 스위스에서는 사회보장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

가치세율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한 바 있음

- 표준세율은 7.6%에서 8%로 0.4%p 인상함
- 경감세율의 경우 3.6% 및 2.4%에서 각각 3.8% 및 2.5%로 인상함
- 연방의회의 부가가치세 간소화 계획에 의하면, 2018년부터 경감세율을 폐지하고 6.2%의 단일세율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그 결과 표준세율 적용 항목의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고 경감세율 적용 항목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나. 면세대상 축소

- 부가가치세에서 현재 면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29개 항목 중 21개를 폐지할 것을 제안함

4. 대만 외국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결정

- 대만은 외국인에 대해 대만 내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기로 함
-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Business Tax Act, 營業稅法) 제7-1조의 내용임
- 대만에서 재화와 용역을 구입한 사람은 5%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제7-1조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인이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5%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 4월 20일에 의회를 통과하고, 2010년 5월 5일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개정되었으며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 외국인은 외국기업, 대리인, 그룹, 단체(organizations) 중 고정사업장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임



■ 이 규정은 다음에서 서술하는 금액 등의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화와 용역을 구입하는 데 지출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내용임

• 첫째, 대만에서 상업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대만 내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한정함

- 구입된 재화와 용역은 적극적인 상업 활동과 대만 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

• 둘째, 1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세가 5,000뉴타이완달러(약 156달러)를 초과하고 재화와 용역의 구입액이 100,000뉴타이완달러(약 3,100달러) 이상이어야 함

• 셋째, 다음에서 서술하는 환급에 대한 적용제외로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승용차의 구입, 상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재화나 용역의 구입, 종업원 등을 위한 유흥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의 구입에 해당하면 환급되지 않음

• 넷째,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수취하는 국가에서도 대만 거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세무상 처리를 해야 함

■ 외국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과세연도 후 6개월 이내에 상업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의 세무서에 신청을 해야 함

•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계산서를 가지고 신청해야 함

•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몰수됨

■ 대만 과세당국은 이번 조치가 대만의 수출을 증가시키고 해외활동을 촉진하며, 외국인의 대만 내 시설에 대한 이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함

• 대만의 부가가치세율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상호

주의를 통하여 대만 거주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면 대만 거주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될 것임

• 이러한 혜택은 대만의 수출증대 및 해외활동 촉진에 도움을 줄 것임

• 대만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외국인이 대만 내의 호텔, 식당, 교통시설 등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 것임

동향 10-16

요약

- 영국 재무장관은 2010년 7월 20일 조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을 설립함
- 스페인의 27개 주요 대기업으로 구성된 조세포럼은 2010년 7월 20일 조세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모범조세관행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에 승인함
- 중국은 2010년 6월부터 신장위구르 자치구에만 부과하던 자원세의 세율을 인상하였고, 최근 다른 지역으로 자원세를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톤세제 적용범위를 ① 케이블·파이프 설치 선박, ② 연구용 선박, ③ 크레인 선박의 운항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Law 23/2009를 2010년 7월 16일에 승인함

1. 영국 조세간소화국 설립

- 재무장관은 2010년 7월 20일 조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한 연구기관으로 조세간소화국(Office of Tax Simplification)을 설립함

가. 설립목적

- 조세간소화국은 과도하게 복잡한 영국의 세제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 영국의 현행 세법규정은 11,00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 양이 방대하고 복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재무장관 Osborne은 조세간소화국과 런던에서의 오찬을 통해 보다 간소하고 경쟁력 있는 세법을 만들 계획임을 밝힘
- 재무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영국의 세법 조항이 양적인 측면에서 두 배로 증가한 것을 비판하며, 동기간 동안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국제경쟁력 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순위에서는 7위에서 13위로 밀려났음을 지적함
-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법의 간소화는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반 납세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법을 간소화할 계획임을 밝힘
- 재무부 비서관 Gauke 역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세법조항을 비롯하여 공공정책에 비추어 타당한 이유가 없는 규정에 초점을 두어 조세간소화국이 세법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하고 있음
- 조세간소화국은 재무부에 배치되며 민간고용인, 민간부문의 경력자로 구성될 것임

나. 주요 업무

- 조세간소화국의 의무는 기업 및 개인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법조항 중 간소화가 가능한 분야를 발견하여 이를 재무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임
- 조세간소화국은 정책을 수립할 권한은 없으며 정책수립을 위해 압력을 행사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업무범위는 국세청(HM Revenue & Customs)이



집행하는 세금으로 함

다. 향후 계획 및 평가

- 조세간소화국은 2011년 약 400개에 달하는 조세감면 (tax reliefs) 조치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간소화(small business tax simplification)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임
 - 특히, 인적용역회사를 다루는 규정(the “IR35” legislation)은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간소화 연구의 일환으로 검토될 것임
 - 조세간소화국의 초기 발견사항은 2011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임
- 재계(business community)에서는 조세간소화국의 설립을 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노동조합(Unions)의 경우 조세간소화국이 대기업이 조세 회피를 위해 사용하는 세법상의 허점(loopholes)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음
 - 특히, 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사무총장은 조세간소화국이 일반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줄이고, 부가가치세율은 인상하는 반면 부자를 위한 감세 규정은 완화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2. 스페인 모범조세관행규칙 제정

- 27개 주요 대기업으로 구성된 조세포럼(Tax Forum of Big Companies)은 2010년 7월 20일 조세행정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모범조세관행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에 승인함

- 이는 투명성 및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상호 신뢰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음

가. 대기업 조세포럼(Tax Forum of Big Companies)의 설립 및 활동

- 대기업 조세포럼은 지난 2009년 7월 10일 국세청(National Tax Agency)과 27개 대기업의 참여로 설립되었음
 - 조세포럼의 주요 설립목적은 조세위험을 관리하고 조세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역을 확대한다는 데 있음
 - 조세포럼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의 관계에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확보할 계획임
- 조세포럼의 회원인 기업은 법인세 규모, 조세정보 및 인력규모 등에 기초하여 선발되었으며, 향후 추가 회원기업이 선발되는 것도 가능함
 - 조세포럼에의 참여가 조세특례 혜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조세포럼 내에서 채택된 협약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개별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을 예정임
- 조세포럼의 주요 활동내용은 납세의무의 실행 및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일반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해석기준 논의,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 확보 등으로 구성될 것임
 - 구체적으로 조세포럼은 ① 모범조세관행규칙의 작성, ② 간접적 조세부담의 효율화 분석, ③ 이전가격 처리 등 세 가지 주요 분야에서 실무진을 구성할 계획임

가. 모범조세관행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의 제정 및 주요 내용

- 대기업 조세포럼(Tax Forum of Big Companies)은 2010년 7월 20일 ‘모범조세관행규칙(the Code of Good Tax Practice)’에 승인함
- 동 규칙에 가담한 기업은 조세관행의 개선을 위해 기업 내부적인 체제개선의 노력과 아울러 국가재정 및 과세행정에 기여하여야 함
 - 회원기업의 구체적인 의무는 ①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개선, ② 투명성(transparency) 제고, ③ 국가재정 문제에 대한 협력, ④ 탈세가 적발되는 경우 과세관청(Tax Administration)과의 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과세관청은 세법적용 및 해석과 관련하여 처리 기준을 발행함으로써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해야 함
 - 과세관청의 구체적인 의무는 ① 세법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법적 확실성(legal certainty) 제공, ② 일반 적용기준(criteria of general application)의 발행, ③ 특정 복잡거래에 대한 세무상 처리기준의 확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과세관청의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관련 세무소송 또한 상당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중국의 자원세 확대 방안

- 중국정부는 2010년 6월 1일 신장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자원세의 세율을 1%에서 5%로 인상함
 - 자원세는 원유와 천연가스 매출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 과세대상인 원유와 가스 중 생산을 위해 사용된 경우나 유전지역에서 연료의 수송에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가 면제됨
-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 내 원유의 13%, 천연가스의 29%가 매장된 지역으로 원유와 가스 생산이 이 지역 수입의 30%를 차지함

- 이후 중국정부는 2010년 7월 8일에 자원세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신장지구 외의 다른 지역까지 자원세를 확대하는 방안과 자원세의 부과대상을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다른 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음
- 이러한 논의대로 자원세가 확대되면 자원이 풍부한 서부지역에 대한 세수를 증가시키고, 소비자비용을 증가시켜 사용량을 감소시키므로 천연자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4. 네덜란드 톤세 적용 대상선박 확대

가. 톤세 적용 선박 확대 배경

- 최근 세계 각국은 톤세와 같은 해운기업에 대해 특례를 제공하는 세제를 도입하여 각국의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중임
 - EU 회원국은 EU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톤세를 적용하여 해상운송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이러한 톤세는 주로 네덜란드 model에 기초로 하고 있음
 - EU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은 EU 해운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톤세를 도입하였음
 - 네덜란드는 그동안 톤세의 적용대상 선박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EU위원회(EU



commission)는 회원국이 해상운송에 개별적인 지원정책을 하는 것을 수년 동안 반대하였음

- 하지만 2009년 1월 13일 EU위원회는 해저에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해상운송과 동일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므로, 케이블 설치 활동은 해상운송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결정함

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이러한 종류의 선박은 이미 통세가 적용되는 준설선(dredger), 예인선(tugboat), 및 보조선(assistant vessel)의 운항활동과 동일하게 통세의 적용대상이 됨

나. 개정 경과

- 2010년 조세개혁 패키지(Law 23/2009) 중 통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규정이 2010년 7월 16일에 승인됨
 - 2010년 조세개혁 패키지는 2009년 12월 23일에 입안되었으나, EU위원회가 승인하지 않아 조세개혁 패키지의 실행이 미루어졌으며 최근 EU위원회가 이를 승인함
 - 통세 적용대상 선박을 확대하는 조세개혁 패키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됨
 - 통세 적용대상 선박 확대는 네덜란드 해운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다. 개정 통세제도

- 통세제도에 따르면, 해운회사는 일반적으로 낮은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 다만, 해운회사가 새로운 통세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① 보유한 선박이 네덜란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고, ② EU나 EEA의 회원국 중 하나에 선적을 두고 있어야 함
- 새로운 통세제도는 ① 케이블이나 파이프 설치선박, ② 연구용 선박, ③ 크레인 선박의 운항활동을 포함하

정책흐름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
-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
-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

* 본 자료는 2010년 8월 9일 기획재정부 회계제도과에서 발표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추진실적」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8. 9일(월) 15:00 제11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제2차관)를 개최하여
 - 금년 3월에 마련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에 도입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에 따라
 - 국가자산·부채의 재무제표 계상 및 분석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정비하고
 -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국가회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 3개 핵심분야의 주요 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현재까지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추진실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 ① 도로, 댐 등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2차(5~6월)에 걸쳐 국토해양부 및 민간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사 점검을 실시하여 실사진행률을 제고하고 실재성을 확인하였으며
 - ※ 사회기반시설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여항시설 등 8개 중
 - ② '09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건전성관련 지표개발 등 체계적 재정분석기법을 마련 중이며
 - ③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워크숍, 정부부처·국가기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 ② 국가회계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 ① 금년 결산기간(2~5월) 동안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을 각 중앙관서에 현장배치하여
 - '09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고
 - ② 국가공무원 임용시 국가회계업무를 전담할 “회계 직공무원(9급 ~6급)”을 2012년부터 신규 선발하기 위해
 -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제도 정비를 추진중이며
 - ③ 회계담당 공무원의 상시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 국가회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였음

3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등을 위해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7월말)하였고
- ②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을 2012년부터 반영하기 위해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를 추진중임

■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이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국가기관 및 언론·국민 등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임

참고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추진실적과 하반기 실천계획

가. 추진배경

- '09회계연도부터 재정 전 부문(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시행
-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에 더하여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및 순자산변동표)를 추가로 작성
 - * 지자체는 '07년도부터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시행
-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된 국가통합 재무제표는 '11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 제출(12년 5월)
 - *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국회 제출
-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을

마련

※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10. 3. 19) 안건 보고

- ①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②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③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에 대해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회계결산지원단 구성·운영 등 13개 세부 추진과제 및 연도별 로드맵 마련

나.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주요 내용

- ① 국가자산·부채의 재무제표 계상 및 분석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
 - 도로, 댐,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실사·가격평가
 - 연금 등 충당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안 마련
 - 재무제표를 이용한 체계적 재정분석지표의 개발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대국민 홍보 체계적 실시
- ② 국가회계 인력 확충 및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등 국가회계 운영인력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
 -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국가공무원 임용시 회계직 공무원 신설
 - 회계·결산 담당공무원에 대한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 회계·결산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증가 및 추가 업무부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 ③ 국가회계제도의 지속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민간전문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운영
 - 국가회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 국가회계 전문자격 인증제도 및 회계법인의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로드맵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 인력 전문성 제고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2010년 (추진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기반시설 실사 • 연금 등 총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직공무원 신설을 위한 법·제도 정비 • 「회계결산 지원단」 구성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방안 검토 • 회계사 시험과목의 정부회계 내용 반영 추진
201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 사회기반시설 가격평가 • 연금 등 총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담당 공무원의 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마련 • 국가회계 전문 자격 인증제도 도입
2012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회계연도 국가 재무제표 국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직 공무원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사 시험과목의 정부회계 내용 반영 • 회계법인에 대한 국가회계 전문성 강화제도 도입
지속 추진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에 대한 국가회계 홍보 강화 • 회계담당 공무원의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I.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계획 개요

가. 국가회계 운영시스템 정비 분야

1. 사회기반시설 실사 완료 및 가격평가

■ 주요 내용

-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09. 1. 1)에 맞추어, 사회기반시설*의 재무제표 자산 계상을 추진
 - *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여항시설 등
- 최초로 실사·평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재정상태

표에 반영

■ 추진실적

- 사회기반시설의 실재성 확인 및 dBrain 입력을 위한 실사작업을 '09. 9월부터 지속 추진중(현재 진행률 76%)
- 실사진행률 제고 및 실사수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0년 상반기 2차례 실사 지도·점검 실시
 - (1차) '10. 5. 10~14, 실사가 부진한 '국도' 및 '하천' 등을 중심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 등 17개 일선기관 점검
 - (2차) '10. 6. 21~25, 도로, 철도 등 실사대상 전반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20개 일선기관 점검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중 사회기반시설 실사 완료 추진
- '11년 상반기 중 가격평가 및 재무제표 계상 추진

2. 연금 등 총당부채 회계처리 방안 마련

■ 주요 내용

-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총당부채의 회계처리 방안을 외부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 필요

※ 총당부채 : 지출시기·금액 등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를 의미하며 현재 총당부채 회계처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연도까지 유예(국가회계기준 제21조 및 부칙 제1조)

- 연금총당부채 계상을 통해 연기금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정운영 유도
- 연기금에 대한 국가의 미래 경제적 부담을 명확히 하여 연금수급 구조의 합리화를 도모,

- 향후 연금자산 관리·운용체계 개선, 연금 관리조직 효율화 등을 촉진 전망

※ 4대 공적연금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국민연금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중 국가회계기준센터, 관계부처 및 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연금회계처리 실무 T/F 구성
- 행안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기관리기관 참여
- 아울러 대학, 국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외부전문가 공청회 개최
- ※ 실무T/F에서 사전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 청취

3.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 개발

■ 주요 내용

- 발생주의 회계방식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유용한 재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원가분석 등 재정분석기법 개발
- 재정정보를 이용한 재정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 회계책임 및 공공서비스 성과 판단

■ 추진실적

- '09년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른 재정분석지표 개발 중
- 국가재정과 관련된 정보 유형에 따라 재정지표 사례 개발

국가재정 정보 유형	재정지표 사례
① 국가채권, 사회기반시설 등 국가자산 관련 정보	• 대손충당금 설정률, 조세채권회전율 • 사회기반시설 관리·유지비용비율
② 국가채무 및 재정건전성관련 정보	• 채무평균상환기간, 채무유형별구성비 • 단기부채상환능력, 유동비율
③ 정책사업별 총원가 관련 정보	• 인건비 비율 및 인건비 증감률 • 프로그램총원가 증감률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발생주의 도입 국가 등 국·내외 재정지표 사례 분석
- '11년, 원가정보를 활용한 성과평가 지표 등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시스템 구축

4. 국가회계에 대한 종합 홍보체계 구축

■ 주요 내용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 정부부처, 전문가, 언론·국민 등 홍보대상별로 내용, 매체 및 시기를 차별화한 맞춤형 홍보전략 수립

■ 추진실적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10. 5. 11~12)
- 회계담당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및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6개 주제 발표
 - ※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개최, 연인원 약 400여명 참석
- 국가회계 홍보만화 제작 추진
- 일반 공무원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회계의 도입 취지, 활용도 및 주요 내용을 만화 형식으로 소개
- 홍보만화 스토리 및 회계 콘텐츠 내용 작성

- 국회(예결위, 재정위) 등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회 개최(4월, 7월)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홍보만화 제작 및 배포 완료
- 신문·정책지 등에 연재, e-book 제작 후 인터넷 게시 등 다양한 배포 전략 시행

나. 국가회계 인력전문성 제고 분야

1. 「회계결산지원단」 구성 및 운영

■ 추진배경

- '09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차질없는 작성을 위해 각 중앙관서의 회계·결산 인력 및 회계전문성 보강 필요
- 회계전문가(공인회계사)를 각 중앙관서에 현장배치하여 결산기간 동안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업무 수행

■ 추진실적

- '10. 2~5월까지 결산기간 동안 42개 중앙관서에 전문인력 56명(경력 14, 수습 42)을 배치하여 재무제표 작성 등 지원

* 소장 : 편호범 위원, 위탁수행기관 : 한국공인회계사회

-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작성 지원
- 국가자산·부채, 수익·비용 회계처리 검토
-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등 결산보고서 작성 지원
- 회계결산지원단 업무성과 보고회 개최('10. 6. 1)
- 성과보고 및 지원단 전문인력 참여의견 등 발표

■ 향후계획

- 매년 결산기간(1~5월, 5개월) 중 「회계결산지원단」 운영

- 다만, 각 중앙관서의 전문인력 충원 등 국가회계·결산 조직체계 정비와 연계하여 운영

2. 공무원 임용시 “회계직 공무원” 신설

■ 주요 내용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의 차질없는 정착을 위해 각 중앙관서 회계·결산 공무원의 전문성 및 근무안정성 확보 필요
- ※ 각 중앙관서의 회계·결산업무는 운영지원과 등에서 일반직 행정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약 1년 정도의 주기로 순환보직

-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국가공무원 중 국가회계 업무를 전담할 “회계직 공무원” 신설 추진
- 2012년부터 6~9급 공무원 신규 채용시 회계직 공무원 선발

■ 추진실적

- 행정안전부 담당부서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회계직 공무원 신설방안 마련
- 선발직급, 선발시기 등 회계직 공무원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의 진행중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행안부와 협의의 업무협의를 거쳐, 회계직 공무원 신설을 위한 공무원임용령 개정 추진
- '12년 공무원 임용부터 회계직 공무원 선발

3. 국가회계 맞춤형 교육 실시

■ 주요 내용

- 회계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담당자별 특성에 맞는 국가회계에 대한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회계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국가회계 교육과정 강화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입공직자 및 국·과장 후보자 교육과정에 국가회계 포함 추진(2시간)
- 상시학습이 가능하도록 사이버교육 개설 및 관리 강화

■ 추진실적

- 국가회계 전문교육에 대한 사이버강의 운영
- '10. 2~7월까지 매월 평균 300명, 총 1,800여명 수강
-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과정(5급 승진자 과정, '10. 4월)에 국가회계 과정 포함
- 중앙관서 회계담당관 국가회계 교육 개최('10. 6월, 2일)
- '국가회계 담당자 전문교육' 위탁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공고('10. 7월)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국가회계 담당자 전문교육 실시(8~11월)
- 재무결산담당자 집합교육(12회) 및 dBrain사용자 교육(2회)
- ※ 제안서 마감(8. 10), 평가위원회(8. 13)를 거쳐 '국가회계 담당자 전문교육' 위탁기관 선정

다. 국가회계제도 인프라 구축 분야

1.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운영

■ 주요 내용

- 국가회계에 관한 전문성 축적과 체계적 연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국가회계기준센터」 설치
- 민간전문기관 내 부설기관 형태로 설립토록 하여 국가회계기준 관련 업무 위탁

-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 등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업무 수행
- ※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실무해석·질의회신 검토,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재정지표 개발, 외국 정부회계제도에 대한 조사·분석 등

■ 추진실적

- 국가회계기준센터 위탁기관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정
- 입찰공고(4. 23~5. 4), 제안서 마감(5. 4) 및 평가위원회의 평가(5. 7)를 거쳐 위탁기관 선정(5. 11)
- 업무위탁 계약 체결, 인력충원 및 조직구성(5~6월)
- 국가회계기준센터 개소식 개최(7. 26)
- * 재정부 제2차관, 감사원 감사위원, 심의위원회 민간위원 등 참석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중 연금충당부채 공청회 및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에 대한 워크숍 등 개최

2. 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부회계 내용 반영

■ 주요 내용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회계학)에 국가 및 지자체 회계를 포괄하는 정부회계 내용 포함
-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유예기간(2년)을 두어 '12년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반영

■ 추진실적

-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위한 2차례 실무 T/F회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 추진중

현행	개정안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별표 1] 제1차 시험과목
과목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영학(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경영학(후략)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	[별표 2] 제2차 시험과목
과목	과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회계 원가회계(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회계(정부회계 포함) 원가회계(후략)

■ 향후계획

- '10년 하반기,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출제방안 확정(금감원)을 거쳐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등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3.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검증제도 도입

■ 주요 내용

- 각 중앙관서 재무제표에 대한 민간 회계전문가의 검증 후 국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원 제출
- 정부가 제출하는 국가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및 정확성 확보 및 국가 신인도 제고
-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원 검사업무의 효율성·효과성 제고

■ 추진실적

-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 연구용역 발주('10. 4~6월)
-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를 기 도입한 외국의 감사제도 분석

- 재무제표 사전 검증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이슈사항 분석

* 회계법인 선정·비용부담 주체 및 의견표명 수준 검토, 재무제표 검증에 대한 품질통제 방안 마련, 감사기준 제정 주체 등 검토

- 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사항 마련

■ 향후계획

-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 '10년 하반기, 국가회계법 개정 추진
- '12년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민간 회계전문가 사전 검증제도 도입

III.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추진중인 주요 과제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
- 부진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 및 이행방안 강구 등을 통해 완결성 있는 정책 추진
- 불가피한 외부여건 변화 등으로 당초 수립한 계획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획 변경 필요성 등을 검토
- 추진과정에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경우에는 당초 계획보다 조기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

⇒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 점검 후,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경과를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

-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3개년 추진계획의 추진과 함께

-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 정부부처, 국가기관, 전문가 및 언론·국민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대책을 강구
-
-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
 - 외부전문가 등과 함께 국가회계제도 관련 워크숍,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회계 정책적 공감대 확산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

* 본 자료는 2010년 8월 4일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4개 시범기관 추진동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정부는 공공기관에 자율·책임경영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을 추진 중
- '09. 12월, 공모(15개 기관 응모)를 통해 4개 시범기관(인천국제공항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을 선정하고,
- '10. 1월, 기관장과 주무부처 장관은 경영자율권 확대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성과목표*에 대하여 자율경영계약을 체결
 - * 기관의 핵심역량 위주로 3~4개의 핵심 성과목표 선정
- '10. 6월, 자율권 시범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및 후속조치 방안 마련
- 우수·보통·부진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10년도 실적을 평가
 - * 우수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의 경우 연임을 건의하고, 부진 등급의 경우 자율권을 회수할 계획

구분 \ 등급	우수	보통	부진
자율권 지속 여부	지속		회수*
기관장	인사	연임 건의	자진사퇴
	성과급	성과급 지급	
임직원	성과급	1등급 범위 내 가산	1등급 범위 내 차감
		-	-

* 자율권 부여(정원 및 조직) 이전 단계로 환원

- 그동안 각 기관이 확대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반기까지 상당한 성과를 달성

기관별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예)

기관명	주요 성과목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
인천공항공사	동북아 허브공항 실현	• 항공여객 수 및 화물 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 27% 증가
중소기업은행	영업역량 제고	• 6월말 현재 은행직원 1인당 대출금이 전년말 대비 10.6억원 가량 순증
한국가스공사	유전·가스전 확보 매장량 증대	• 캐나다 엔카나社 보유 3개 광구의 지분 50% 참여로 2,400만톤 가량의 천연가스 매장량 확보
지역난방공사	원가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 조직정비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상반기 영업이익률 11% 달성(최근 5개년 평균 6.3%)

- 정부는 내년 4월말 4개 시범기관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인사조치·성과급 지급 등 후속조치할 계획
- 정부는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제도 정착과 성공 모델 도출을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 금년 12월중 자율권 확대 시범사업의 추진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경영자율권 대상기관을 확대할 계획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

- 주요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로 서민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 도모 -

* 본 자료는 2010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①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 하였음
- ② 최근 소비자 물가는 2%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본격화, 유가 재상승 소지 등으로 물가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고 아직도 어려운 서민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공공요금부터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물가불안 심리를 차단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
- ③ 중앙공공요금의 경우 경영효율화를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하여 원칙적으로 동결하는 등 공공요금의 안정적인 운용기조를 지속키로 함
 - 도로통행료, 열차료, 국제항공요금(인가제노선), 광역상수도(도매), 우편요금은 경영효율화를 통해 금년에 동결하고,
 - 통신요금은 결합상품 활성화, 초당요금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금인하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음
 - 다만, 손실 누적, 에너지 절감유도 필요성 등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중 분산하여 추진함으로써 부담을 최대한 완화

- 전기요금 : 8월 평균 3.5% 인상(주택용 2%)

- * 에너지 절약유도 및 한전 적자누적(08년 △3.0조원, 09년 △0.1조원, 10년 상반기 △0.9조원)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 *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높은 일반용은 동결하고, 보상률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하여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 간 형평성 제고

전기요금 용도별 조정내역(%)

비 고	평균	주택	일반	농사	교육	산업	가로등	심야
조정률	3.5	2.0	동결	동결	5.9	5.8	5.9	8.0
원가회수율	조정전	91.5	92.2	100.7	37.2	84.4	90.9	80.4
	조정후	93.7	93.7	99.4	36.5	90.1	96.5	88.0
								73.9

- 도시가스요금(도매) : 9월 평균 4.9% 인상 및 원료비 연동제 복구

- * 08년 원료인 LNG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연동제를 유보하여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4.3조원) 해소
- * 용도별로는 원가보상률이 낮은 업무난방용·열병합용 등을 중심으로 인상하여 용도별 원가회수율 격차를 완화하고 소비자 간 형평성 제고

도시가스요금 용도별 조정내역(%)

	평균	주택용	업무 난방용	일반용	산업용	열병합 ¹	열병합 ²	열전용 설비용	
조정률	4.9	5.9	5.1	4.4	3.9	5.7	4.0	3.4	
원가 회수율	조정전	88.9	87.1	90.4	90.9	90.6	89.3	90.8	91.9
	조정후	93.3	92.3	95.0	94.9	94.1	94.3	94.4	95.0

- 시외·고속버스운임 : 8월 중 시외버스 평균 4.3%, 고속버스 5.3% 인상
 - * 08년 이후 경유 등 원가상승 등에 따라 08. 10월과 09. 2월 두 차례로 나누어 요금을 인상키로 하였으나, 09. 2월 2차 인상을 유보함에 따라 유보분에 대해 최소수준 반영
-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서민(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인을 확대를 통해 실질적으로 요금 동결
 - * 요금 인상분만큼 서민층 할인을 상향 조정
- (전기) 기초생활수급자·사회복지시설 할인(%): (주택)20 → 21.6, (심야)25.9 → 31.4
차상위계층 할인(%): (주택) 신규할인 2.0, (심야 전력) 24.1 → 29.7
- (가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1~3급) 등 할인(%): 11 → 16, 차상위계층 할인: 신규 5.6%

2010년도 중앙공공요금 조정방향(물가가중치, %)

동 결	도로통행료(0.14), 열차료(0.17), 국제항공요금(인가제 노선, 0.17), 광역상수도요금(도매, 0.6), 우편요금(0.01)
인하 유도	통신요금(5.46)
최소수준 조정	전기요금(1.9), 도시가스요금(도매, 1.61), 시외버스요금(0.31), 고속버스요금(0.13)

※ 전기·도시가스요금(지경부), 시외·고속버스요금(국토부)의 세부 조정내용은 주무부처에서 배포하는 별도의 보도자료 참조

- ④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를 유도할 계획
 -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에 대해

서 예산 및 평가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방공공요금 안정을 정책적으로 지원

※ 지방공공요금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결정하는 공공요금(11종)

시내버스료(1.14), 택시료(0.48), 도시가스료(소매, 1.61), 고등학교납입금(0.79), 문화시설 입장료(0.01), 정화조청소료(0.05), 공연예술관람료(0.02), 지하철료(0.36), 상수도료(소매, 0.6), 하수도료(0.18), 쓰레기봉투료(0.17)

* ()는 물가가중치(%)

- ⑤ 공공요금 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 및 요금 안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음

- 금년 7. 1일부터 주요 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 제고 및 원가절감 노력을 유도한 데 이어,
- 중장기적으로는 자발적 원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기요금협약제 등 선진화된 요금결정체계 도입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음

* 중기요금협약제 : 현재의 단년도 위주의 사후 원가보상방식에서 벗어나 일정기간(2~5년) 적용할 가격상한을 미리 설정하여 공기업의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유도

- 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금년 하반기 중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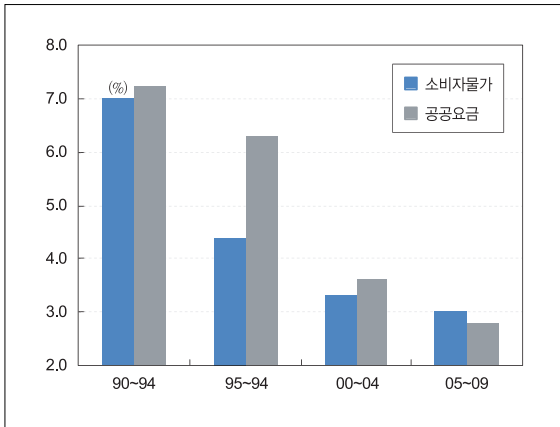
- ⑥ 정부는 서민부담 완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공공요금의 안정적 운용뿐만 아니라,

- 유통구조 개선, 시장경쟁 촉진, 가격정보공개 확대 등 구조적 물가안정대책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계획임

참고 최근 공공요금 동향

- **(전반적 동향)** 우리나라 공공요금은 05년 이후 낮은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
- 90년대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00년대 들어 점차 안정되면서 05년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하회
- 특히 08년 이후에는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 다른 품목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시현

공공요금 및 소비자물가 동향



최근 물가상승률(%) 및 기여도%p)

	08		09		10.상반기	
	상승률 (기여도)	상승률 (기여도)	상승률 (기여도)	상승률 (기여도)	상승률 (기여도)	상승률 (기여도)
소비자물가	4.7	2.8	2.7			
농축수산물	0.5 (0.04)	6.5 (0.53)	4.4 (0.38)			
공업제품	7.8 (2.38)	2.5 (0.78)	3.6 (1.15)			
개인서비스	4.7 (1.64)	2.8 (0.97)	2.2 (0.75)			
공공요금	2.4 (0.40)	1.9 (0.31)	1.5 (0.24)			
집세	2.3 (0.21)	1.6 (0.15)	1.6 (0.15)			

- **(세부 동향)** 중앙공공요금이 상대적으로 안정세
- 중앙공공요금은 지방공공요금 등에 비해 낮게 상

승하면서 공공요금 안정 및 전반적 소비자 물가 안정을 견인

* 공공요금 상승률(05~09년 평균, %): 중앙공공요금 0.8, 지방공공요금 5.2

공공요금 및 소비자물가 동향

(단위: %, ()는 기준치)

	05	06	07	08	09	09.상	09.하	10.상
소비자물가	2.8	2.2	2.5	4.7	2.8	3.3	2.2	2.7
공공요금(16.3)	3.2	3.5	3.1	2.4	1.9	1.8	2.1	1.5
- 중앙(7.8)	△0.4	1.5	1.1	1.2	0.7	1.0	0.4	△0.3
- 지방(5.4)	6.0	6.9	5.7	4.0	3.2	2.4	4.1	3.1
- 기타(3.1)	3.6	2.7	3.0	2.9	2.7	2.8	2.7	2.5

- 품목별로는 유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원가상승률이 높았던 가스 및 교통요금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

* 05~09년중 평균상승률(%) : 가스(7.5), 택시(5.5), 시내버스(5.0), 철도(2.2), 상수도(2.8) 전기(0.2)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

- 상반기 목표(162.9조원, 진도율 60.0%) 2.5조원 초과 -

* 본 자료는 2010년 7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에서 발표한 「6월말 현재 165.4조원(진도율 61.0%) 조기 집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7. 26(월) 오후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제 12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실적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하였음
- 정부는 연초에 경기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60% 수준의 재정조기집행 계획을 수립
- 6월말까지 재정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0년 집행관리 대상 사업비 271.3조원 중 165.4조원을 집행(진도율 61.0%)하여 상반기 집행계획 162.9조원(진도율 60.0%) 대비 2.5조원(진도율 1%p)을 초과 집행하였음

(단위 : 조원, %, 누계)

구분	'10년 집행규모	6월말 계획		6월말 실적		
		금액	진도율	금액	집행률	진도율
합계	271.3	162.9	60.0	165.4	101.6	61.0
예산	175.1	105.7	60.4	109.3	103.4	62.4
기금	31.3	17.8	56.8	18.2	102.2	58.1
공공기관	64.9	39.3	60.6	38.0	96.4	58.6

-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제품도 연간 계획 77.2조원의 60%인 46.0조원을 구매하였음
-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으로 민간소비·투자를 보완

함으로써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

* 재정조기집행으로 상반기 0.87%p 성장을 제고 효과(조세연, 10. 7월)

- 희망근로 프로젝트 등 일자리사업은 연간예산 5.5조원의 63.6%인 3.5조원을 집행하여 민간부문 고용부진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복지,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 고용확대에도 기여
- 또한, 수출금융·긴급경영자금 지원, 소상공인 창업·중소 벤처지원 등을 통해 아직 경기회복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않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해소도 적극 지원
- * 긴급경영 자금지원(78.4%, 1,876억원) 창업·중소 벤처지원(59.2%, 6,513억원) 등

- '09년에 비해 예산안 국회통과가 지연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조기집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 등과 함께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 ① 신속한 예산집행을 위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상시 추진하여 집행여건을 개선
- 재정조기집행을 위해 '09년 한시 도입한 주요 제도 개선 과제*를 연장 적용하고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긴급입찰제도, 선금지급비율 10% 확대, 지방비 확보전 국비 교부 제도 등

** 이전용, 수시배정 등의 재정부 협의기간 단축(평균 20일 → 10일 이내), 문화재 보수정비 설계심사 처리기한 단축(30일 → 15일), G2B 건적입찰시 재안내공고 절차 간소화 등

- 부처·공공기관도 집행절차 간소화, 대금지급 방식 변경, 신공법 적용 등 자체적인 집행효율화 추진
- ② 총 11회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를 개최하여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집행애로 해소 등을 신속하게 추진
- ③ 조기집행에 참여한 67개 기관(40개 중앙부처, 27개 공공기관)에서 부처합동 현장점검 4회, 자체 현장점검 1,135회를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 강화
- 이용걸 차관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총력을 다해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당초 계획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금년 상반기에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었다”고 평가
- “그러나 소비·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서민의 체감경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반기에도 서민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및 민생안정사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집행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
- 정부는 하반기에는 재정집행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관리할 계획
- ① 최근의 견조한 경기회복세를 감안하여 균등집행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응
- ② 하반기 재정집행 규모 감소 보완을 위해 연말 이월·불용 최소화
- ③ 아직도 어려운 서민체감경기를 감안하여 일자리·민생안정 관련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 관리
- ④ 상반기 조기집행 과정에서 저조한 실적을 보인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지속 추진

참고 | 조기집행 우수사례 (예시)

민생안정·일자리 지원

- (복지부) 노인돌봄서비스 조기집행(65.8%, 583억원)으로 독거노인 등 1.6만명에게 서비스 지원
-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조기집행(64.0%, 704억원)으로 저소득무직여성, 실업청년 등 취약계층 일자리 4.4만개 창출
- (복지부) 노인일자리확충사업 조기집행(69%, 939억원)으로 19.9만명 노인에게 일자리 등 제공
- (고용노동부) 신규실업자등직업훈련사업(64.2%, 538억원) 근로자능력개발지원금(78.2%, 554억원) 조기집행으로 9.8만명에게 근로자 직업 훈련
- (고용노동부) 취업장려수당 조기집행(85.1%, 33억원)으로 중소기업 빈일자리에 1.6만명 취업
- (농림부) 사료 공급업체에 사료원료 구매자금사업 조기지원(88.3%, 528억원)하여 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통한 사료가격 안정 및 축산경영 지원
 - * 사료가격(원/kg) : (09. 1)548 → (09. 4)536 → (10. 1)470 → (10. 5)463
 - * 사료가격 안정을 통한 축산경영비 절감 효과 : 약 6,757억원 (농림부)
- (산림청) 숲가꾸기, 산림재해예방 등 13개 분야 녹색일자리 사업을 조기집행하여 일자리 53,817개 창출

산업·중소기업 지원

- (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사업(1,500억)을 1월에 전액 집행하여 선박플랜트 및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 뒷받침
- (지정부) 전기안전관리홍보 사업의 결제방법 변경(구매카드 → 인터넷뱅킹)으로 결제기간 단축(10. 4월)

- * (중전) 구매 후 20~30일 → (개선) 계약체결 즉시 입금
- **(중기청)** 긴급경영안정지원사업 조기집행(78.4%, 1,876억원)으로 거래대금·인건비 등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사업의 조기집행(72.9%, 2,188억원)으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 **(중기청)** 창업기업지원자금 조기집행(59.2%, 6,513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 조기지원
- * (규모 기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 1,698업체, 6,062억원
- ** (업력 기준) 설립 3년 이하 창업 초기 기업 : 1,052업체, 3,865억원

공공서비스 조기공급

- **(국토부)** 군남 홍수조절지 본댐 조기 완공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당초 11. 8월 완공 예정 → 10. 6월 조기 완공
- **(가스공사)** 경북상주 가스배관 공사 조기 완공으로 천연가스 조기 공급* 당초 11. 12월 완공 예정 → 10. 6월 조기 완공
- **(방재청)** 재해예방사업을 본격적인 우기전에 조기 집행(70%)추진하여 전체사업의 64% 수준인 507개소를 조기 완공
- * 주택 46천동 79천세대 및 농경지 23천ha에 대한 침수 등 재해를 예방하고 일자리 6,500명 창출

참고2 예산집행특별점검단 개요

- 구성 및 운영
 - 구성 : 기획재정부 제2차관(주재), 각 부처 1급 및 공기업 부사장
 -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재정관리점검단'을 한시적으로 '예산집행특별점검단'으로 명칭 변경하여 운영
 - 개최 주기 : 매월 2회(하반기부터는 월 1회 개최)
- 점검 대상
 - 예산, 기금 및 투자사업 규모가 큰 공기업의 주요

사업비

* 예산 40개, 기금 38개 및 공기업 27개(인건비, 경상경비 및 정부내부거래 등 제외)

■ 논의 사항

- 집행관리대상 주요 사업비의 월별 집행실적 및 전망
- 부처, 공공기관의 집행상 애로요인 및 해소 대책
- 집행 원활화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 추진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 본 자료는 2010년 7월 30일 국세청 통계기획팀에서 발표한 「국세통계를 조기에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1. 최근 국세통계 공개 과정

■ 국세청은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일환으로 세정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통계를 적극 공개하고 있음

• 그동안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세통계 수요조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 '08년 190개 - '09년 317개 기관

• 작년 연말에는 '시·군·구 단위별 사업자 현황' 등 신규 통계 25개 등을 포함한 총 309개의 국세통계가 수록된 「2009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한 바 있음

■ 올해에도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국세통계를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개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음

• 국세통계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재미 있는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 쓴 「한눈에 보는 국세통계」 발간 (2010. 3월)

* 40대 창업 심각하게 고민 중,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금도 많이 낼까? 등

•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관련 통계를 심층 분석한 주제별 국세통계 처음 공개

* 국세통계로 본 CEO(2010. 4. 15. 보도)

* 자영업자 국세통계를 알면 창업이 보임니다(2010. 6. 24. 보도)

2. 연말에 공개하던 국세통계를 7월에 조기 공개

■ 이달에는 조세제도 및 행정을 연구하는 행정기관, 학계와 납세자 등이 국세통계를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가 높은 27개의 통계표를 공개하였음

징수 분야

• 지난해 조기 공개한 연도별·지역별·세무서별 세수실적 외 국세환급금 실적, 체납액 정리실적 등 7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통계 공개
- '09년 세수실적은 '08년 대비 2.0% 감소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7.2% 증가하였음

법인세 분야

• 소재지별·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등 법인세 신고현황 통계 2개를 공개
- '09년 신고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 초과인 상위 0.1% 법인(564개)이 전체 부담세액(34.9조원)의 58.4%(20.4조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부가가치세 분야

- 법인·일반·간이사업자의 업태별·과세표준 규모별 부가가치세 '09년 귀속분 신고현황 통계를 9개월 공개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8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의 사용이 늘어난 음식업(9.5%)·서비스업(3.6%)은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남

권리구제 분야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 등 '09년 통계 6개는 금년에 처음으로 조기 공개
- 과세전적부심과 이의신청의 경우 법인세·상속세의 채택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채택률(건수) 현황

구분	전체	법인세	상속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과세전적부심	35.2%	41.6%	40.3%	39.2%	35.6%	33.8%
이의신청	26.4%	38.3%	35.2%	28.4%	25.4%	28.5%

-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의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음

* 접속경로 : 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통계연보 → 조기공개

3. 향후 계획

- 연말에는 이번에 공개된 통계를 포함하여 주요 이용자들의 통계수요를 반영한 「201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예정임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들의 요구 수준에 맞는 유용한 국세통계를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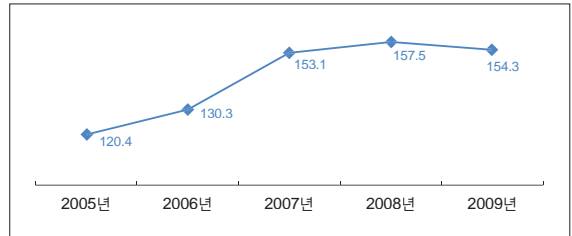
참고 주요 국세통계 내용 분석

1. '09년 세수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154.3조원

- '09년 전체 세수는 '08년 157.5조원 대비 2.0% 감소한 154.3조원임
-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08년(43.8조원) 대비 7.2% 증가한 47.0조원인 것으로 나타남

[2-1-2] 연도별·세목별 세수 실적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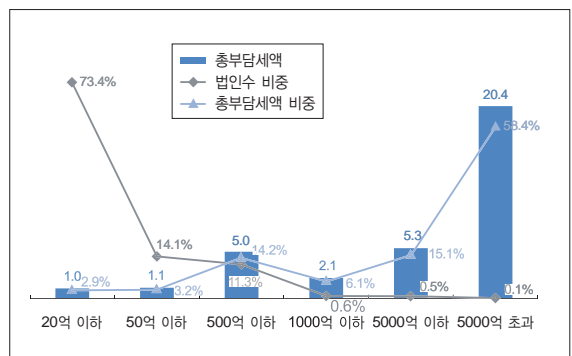


2. 신고 법인의 0.1%(564개)가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58.4%를 부담

- '09년 신고 기준으로 수입금액 5천억원을 초과한 법인(564개, 0.1%)이 전체 부담세액 (34.9조원)의 58.4%인 20.4조원을 차지

[8-1-3] 규모별 법인세 신고현황

(단위 : 조원)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

- 행안부, 1조원 징수목표액 중 상반기에 50.2% 달성 -

* 본 자료는 2010년 8월 5일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에서 발표한 「지방세 체납액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한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한 결과, 올해 체납액 징수목표액(1조 44억원) 중 상반기에 5,043억원(50.2%)을 징수했다.
-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액(1조 44억원)은 전년도 이월체납액 대비 '09년도 징수목표액(25%)보다 5% 상향 조정(30%)한 것으로, 금년 말까지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열악한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고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 '10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상반기(6. 1~6. 30), 하반기(11. 1~12. 31)

- 2010년 6월말까지 자치단체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① 광역자치단체 징수실적

- 16개 시·도는 전년도 이월체납액(3조 3,481억원) 중 6월까지 징수목표액(3,348억원)을 초과달성하였으며, 특히,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6월까지 광주광역시 72.8%, 부산광역시는 67.8%, 충청북도는 61.4%를 각각 징수했다.

※ 2010년도 6월말까지 목표액 대비 징수율 : 50%

② 기초자치단체 징수실적

-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대비 6월까지 징수율은 50.2%이며, 이 중 135개 시군구가 50%를 상회한 반면, 97개 시군구는 50%에 못 미친다.

- 연간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실적 상위단체는 경남 합천군(178.3%), 서울 광진구(145.3%), 서울 노원구(142.2%), 전북 임실군(140.8%) 순이며, 하위단체는 전북 장수(22.4%), 강원 철원군(22.9%), 인천 동구(24.2%), 서울 중구(26.9%) 순이다.

징수목표액 대비 징수율

구 분	100% 초과	100 ~ 50%	50 ~ 40%	40% 미만
기초자치단체 (232개)	17개 (7.3%)	118개 (50.9%)	57개 (24.6%)	40개 (17.2%)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대포차에 대한 체납세 정리 기법을 개발·보급하며,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전파하는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불량자 등록 등 간접 행정제재수단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① 대포차에 대한 체납정리기법 개발 보급

-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337,415건)을 전수조사하여 책임보험가입자의 주소지 파악 후 소유자와 책임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의 체납액 징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 23,40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는 등 '09년 11월부터 '10년 6월까지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72억원의 체

납세를 징수했다.

② 관세청 및 금융기관 등과 체납정리를 위한 공조체제 유지

- 관세청 환급금 자료를 공유하고, 금융기관의 계좌조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강화하여 압류를 추진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공매를 추진하여 체납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③ 체납세 징수 우수사례 발굴·파급

- 다음과 같이 자치단체로부터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고 있다.
- 건설업 영위 체납법인(시행사)의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 공동명의로 된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체납액 징수(대구시)
-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사를 통해 체납자가 가입 보험목적물 소재지 파악 후 추적하여 체납액 징수(울산시)
- 체납 후 국외이주하여 새로운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재입국하여 활동하는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서울시)

■ 이희봉 지방세제관은 “최근 지방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효율적으로 세입을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 “지방세 세입구조 건실화를 위해 체납액 정리 등 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할 것이며 정기적으로 지방세 체납정리실적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10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6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시도	'09년 이월체납액	징수목표 대 징수실적			
		목표액 (A)	6월 목표액(B)	실적 (C)	C/A
전국	3조3,481	1조44	3,348	5,043	50.2
서울	7,557	2,267	756	1,059	46.7
부산	1,835	550	183	373	67.8
대구	1,423	427	142	190	44.5
인천	1,615	484	161	281	58.1
광주	673	202	67	147	72.8
대전	832	250	83	121	48.4
울산	740	222	74	96	43.2
경기	10,422	3,127	1,042	1,542	49.3
강원	935	280	93	133	47.5
충북	629	189	63	116	61.4
충남	1,432	430	143	227	52.8
전북	717	215	72	129	60.0
전남	835	250	83	117	46.8
경북	1,506	452	151	203	44.9
경남	2,094	628	209	276	43.9
제주	236	71	24	33	46.5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마련 · 시행 —

* 본 자료는 2010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발표한 「재정위기 자치단체,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못한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사업 추진이 엄격히 제한된다.
-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 금번 지방재정 건전화 종합대책은 최근 성남시가 판교신도시 조성 특별회계 관련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고,
 - 그간, 일부 자치단체가 호화청사 건립, 전시성 행사 개최 등 방만한 살림살이로 인해 인건비·서민복지 예산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되었다.
 - 금번 대책에서는 지방재정 전반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도 함께 포함했다.
- 금번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과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추진을 엄격히 제한하고,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절감과 세수증대 자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금년 중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수지, 채무증가, 세입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외국의 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하여,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재정위험 측정지표와 재정위험 단계별 세부적인 재정건전화 조치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 둘째, 금년부터 지방채 발행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 사전적으로는 최근 자치단체의 채무가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 특히, 한도액 산정시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도록 미래 4년간의 채무상환비율을 새로 반영했다.
 - 또한, 사후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세입결산액에서

- 세출결산액을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의 30~60%를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하거나 감채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특히, 채무가 과다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채무감축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 지방공사채 건전관리도 강화하여 발행승인 규모를 축소하고,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을 구성하여 재무위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경영평가 시 부채관리노력·실적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 셋째,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패널티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재정 분석제도와 보통교부세 산정을 전면적으로 연계하도록 했다.
 - 우선,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항목을 '10년 기준재정수요·수입액의 2.6%, (2.8조원 수준)에서 '12년 5%(5조원 이상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 또한, '11년부터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등 낭비성 지출 절감 노력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 세입확충 노력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10개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여 재정운용을 잘하는 자치단체가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넷째, 호화·과대청사 신축 및 선심성 행사·축제 등 최근 주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금년부터 자치단체의 청사 신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청사 신축을 추진하더라도 사전에 리모델링 가능 여부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또한,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청사 표준면적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했다.
 - 한편,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 범위를 현행 5억원 이상에서 내년부터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 이후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특별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 다섯째,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상황을 각 자치단체별로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해 왔으나,
 - 앞으로는 매년 10월에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 개별공시 결과를 종합하여 유사 자치단체 상호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공시를 추진한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채무비율 및 행사축제경비 등 낭비성 지출현황을 통합공시하게 되면, 주민들이 유사한 자치단체와 서로 비교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아울러, 현재 100개 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용을 내실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통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여섯째, 금년 8월부터 현행 재정분석·진단제도 시행과 연계하여, 전국 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일제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일제점검에는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참여하게 되며,
 - 일제점검을 통해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자치단체에 대해서 심층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재정건전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편,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와 재정위기 사전예방

을 위한 총체적 전략과 대책을 논의하고, 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지방공기업 사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 끝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 세원확충과 과세기반 정비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금년에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2013년부터 부가가치세의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에 대한 정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자치단체 차원의 지구노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는 금년중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을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련 전문가 및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및 위기관리대책

-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12월)
 - 세입결손, 채무, 낭비성 지출 등 주요 재정상황 모니터링 및 재정위기 상황 사전 예측·경보
 - ※ 자치단체별 재정상황 정도에 따라, 정상 → 주의 → 심각 경보
- 지방재정 위기관리대책 시행('11. 1월)
 - 위험 등급에 따라 심층 진단을 거쳐 지구노력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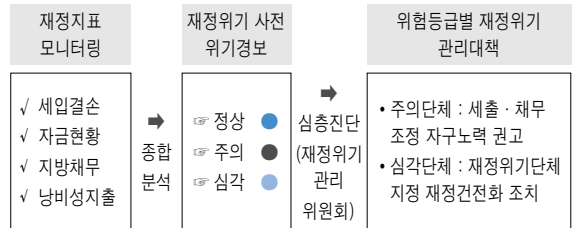
또는 강력한 건전화 조치 등 선제적 대응

- ※ (“주의” 단체) : 심층 진단 → 세출·채무조정 및 지구노력 권고
- (“심각”단체) : 재정위기단체 지정 → 건전화 조치 시행

재정건전화 조치내용

- ① 신규 사업 추진 제한 및 지방채 발행 통제
- ② 공무원 인건비 절감 등 세출 절감, 세입 증대 등 자구계획 수립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개요



2.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및 위기관리대책

- ① 지방채무 관리 및 심사 강화(8월)
 - 실질적 채무수준 및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가 되도록 한도액 설정시 미래 위험도* 반영, 유형 세분화 (3유형 → 4유형)
 - ※ 채무상환비율 : (현행) 과거 4년 실적 → (개선) 향후 4년 계획도 포함
 - 한도 초과발행 심사시 객관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정량기준 추가 및 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② 지방채무 감축 유도(8월)
 - 순세계잉여금의 감채기금 적립비율 상향 조정*
 - ※ (현행) 20~50% → (개선) 30~60%
 - 채무과다·한도 초과발행 단체에 대한 5개년 채무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및 감축목표 관리제 시행

③ 지방공기업 부채 건전관리(12월)

- 지방공사채 발행승인규모* 축소, 일정규모 이상(1조원) 채무보유공기업의 5개년 중장기 채무관리계획 의무화

※ 주택·토지개발사업 지방공사채 발행 : 순자산의 10배 이내
→ 6배 이내

- 지방공기업별로 “리스크관리 전담팀 구성”, 재무위협상황 모니터링, 경영평가시 부채 관리노력·실적 반영

3. 지방재정지출 관리·감독 강화**① 호화·과대청사 신축 방지(8월)**

- 자치단체 청사 신축 원칙적 금지 및 리모델링 유도
- 타당성 조사 및 투·융자 심사시 리모델링 가능성 심사 의무화

※ 청사 리모델링 비용 전액을 「지방청사정비기금」으로 융자 지원

- 자치단체 청사 표준면적기준 법제화(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표준면적기준 초과시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② 선심성 행사 및 축제 비용 통제(8월)

- 사후 성과평가 강화 및 일몰제 (3년) 엄격 적용
- 지역 축제 투·융자 심사범위 확대 (현행 5억원 이상 → 개선 3억원 이상)

③ 대규모 투자사업 관리 강화(8월)

-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특별 관리
- 투·융자 심사-예산편성-집행 등 사업추진현황 이력 관리
- 투·융자 심사 내실화 및 심사결과 위반시 교부세 감액조치

④ 회계간 예산 전·출입 통제(8월)

- 특별회계 운영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전·출입 금지

※ 단, 자금운영상 필요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4. 통합공시 등 주민통제 활성화 방안**① 낭비성 경비 등에 대한 통합공시 추진(10월)**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8월말)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유사 자치단체 간 상호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통합적 공시
- 지방재정 홈페이지(재정고)에 자치단체를 인구·재정규모·재정력 등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공시
- 자치단체별 채무현황, 업무추진비·행사축제경비·민간단체보조금 등 낭비·선심성 지출현황, 비과세·감면 등 세입관리현황 등 주민 관심사항을 총체적으로 분석·공시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면적 시행('11. 1월)

- 숲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조례 제정 권고
※ 현재 100개 자치단체(41%)가 주민참여예산 조례 제정·운영
-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표준모델 마련
-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③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8월)

- 지역주민의 예산낭비사례 신고절차 간소화 및 검색 기능 보강
※ '09년말 현재, 총 238개 자치단체가 “예산낭비신고 홈페이지” 운영
- 지역주민에 대한 예산절감 성과급 지급* 및 홍보 강화

* 성과급 지급 : 경상비 절감액의 50%, 사업비 절감액 10% (최고 2,600만원)

5. 전국 자치단체 일제점검 및 지방재정 전략회의 운영

- 1 전국 자치단체 일제점검 및 지방재정 전략회의 운영
 - 전국 자치단체 재정상황 일제점검 추진(8월~10월)
 - 「지방재정점검단」을 구성하여 시·도별로 현장점검 추진(지방재정분석실시단과 통합 운영)
 - 민간전문가(교수, 회계사), 중앙·지방 공무원 등 참여
 - 자치단체별 재정상태 건전성(재정수지·채무관리·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 노력(낭비성 지출 절감, 세입 확충)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및 점검 추진
 - 특히, 재정상태 건전성과 재정운용 노력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 재정진단 단체로 선정하여 심층진단 및 재정컨설팅 실시
- 2 지방재정 전략회의 개최(8월)
 - 목적 :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 자치단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차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참석 : 50여명
 - 행안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4개 단체협의회 대표
 - 지방공기업사장, 시·도 발전연구원장, 민간전문가* 등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한국지방재정학회장, 기타 지방재정 분야에 정통한 대학교수·전문가 등
 - 주요내용
 - 국가 및 지방의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 발표 및 토론
 -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방안 발표 및 토론

▷ 분야별 토론 주제(안)

- ① 지방채무 건전성 관리방안
- ②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확충방안
- ③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제고
- ④ 지방공기업 선진화

6. 자주재원 확충 및 세입기반 정비

- 1 지방 자주재원 확충방안
 -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09. 9 발표) 후속조치 시행
 -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에 부가가치세의 5% 규모로 도입된 지방소비세를 2013년부터 10%(5조원 규모)로 확대
- 2 지방 과세기반 정비
 - 기획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관리 강화
 - 고소득자, 기업, 법인 등 대상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
 - 4개 분야, 32개 과제 선정, 연중(10. 3~10월) 중점조사 추진
 - 체납액 징수 강화
 -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
 - 대여금고, 무체재산권(특허권 등) 등에 대한 압류기법 개발·보급
 - 실효성 없는 비과세·감면대상 정비 및 '12년 목적세 감면 종료
 - *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감면 종료시 세수증대 효과 (09년 기준) : 연 1,270억원

| 재정통계 |



-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연 도	서 울		부 산		대 구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3,329	16,924	2,122	10,724	-	-
1972	3,466	17,810	2,502	12,777	-	-
1973	5,126	26,527	3,915	19,985	-	-
1974	7,032	36,216	5,353	26,822	-	-
1975	10,201	49,818	6,517	31,732	-	-
1976	13,391	68,978	8,588	43,930	-	-
1977	21,322	104,739	12,885	63,839	-	-
1978	26,075	126,766	15,748	76,311	-	-
1979	30,948	105,576	22,003	105,819	-	-
1980	35,159	165,745	27,288	128,760	-	-
1981	42,345	192,097	30,386	139,127	26,486	118,040
1982	51,409	229,117	33,855	153,962	30,347	131,917
1983	87,432	380,259	38,147	169,251	35,278	150,476
1984	63,924	270,469	41,261	179,597	37,270	156,939
1985	68,080	282,398	43,742	183,330	39,108	158,934
1986	72,053	290,758	47,212	196,959	44,024	176,580
1987	84,119	333,759	59,038	244,291	56,338	225,596
1988	112,388	434,964	66,720	268,083	65,542	258,359
1989	166,188	624,084	115,990	456,896	114,854	444,628
1990	196,812	742,452	144,206	551,376	146,834	548,462
1991	233,726	775,470	178,495	663,561	182,765	638,147
1992	265,010	859,330	210,910	759,670	212,080	730,500
1993	300,070	970,570	245,730	885,670	253,130	872,650
1994	352,385	1,114,105	277,089	960,953	312,962	979,465
1995	411,559	1,082,107	312,953	1,078,839	329,004	16,847,411
1996	469,692	1,429,472	368,294	1,248,343	373,447	1,219,069
1997	516,190	1,539,910	365,560	1,215,680	360,130	1,163,320
1998	481,421	1,429,269	342,398	1,117,400	331,106	1,059,235
1999	558,029	1,640,621	375,334	1,206,322	358,375	1,136,840
2000	588,507	1,730,227	363,593	1,168,585	368,157	1,167,871
2001	787,079	2,262,618	486,285	1,514,059	444,641	1,376,430
2002	923,912	2,602,324	579,065	1,770,622	511,548	1,562,023
2003	964,507	2,641,659	610,889	1,824,099	579,569	1,734,469
2004	956,078	2,573,014	595,447	1,744,998	555,320	1,643,364
2005	984,695	2,586,327	622,638	1,782,872	606,548	1,759,399
2006	1,112,032	2,920,781	708,926	2,029,950	660,919	1,917,113
2007	1,167,433	2,987,186	714,524	2,002,725	640,254	1,826,094
2008	1,229,084	3,059,788	727,730	1,977,589	652,984	1,818,731

(단위: 원)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680	153,788	-	-	-	-	-	-
37,191	164,999	-	-	-	-	-	-
46,315	200,885	-	-	-	-	-	-
52,434	222,802	-	-	-	-	-	-
55,071	225,389	-	-	-	-	-	-
55,741	226,187	-	-	-	-	-	-
62,994	254,832	33,632	149,108	-	-	-	-
74,360	292,457	53,459	233,046	-	-	-	-
131,464	506,217	93,678	403,668	117,808	508,413	-	-
173,291	647,714	128,317	510,048	156,628	634,388	-	-
208,086	638,177	162,585	597,400	211,936	751,748	-	-
229,770	770,570	195,220	690,230	242,880	845,120	-	-
265,140	890,490	213,350	756,540	309,730	1,078,270	-	-
288,543	881,863	257,915	860,910	344,822	1,129,076	-	-
325,914	1,056,944	286,778	972,513	351,123	1,177,698	-	-
356,696	1,144,657	318,483	1,071,411	363,208	1,199,221	-	-
390,010	1,231,700	359,910	1,193,310	370,570	1,197,430	433,310	1,423,750
348,984	1,091,577	332,661	1,081,597	330,802	1,062,798	392,240	1,279,636
368,365	1,141,525	335,554	1,081,539	381,935	1,219,206	432,114	1,403,350
377,718	1,170,509	289,836	934,181	367,671	1,173,674	407,280	1,322,697
520,468	1,578,253	433,025	1,363,007	498,630	1,553,110	549,435	1,749,592
593,586	1,754,770	482,057	1,498,773	591,777	1,813,349	605,888	1,904,391
603,290	1,739,080	518,391	1,570,728	631,256	1,883,967	671,307	2,069,261
607,126	1,723,025	498,871	1,487,728	604,912	1,774,496	728,494	2,212,122
669,022	1,863,356	551,799	1,604,949	632,295	1,818,968	769,087	2,290,539
748,033	2,083,417	631,751	1,837,496	742,801	2,136,867	867,546	2,583,769
841,039	2,286,553	623,100	1,771,888	697,252	1,973,369	952,047	2,787,634
862,058	2,287,508	633,805	1,757,659	719,115	2,002,953	1,013,177	2,891,876

1. 지방세 1인당, 가구당 부담상황 (계속)

연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971	913	4,841	435	2,347	576	3,349	688	4,045
1972	1,158	6,123	564	3,073	698	4,076	808	4,791
1973	1,801	9,541	917	5,003	1,141	6,638	1,255	7,431
1974	2,576	13,452	1,251	6,893	1,603	9,254	1,808	10,681
1975	3,775	18,661	1,856	9,545	2,547	13,801	2,850	15,698
1976	5,464	27,007	2,541	13,065	3,620	19,616	4,011	22,096
1977	7,931	39,664	3,540	17,863	5,321	28,542	5,779	32,073
1978	11,402	56,137	4,238	21,665	6,108	31,833	6,662	36,288
1979	15,485	74,698	6,479	32,317	9,042	46,455	9,683	52,212
1980	22,417	102,577	8,900	42,544	11,337	56,852	13,199	69,572
1981	23,322	106,571	11,589	55,352	14,134	53,667	15,377	77,761
1982	26,380	120,417	13,814	65,457	16,144	78,581	18,232	92,400
1983	34,431	151,652	15,815	73,734	18,035	85,015	21,464	106,715
1984	37,468	163,605	17,867	82,399	21,641	100,150	24,312	119,081
1985	42,793	176,056	21,903	93,725	25,487	110,267	26,439	121,220
1986	46,298	188,543	23,082	99,304	27,060	116,710	28,913	130,947
1987	53,437	215,112	27,645	118,734	30,149	129,678	32,559	145,923
1988	79,092	311,469	43,944	184,629	48,308	202,545	52,882	231,456
1989	114,214	445,398	77,189	317,577	81,708	338,661	66,089	282,674
1990	162,118	616,572	113,983	439,162	106,449	424,375	83,627	354,420
1991	205,575	680,199	137,577	510,483	143,040	528,310	123,645	467,969
1992	237,500	768,380	165,280	594,790	164,840	588,220	142,700	521,930
1993	311,040	1,002,340	177,890	640,440	196,040	700,140	167,000	611,240
1994	374,068	1,121,911	211,522	763,814	223,337	761,494	203,511	710,534
1995	405,091	1,266,048	262,838	875,699	272,920	915,403	252,034	847,859
1996	436,956	1,351,262	298,392	969,323	311,368	1,024,020	295,335	967,499
1997	449,060	1,367,630	325,550	1,031,030	307,110	986,820	309,330	983,630
1998	405,909	1,237,753	302,360	937,677	279,895	880,578	287,913	896,783
1999	448,712	1,361,679	306,889	934,960	308,079	956,625	309,931	949,162
2000	394,321	1,196,621	304,556	927,852	265,129	823,259	295,591	905,242
2001	681,805	2,039,267	419,287	1,225,525	409,112	1,225,128	424,527	1,245,852
2002	807,556	2,361,456	461,240	1,317,679	449,419	1,319,122	463,128	1,326,206
2003	808,397	2,297,009	499,089	1,379,866	491,673	1,401,745	562,839	1,555,858
2004	820,535	2,290,408	560,096	1,512,574	548,969	1,530,020	724,832	1,922,922
2005	838,417	2,293,239	587,731	1,549,254	557,197	1,513,663	723,112	1,877,083
2006	1,002,193	2,741,240	697,502	1,838,611	699,326	1,902,658	790,268	2,051,412
2007	1,051,281	2,817,869	729,331	1,880,405	720,824	1,917,741	835,351	2,129,589
2008	1,038,203	2,736,311	712,265	1,770,335	725,798	1,877,583	861,747	2,139,906

(단위: 원)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674	3,928	516	3,020	762	4,106	607	3,419	880	3,879
819	4,836	634	3,760	937	5,084	788	4,480	1,183	5,486
1,305	7,696	969	5,740	1,699	9,169	1,261	7,121	1,838	8,513
1,923	11,260	1,380	8,127	2,271	12,163	2,103	11,796	2,459	11,229
2,964	16,372	2,148	11,672	3,091	15,742	2,807	14,646	3,519	15,726
4,078	22,524	3,248	17,649	4,031	20,532	3,881	20,251	4,746	21,208
5,704	31,772	4,640	25,525	5,754	28,894	6,179	31,826	6,297	27,760
6,750	37,008	5,275	28,622	7,710	37,573	8,052	40,852	8,772	38,544
9,570	51,407	8,044	43,205	10,990	52,475	11,398	57,195	12,981	56,928
13,700	71,029	11,236	57,979	13,769	65,340	15,294	72,500	17,815	77,395
16,010	81,042	12,776	63,051	14,262	66,234	19,188	89,265	19,816	86,900
18,258	91,622	14,689	73,118	15,931	73,412	21,419	99,113	17,067	113,550
20,626	101,086	17,707	85,764	19,416	87,507	25,980	117,148	26,246	111,204
22,086	106,212	19,385	92,731	21,816	95,362	28,073	124,362	26,141	109,820
21,495	96,645	20,776	93,325	25,431	104,510	32,596	134,729	29,134	120,682
22,133	98,411	23,154	103,843	27,664	112,750	36,137	148,901	30,323	124,184
25,756	113,538	23,696	106,538	33,406	135,395	46,038	187,858	34,968	142,091
11,578	179,152	36,970	164,294	51,204	203,272	68,331	272,423	52,870	211,869
64,713	273,180	55,288	242,089	80,506	313,017	106,018	415,252	88,613	350,915
89,722	359,155	78,300	318,725	110,612	401,836	137,420	509,894	130,722	512,001
116,465	444,393	102,293	379,383	142,003	510,085	175,281	626,268	180,679	633,662
135,900	497,640	125,480	448,040	165,590	575,010	204,680	715,340	216,600	746,120
156,820	574,570	134,390	479,610	187,530	651,320	225,410	788,350	238,930	822,970
187,463	661,791	154,991	530,458	228,144	787,935	273,927	933,367	278,741	929,479
226,617	777,075	188,153	615,267	261,290	843,103	302,862	1,012,217	372,163	1,080,169
239,711	844,206	231,247	738,073	303,191	958,436	346,145	1,138,006	343,332	1,116,328
258,690	851,970	234,240	728,790	308,950	957,190	325,730	1,047,940	371,130	1,184,350
253,554	815,623	220,847	673,916	286,279	873,121	313,846	995,468	376,302	1,179,705
262,077	828,460	246,500	740,742	313,148	944,538	323,191	1,014,921	399,448	1,239,549
251,261	794,269	220,589	662,879	290,574	876,446	301,727	947,517	417,196	1,294,622
334,352	1,022,366	338,240	974,251	421,060	1,227,865	444,742	1,357,111	604,081	1,802,830
357,369	1,060,253	372,915	1,047,808	433,941	1,240,897	523,675	1,567,667	682,517	1,991,692
379,683	1,104,078	383,168	1,048,729	463,573	1,294,840	546,035	1,595,913	701,345	1,987,894
417,959	1,180,399	425,543	1,139,443	520,931	1,425,086	585,828	1,680,307	730,556	2,028,727
442,828	1,221,214	468,532	1,226,101	588,887	1,573,645	652,181	1,825,144	719,409	1,960,178
485,514	1,338,860	539,163	1,410,934	669,047	1,787,857	733,005	2,051,334	777,921	2,119,601
543,446	1,466,060	580,384	1,487,366	694,603	1,812,634	808,479	2,222,906	800,533	2,145,119
607,103	1,585,595	650,843	1,615,559	716,177	1,809,858	908,177	2,433,281	793,872	2,073,117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연 도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5	총괄	7,880,198	889,368	485,440	396,916	52,347	49,747
	(비율)	100.0	100.0	6.2	44.6	0.7	5.6
	현년도분	2,793,746	385,936	207,167	195,795	32,008	22,466
	(비율)	100.0	100.0	3.7	30.6	0.6	3.5
	과년도분	5,086,452	503,432	278,273	201,121	20,339	27,281
	(비율)	100.0	100.0	2.6	25.6	0.2	3.5
	1994년도	1,657,888	218,751	91,958	104,517	13,068	16,797
	(비율)	100.0	100.0	2.7	31.4	0.4	5.0
	1993년도	1,139,415	114,855	43,173	40,155	1,732	5,189
	(비율)	100.0	100.0	1.9	22.8	0.1	2.9
	1992년도	931,116	75,007	40,889	27,078	2,118	2,852
	(비율)	100.0	100.0	2.2	23.3	0.1	2.5
	1991년도	799,432	44,250	36,199	15,709	2,118	1,588
	(비율)	100.0	100.0	2.3	21.5	0.1	2.2
	1990년도 이전	558,601	50,569	66,054	13,662	1,303	855
	(비율)	100.0	100.0	4.5	15.6	0.1	1.0
	구 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총괄	856,112	38,254	4,320,144	323,909	1,841	169
	(비율)	10.9	4.3	54.8	36.4	-	-
	현년도분	311,817	16,285	1,207,372	144,907	941	84
	(비율)	5.6	2.5	21.5	22.7	-	-
과년도분	544,295	21,969	3,112,772	179,002	900	85	
(비율)	5.1	2.8	29.3	22.8	-	-	
1994년도	185,889	9,075	967,952	65,195	194	37	
(비율)	5.4	2.7	27.9	19.6	-	-	
1993년도	108,957	5,172	615,126	38,232	80	10	
(비율)	4.8	2.9	27.2	21.7	-	-	
1992년도	83,113	3,373	492,839	26,682	113	7	
(비율)	4.5	2.9	26.6	23.0	-	-	
1991년도	64,951	1,784	446,145	20,657	215	19	
(비율)	4.1	2.4	28.1	28.3	-	-	
1990년도 이전	101,385	2,565	590,710	28,236	298	12	
(비율)	6.9	2.9	40.2	32.2	-	-	

(단위: 건, 백만원, %)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117,272	53,158	684,771	17,890	12,529	746	3,527,839	370,911		
39.6	6.0	8.7	2.0	0.2	0.1	44.8	41.7		
1,068,703	19,602	280,849	7,855	7,940	102	1,197,079	140,116		
19.1	3.1	5.0	1.2	0.1	-	21.3	21.9		
2,048,569	33,556	403,922	10,035	4,589	644	2,330,760	230,795		
19.3	4.3	3.8	1.3	-	0.1	21.9	29.4		
657,000	11,759	163,602	4,362	4,580	643	727,680	80,673		
19.0	3.5	4.7	1.3	0.1	0.2	21	24.2		
520,373	8,973	85,340	2,175	9	1	488,788	58,362		
23.0	5.1	3.8	1.2	-	-	21.6	33.1		
390,208	6,430	57,366	1,235	-	-	440,535	37,412		
21.1	5.5	3.1	1.1	-	-	23.8	32.2		
318,888	4,714	37,901	542	-	-	404,326	21,697		
20.1	6.5	2.4	0.7	-	-	25.5	29.7		
162,100	1,680	59,713	1,721	-	-	269,431	32,651		
11.0	1.9	4.1	2.0	-	-	18.4	37.3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6	45	1,736,752	115,240	1,416,899	50,467	26,296	7,540	1	-
-	-	22.0	13.0	18.0	5.7	0.3	0.8	-	-
6	45	704,671	64,373	577,881	24,065	11,647	3,161	1	-
-	-	12.6	10.1	10.3	3.8	0.2	0.5	-	-
-	-	1,032,081	50,867	839,018	26,402	14,649	4,379	-	-
-	-	9.7	6.5	7.9	3.4	0.1	0.6	-	-
-	-	371,730	26,334	274,655	12,286	4,870	1,595	-	-
-	-	10.7	7.9	7.9	3.7	0.1	0.5	-	-
-	-	224,565	11,414	169,243	5,620	2,666	950	-	-
-	-	9.9	6.5	7.5	3.2	0.1	0.5	-	-
-	-	190,535	6,598	153,420	3,744	2,244	612	-	-
-	-	10.3	5.7	8.3	3.2	0.1	0.5	-	-
-	-	150,272	3,697	122,724	2,165	1,606	393	-	-
-	-	9.5	5.1	7.7	3.0	0.1	0.5	-	-
-	-	94,979	2,824	118,976	2,587	3,263	829	-	-
-	-	6.5	3.2	8.1	3.0	0.2	0.9	-	-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 도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6	총괄	16,098,092	1,642,239	432,288	440,796	54,817	53,347
	(비율)	100.0	100.0	2.7	26.8	3.0	3.2
	현년도분	5,645,954	664,428	153,769	189,106	25,429	23,209
	(비율)	100.0	100.0	2.7	28.5	0.5	3.5
	과년도분	10,452,138	977,811	278,519	251,690	29,388	30,138
	(비율)	100.0	100.0	2.7	25.7	0.3	3.1
	1995년도	3,355,190	400,859	91,434	113,116	16,125	12,130
	(비율)	100.0	100.0	2.7	28.2	0.5	3.0
	1994년도	2,494,166	245,000	55,099	68,672	7,688	9,276
	(비율)	100.0	100.0	2.2	28.0	0.3	3.8
	1993년도	1,791,365	137,943	31,819	27,513	1,433	3,782
	(비율)	100.0	100.0	1.8	19.9	0.1	2.7
	1992년도	1,503,225	94,733	34,743	20,748	2,107	3,104
	(비율)	100.0	100.0	2.3	21.9	0.1	3.3
	1991년도 이전	1,308,192	99,276	65,424	21,641	2,035	1,846
	(비율)	100.0	100.0	5.0	21.8	0.2	1.9
	구 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총괄	856,112	38,254	4,171,321	399,201	1,011	1,392
	(비율)	10.9	4.3	25.9	24.3	0.0	0.1
현년도분	311,817	16,285	1,363,093	169,513	459	1,306	
(비율)	5.6	2.5	24.1	25.5	0.0	0.2	
과년도분	544,295	21,969	2,808,228	229,688	552	88	
(비율)	5.1	2.8	26.9	23.5	0.0	0.0	
1995년도	185,889	9,075	650,781	89,379	93	37	
(비율)	5.4	2.7	19.4	22.3	0.0	0.0	
1994년도	108,957	5,172	686,405	50,751	100	22	
(비율)	4.8	2.9	27.5	20.7	0.0	0.0	
1993년도	83,113	3,373	493,402	32,560	37	3	
(비율)	4.5	2.9	27.5	23.6	0.0	0.0	
1992년도	64,951	1,784	407,739	23,423	92	9	
(비율)	4.1	2.4	27.1	24.7	0.0	0.0	
1991년도 이전	101,385	2,565	569,901	33,575	230	17	
(비율)	6.9	2.9	43.6	33.8	0.0	0.0	

재 정 통 계

(단위: 건, 백만원, %)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281,028	56,699	697,033	22,081	10,836	600	3,364,218	445,000
20.4	3.5	4.3	1.3	0.1	0.0	20.9	27.1
1,097,883	20,777	270,906	7,746	2,588	207	1,239,331	160,929
19.4	3.1	4.8	1.2	0.0	0.0	22.0	24.2
2,183,145	35,922	426,127	14,335	8,248	393	2,124,887	284,071
20.9	3.7	4.1	1.5	0.1	0.0	20.3	29.1
763,306	13,358	153,571	5,573	4,257	129	798,706	110,434
22.8	3.3	4.6	1.4	0.1	0.0	23.8	27.5
488,541	8,106	112,710	3,654	1,988	94	515,204	68,829
19.6	3.3	4.5	1.5	0.1	0.0	20.7	28.1
419,643	6,954	63,419	1,798	1,002	81	355,269	46,768
23.4	5.0	3.5	1.3	0.1	0.0	19.8	33.9
335,711	5,269	50,627	1,087	801	67	304,232	30,062
22.3	5.6	3.4	1.1	0.1	0.0	20.2	31.7
175,944	2,235	45,800	2,223	200	22	151,476	27,978
13.4	2.3	3.5	2.2	0.0	0.0	11.6	28.2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24	759	1,765,707	117,451	1,432,966	53,040	42,321	8,857
0.0	0.0	11.0	702.0	8.9	3.2	0.3	0.5
20	758	610,566	49,813	558,160	20,642	17,139	3,303
0.0	0.1	10.8	7.5	9.9	3.1	0.3	0.5
4	1	1,155,141	67,638	874,806	32,394	25,182	5,554
0.0	0.0	11.1	6.9	8.4	3.3	0.2	0.6
0	0	388,058	31,378	300,930	12,804	7,931	2,187
0.0	0.0	11.6	7.8	9.0	3.2	0.2	0.5
4	1	277,713	18,096	205,967	9,434	5,625	1,341
0.0	0.0	11.1	7.4	8.3	3.9	0.2	0.5
0	0	192,887	9,194	143,662	4,346	4,863	779
0.0	0.0	10.8	6.7	8.0	3.2	0.3	0.6
0	0	172,127	4,822	119,852	3,082	4,863	546
0.0	0.0	11.5	5.1	8.0	3.3	0.3	0.6
0	0	124,356	4,148	104,395	2,728	1,877	702
0.0	0.0	9.5	4.2	8.0	2.7	0.1	0.7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 도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7	총괄	16,007,563	2,119,872	417,689.0	582,412	62,385	76,903
	(비율)	100.0	100.0	2.6	27.5	0.4	3.6
	현년도분	5,490,437	890,763	162,328	267,849	28,684	38,909
	(비율)	100.0	100.0	1.0	12.6	0.2	1.8
	과년도분	10,517,126	1,229,109	255,361	314,563	33,701	37,994
	(비율)	100.0	100.0	1.6	14.8	0.2	1.8
	1996년도	3,210,245	440,797	71,361	120,918	12,822	15,839
	(비율)	100.0	100.0	0.4	5.7	0.1	0.7
	1995년도	2,423,106	317,956	61,595	84,156	10,496	8,329
	(비율)	100.0	100.0	0.4	4.0	0.1	0.4
	1994년도	1,903,876	205,631	38,495	54,380	5,591	7,317
	(비율)	100.0	100.0	0.2	2.6	0.0	0.3
	1993년도	1,497,061	125,210	27,071	24,424	1,498	3,302
	(비율)	100.0	100.0	0.2	1.2	0.0	0.2
	1992년도 이전	1,482,838	139,515	56,839	30,685	3,294	3,207
	(비율)	100.0	100.0	0.4	1.4	0.0	0.2
	구 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총괄	879,200	53,121	4,458,526	509,376	1,084	1,586
	(비율)	5.5	2.5	27.9	24.0	0.0	0.1
	현년도분	327,061	20,786	1,635,695	226,204	410	59
(비율)	2.0	1.0	10.2	10.7	0.0	0.0	
과년도분	552,139	32,335	2,822,831	283,172	674	1,527	
(비율)	3.4	1.5	18.0	13.4	0.0	0.1	
1996년도	184,101	10,934	690,098	101,284	112	1,441	
(비율)	1.2	0.5	4.3	4.8	0.0	0.1	
1995년도	131,841	8,579	486,748	71,449	46	14	
(비율)	0.8	0.4	3.0	3.4	0.0	0.0	
1994년도	100,392	5,895	544,184	43,913	65	57	
(비율)	0.6	0.3	3.4	2.1	0.0	0.0	
1993년도	68,884	3,629	459,998	29,396	35	1	
(비율)	0.4	0.2	2.9	1.4	0.0	0.0	
1992년도 이전	66,921	3,298	641,803	37,130	416	14	
(비율)	0.4	0.2	4.0	1.8	0.0	0.0	

(단위: 건, 백만원, %)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164,105	56,845	757,340	27,871	12,269	789	3,167,363	577,078
19.8	2.7	4.7	1.3	0.1	0.0	19.8	27.2
784,744	14,637	282,703	9,994	5,921	161	1,091,294	214,794
4.9	0.7	1.8	0.5	0.0	0.0	6.8	10.1
2,379,361	42,208	474,637	17,877	6,348	628	2,076,069	362,284
14.9	2.0	3.0	0.8	0.0	0.0	13.0	17.1
780,001	14,394	159,939	5,763	2,738	249	685,619	128,795
4.9	0.7	1.0	0.3	0.0	0.0	4.3	6.1
595,605	10,769	120,584	4,841	1,606	57	537,885	94,294
3.7	0.5	0.8	0.2	0.0	0.0	3.4	4.4
418,290	7,348	91,183	3,688	1,013	264	356,156	58,459
2.6	0.3	0.6	0.2	0.0	0.0	2.2	2.8
345,486	5,925	53,877	1,746	988	58	283,630	45,458
2.2	0.3	0.3	0.1	0.0	0.0	1.8	2.1
239,979	3,772	49,054	1,839	3	-	212,779	35,278
1.5	0.2	0.3	0.1	0.0	-	1.3	1.7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9	1,629	1,666,804	152,014	1,395,542	69,264	25,217	10,984
0.0	0.1	10.4	7.2	8.7	3.3	0.2	0.5
22	974	617,930	66,932	544,105	25,112	9,540	4,352
0.0	0.0	3.9	3.2	3.4	1.2	0.1	0.2
17	655	1,048,874	85,082	851,437	44,152	15,677	6,632
0.0	0.0	6.6	4.0	5.3	2.1	0.1	0.3
16	619	333,903	25,949	284,586	12,484	4,949	2,128
0.0	0.0	2.1	1.2	1.8	0.6	0.0	0.1
1	36	260,939	23,488	211,796	10,307	3,964	1,637
0.0	0.0	1.6	1.1	1.3	0.5	0.0	0.1
-	-	196,813	15,390	148,926	7,687	2,768	1,233
-	-	1.2	0.7	0.9	0.4	0.0	0.1
-	-	142,466	6,861	111,492	3,755	1,636	622
-	-	0.9	0.3	0.7	0.2	0.0	0.0
-	-	114,753	13,394	94,637	9,919	2,360	979
-	-	0.7	0.6	0.6	0.5	0.0	0.0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 도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8	총괄	18,157,114	2,945,430	421,974	786,055	66,965	92,701
	(비율)	100.0	100.0	2.3	26.7	0.4	3.1
	현년도분	6,906,374	1,191,970	140,662	285,127	22,503	25,144
	(비율)	100.0	100.0	0.8	9.7	0.1	0.9
	과년도분	11,250,740	1,753,460	281,312	500,928	44,462	67,557
	(비율)	100.0	100.0	1.5	17.0	0.2	2.3
	1997년도	3,450,094	686,573	89,499	216,564	17,382	33,998
	(비율)	100.0	100.0	0.5	7.4	0.1	1.2
	1996년도	2,484,727	419,053	52,926	109,659	9,586	13,211
	(비율)	100.0	100.0	0.3	3.7	0.1	0.4
	1995년도	1,945,443	298,267	45,608	82,504	9,121	8,397
	(비율)	100.0	100.0	0.3	2.8	0.1	0.3
	1994년도	1,634,581	198,389	33,976	51,840	4,813	6,163
	(비율)	100.0	100.0	0.2	1.8	0.0	0.2
	1993년도 이전	1,735,895	151,178	59,302	40,361	3,560	5,788
	(비율)	100.0	100.0	0.3	1.4	0.0	0.2
	구 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총괄	1,097,570	86,489	5,090,149	686,111	836	347
	(비율)	6.0	2.9	28.0	23.3	0.0	0.0
	현년도분	469,868	43,762	1,824,632	283,754	353	266
(비율)	2.6	1.5	10.0	9.6	0.0	0.0	
과년도분	627,702	42,726	3,265,517	402,357	483	81	
(비율)	3.5	1.5	18.0	13.7	0.0	0.0	
1997년도	201,588	16,033	978,091	161,256	107	28	
(비율)	1.1	0.5	5.4	5.5	0.0	0.0	
1996년도	141,083	10,281	566,615	86,670	74	21	
(비율)	0.8	0.3	3.1	2.9	0.0	0.0	
1995년도	107,800	7,707	428,490	65,674	36	2	
(비율)	0.6	0.3	2.4	2.2	0.0	0.0	
1994년도	88,166	4,580	517,403	37,964	70	23	
(비율)	0.5	0.2	2.8	1.3	0.0	0.0	
1993년도 이전	89,065	4,125	774,918	50,792	196	7	
(비율)	0.5	0.1	4.3	1.7	0.0	0.0	

(단위: 건, 백만원, %)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297,276	59,465	896,993	47,274	16,497	367	3,647,664	863,358
18.2	2.0	4.9	1.6	0.1	0.0	20.1	29.3
1,007,486	18,096	404,879	23,691	10,984	198	1,476,102	359,056
5.5	0.6	2.2	0.8	0.1	0.0	8.1	12.2
2,289,790	41,369	492,114	23,583	5,513	169	2,171,562	504,302
12.6	1.4	2.7	0.8	0.0	0.0	12.0	17.1
579,723	11,011	158,987	8,590	3,158	96	740,139	169,370
3.2	0.4	0.9	0.3	0.0	0.0	4.1	5.8
623,363	10,994	118,267	5,521	1,331	36	502,631	142,143
3.4	0.4	0.7	0.2	0.0	0.0	2.8	4.8
467,795	7,905	89,085	3,865	565	17	416,148	93,449
2.6	0.3	0.5	0.1	0.0	0.0	2.3	3.2
336,921	5,472	67,053	3,303	247	18	280,429	68,094
1.9	0.2	0.4	0.1	0.0	0.0	1.5	2.3
281,988	5,987	58,722	2,304	212	2	232,215	31,246
1.6	0.2	0.3	0.1	0.0	0.0	1.3	1.1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8	1,853	1,898,310	211,695	1,692,539	94,859	30,303	14,856
0.0	0.1	10.5	7.2	9.3	3.2	0.2	0.5
13	775	779,522	100,379	757,472	45,816	11,898	5,905
0.0	0.0	4.3	3.4	4.2	1.6	0.1	0.2
25	1,078	1,118,788	111,316	935,067	49,043	18,405	8,951
0.0	0.0	6.2	3.8	5.1	1.7	0.1	0.3
12	523	366,219	47,173	309,470	18,819	5,719	3,111
0.0	0.0	2.0	1.6	1.7	0.6	0.0	0.1
13	555	253,715	27,212	210,938	10,994	4,184	1,756
0.0	0.0	1.4	0.9	1.2	0.4	0.0	0.1
-	-	209,511	18,827	167,743	8,185	3,541	1,735
		1.2	0.6	0.9	0.3	0.0	0.1
-	-	171,620	12,180	131,035	7,107	2,848	1,645
		0.9	0.4	0.7	0.2	0.0	0.1
-	-	117,723	5,924	115,881	3,938	2,113	704
		0.6	0.2	0.6	0.1	0.0	0.0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 도	구 분	합 계		취득세		등록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99	총괄	19,283,689	3,262,868	408,947	760,317	59,213	96,085
	(비율)	100.0	100.0	2.1	23.3	0.3	2.9
	현년도분	6,767,874	973,318	123,111	179,921	9,690	19,771
	(비율)	100.0	100.0	0.6	5.5	0.1	0.6
	과년도분	12,515,815	2,289,550	285,836	580,396	49,523	76,314
	(비율)	100.0	100.0	1.5	17.8	0.3	2.3
	1998년도	4,243,264	839,966	80,983	191,006	16,250	20,458
	(비율)	100.0	100.0	22.0	5.9	0.4	0.6
	1997년도	2,565,193	570,171	61,929	170,678	11,924	30,187
	(비율)	100.0	100.0	0.4	5.2	0.1	0.9
	1996년도	1,949,583	338,545	41,334	84,700	8,138	10,437
	(비율)	100.0	100.0	0.2	2.6	0.0	0.3
	1995년도	1,589,562	262,814	39,788	69,264	8,681	6,879
	(비율)	100.0	100.0	0.2	2.1	0.0	0.2
	1994년도 이전	2,168,213	278,054	61,802	64,749	4,530	8,535
	(비율)	100.0	100.0	0.3	2.0	0.0	0.3
	구 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총괄	1,196,456	103,592	5,521,210	775,883	1,530	470
	(비율)	6.2	3.2	28.6	23.8	0.0	0.0
	현년도분	453,681	40,588	1,886,449	246,058	1,061	195
	(비율)	2.4	1.2	9.8	7.5	0.0	0.0
과년도분	742,775	63,004	3,634,761	529,825	469	275	
(비율)	3.9	1.9	18.8	16.2	0.0	0.0	
1998년도	305,979	28,488	1,078,786	179,748	101	209	
(비율)	1.6	0.9	5.6	5.5	0.0	0.0	
1997년도	151,387	10	720,300	123,381	61	28	
(비율)	0.8	0.0	3.7	3.8	0.0	0.0	
1996년도	114,236	8,406	464,470	84,579	40	9	
(비율)	0.6	0.3	2.4	2.6	0.0	0.0	
1995년도	89,987	7,109	384,351	66,238	184	2	
(비율)	0.5	0.2	2.0	2.0	0.0	0.0	
1994년도 이전	81,186	6,850	986,854	75,879	83	27	
(비율)	0.4	0.0	5.1	0.4	0.0	0.0	

(단위: 건, 백만원, %)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301,510	64,872	1,059,324	57,585	15,665	968	3,967,255	1,031,627
17.1	2.0	5.5	1.8	0.1	0.0	20.6	31.6
935,113	19,181	400,896	21,873	5,031	250	1,490,285	310,483
4.8	0.6	2.1	0.7	0.0	0.0	7.7	9.5
2,366,397	45,691	658,428	35,801	10,634	717	2,476,970	721,144
12.3	1.4	3.4	1.1	0.1	0.0	12.8	22.1
655,859	13,661	187,245	16,112	3,602	149	951,305	293,814
0.1	0.4	3.4	0.5	1.0	0.0	0.0	9.0
478,163	9,704	118,739	6,735	3,241	308	540,562	166,970
3.4	0.3	1.0	0.2	0.0	0.0	4.9	5.1
447,149	9,217	99,744	4,608	1,870	177	409,250	104,606
2.3	0.3	0.5	0.1	0.0	0.0	2.1	3.2
343,950	6,818	76,640	3,894	801	46	325,250	73,394
1.8	0.2	0.4	0.1	0.0	0.0	1.7	2.2
441,276	6,290	76,060	4,452	1,120	37	251,603	82,360
2.3	0.2	0.4	0.1	0.0	0.0	1.3	2.5
도축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3,600	1,860	1,866,795	241,220	1,851,986	112,380	30,198	16,011
0.0	0.1	9.7	7.4	9.6	3.4	0.2	0.5
5	94	681,585	87,830	771,002	42,846	9,965	4,319
0.0	0.0	3.5	2.7	4.0	1.3	0.1	0.1
3,595	1,766	1,185,210	153,390	1,080,984	69,534	20,233	11,692
0.0	0.1	6.1	4.7	5.6	2.1	0.1	0.4
3,581	1,022	426,758	61,009	425,288	29,887	7,527	4,403
0.0	0.0	2.2	1.9	2.2	0.9	0.0	0.1
9	385	252,999	33,088	221,398	13,860	4,481	2,696
0.0	0.0	1.3	1.0	1.1	0.4	0.0	0.1
5	359	193,318	20,208	166,739	9,391	3,290	1,846
0.0	0.0	1.0	0.6	0.9	0.3	0.0	0.1
-	-	179,214	19,601	138,986	8,068	2,730	1,501
		0.9	0.6	0.7	0.2	0.0	0.0
-	-	132,921	19,484	128,573	8,327	2,205	1,247
		0.7	0.1	0.7	0.0	0.0	0.0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0	총괄	20,151,624	3,404,782,259	406,712	791,981,115	44,107	86,253,862	3,279,747	64,998,664
	(비율)	100.0	100.0	2.0	23.3	0.2	2.5	16.3	1.9
	현년도분	6,854,997	953,660,549	134,691	226,920,651	5,702	13,492,400	922,295	17,418,272
	(비율)	100.0	100.0	2.0	23.8	0.1	1.4	13.5	1.8
	과년도분	13,296,527	2,451,121,610	272,019	565,060,440	38,405	72,761,460	2,357,439	47,580,390
	(비율)	100.0	100.0	2.0	23.1	0.3	3.0	17.7	1.9
	1999년도	4,152,750	653,232,420	60,756	115,391,223	4,312	12,712,727	685,621	13,856,165
	(비율)	100.0	100.0	1.5	17.7	0.1	1.9	16.5	2.1
	1998년도	3,166,279	657,492,522	55,310	136,084,686	9,576	14,560,697	525,192	10,800,273
	(비율)	100.0	100.0	1.7	20.7	0.3	2.2	16.6	1.6
	1997년도	2,088,153	480,728,097	48,884	149,083,257	9,220	25,525,031	403,556	7,679,453
	(비율)	100.0	100.0	2.3	31.0	0.4	5.3	19.3	1.6
	1996년도	1,702,177	295,283,056	36,485	73,552,073	6,618	8,467,247	415,457	8,137,786
	(비율)	100.0	100.0	2.1	24.9	0.4	2.9	24.4	2.8
	1995년도 이전	2,186,768	364,385,115	70,576	90,949,107	8,678	11,495,746	327,536	7,106,705
	(비율)	100.0	100.0	3.2	25.0	0.4	3.2	15.0	2.0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1,280,742	112,852,880	5,829,716	853,561,737	1,754	235,604	8,341	1,514,583
	(비율)	6.4	3.3	28.9	25.1	0.0	0.0	0.0	0.0
	현년도분	431,723	36,661,785	1,911,336	249,867,763	480	169,478	3,166	757,355
	(비율)	6.3	3.8	27.9	26.2	0.0	0.0	0.0	0.1
	과년도분	849,013	76,191,091	3,918,352	603,693,948	1,274	66,126	5,175	757,228
	(비율)	6.4	3.1	29.5	24.6	0.0	0.0	0.0	0.0
	1999년도	301,428	27,556,710	1,044,832	156,560,871	781	23,650	2,155	136,136
	(비율)	7.3	4.2	25.2	24.0	0.0	0.0	0.1	0.0
	1998년도	225,186	21,818,636	812,967	148,164,628	75	12,741	1,375	345,698
	(비율)	7.1	3.3	25.7	22.5	0.0	0.0	0.0	0.1
	1997년도	122,266	10,059,972	589,554	111,622,544	102	8,411	805	227,537
	(비율)	5.9	2.1	28.2	23.2	0.0	0.0	0.0	0.0
	1996년도	96,731	6,964,638	409,950	80,254,011	63	4,068	570	38,408
	(비율)	5.7	2.4	24.1	27.2	0.0	0.0		
	1995년도 이전	103,376	9,791,123	1,060,946	107,091,797	253	17,256	270	9,449
	(비율)	4.7	2.7	48.5	29.4	0.0	0.0	0.0	0.0

(단위: 건, 천원, %)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0,997	914,494	1,081,776	63,211,410	4,323,645	1,041,685,382		
		0.1	0.0	5.4	1.9	21.5	30.6		
-	-	9,552	508,097	354,084	18,948,022	1,705,609	264,415,043		
		0.1	0.1	5.2	2.0	24.9	27.7		
0	0	11,444	406,397	727,687	44,263,386	2,618,011	777,270,311		
		0.1	0.0	5.5	1.8	19.7	31.7		
		3,410	120,482	272,099	15,518,722	928,447	225,800,879		
		0.1	0.0	6.6	2.4	22.4	34.6		
		3,246	106,625	186,144	12,524,707	712,495	244,680,868		
		0.1	0.0	5.9	1.9	22.5	37.2		
		2,544	83,113	95,191	5,577,996	422,700	128,258,069		
		0.1	0.0	4.6	1.2				
		1,599	76,334	81,015	3,977,850	332,067	86,233,943		
		0.1	0.0	4.8	1.3				
		645	19,843	93,216	6,664,104	222,257	92,296,480		
		0.0	0.0	4.3	1.8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1,853,866	250,417,355	0	0	1,988,203	119,214,502	31,976	16,940,616
		9.2	7.4			9.9	3.5	0.2	0.5
-	-	661,717	82,260,585	0	0	704,585	36,831,813	10,057	4,409,285
		9.7	8.6			10.3	3.9	0.1	0.5
0	0	1,192,140	168,156,762	0	0	1,283,608	82,382,685	21,919	12,531,330
		9.0	6.9			9.7	3.4	0.2	0.5
-	-	374,295	54,470,197	-	-	468,083	27,973,394	6,531	3,111,264
		9.0	8.3			11.3	4.3	0.2	0.5
-	-	298,303	42,600,050	-	-	330,675	22,343,033	5,735	3,449,880
		9.4	6.5			10.4	3.4	0.2	0.5
-	-	205,498	28,821,584	-	-	184,201	11,390,673	3,632	2,390,457
		9.8	6.0			8.8	2.4	0.2	0.5
-	-	161,858	17,403,787	-	-	156,943	8,463,179	2,821	1,709,732
		9.5	5.9			9.2	2.9	0.2	0.6
-	-	152,148	24,861,117	-	-	143,666	12,212,393	3,199	1,869,995
		7.0	6.8			6.6	3.4	0.1	0.5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1	총괄	24,230,918	3,341,988,308	411,138	681,127,212	39,343	76,977,477	2,528,487	50,071,807
	(비율)	100.0	100.0	1.7	20.4	0.2	2.3	10.4	1.5
	현년도분	10,509,931	897,392,719	153,402	159,325,143	6,647	11,950,220	250,242	4,254,796
	(비율)	100.0	100.0	1.5	17.8	0.1	1.3	2.4	0.5
	과년도분	13,720,887	2,444,595,489	257,735	521,802,052	32,696	65,027,255	2,278,243	45,817,011
	(비율)	100.0	100.0	1.9	21.3	0.2	2.7	16.6	1.9
	2000년도	4,163,946	587,941,443	64,679	119,767,257	3,675	5,988,760	640,912	12,838,450
	(비율)	100.0	100.0	1.6	20.4	0.1	1.0	15.4	2.2
	1999년도	3,077,978	486,975,853	40,162	71,558,456	3,270	11,019,302	535,870	11,010,287
	(비율)	100.0	100.0	1.3	14.7	0.1	2.3	17.4	2.3
	1998년도	2,498,925	541,074,517	42,582	106,078,948	7,879	9,895,088	440,774	8,949,198
	(비율)	100.0	100.0	1.7	19.6	0.3	1.8	17.6	1.7
	1999년도	1,728,733	384,453,564	40,660	114,742,972	7,821	23,917,391	313,149	6,072,205
	(비율)	100.0	100.0	2.4	29.8	0.5	6.2	18.1	1.6
	1997년도 이전	2,250,905	444,149,712	69,645	109,654,334	10,050	14,206,703	347,469	6,946,863
	(비율)	100.0	100.0	3.1	24.7	0.4	3.2	15.4	1.6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1,305,490	108,316,131	5,880,477	824,904,649	812	198,463	59	1,727,976
		(비율)	5.4	3.2	24.3	24.7	0.0	0.0	0.0
현년도분	426,608	30,207,773	1,915,411	202,736,893	245	89,278	13	209,227	
	(비율)	4.1	3.4	18.2	22.6	0.0	0.0	0.0	0.0
과년도분	878,878	78,108,355	3,965,047	622,167,733	567	109,185	46	1,518,749	
	(비율)	6.4	3.2	28.9	25.5	0.0	0.0	0.0	0.1
2000년도	256,180	21,759,086	1,040,649	153,025,864	110	68,702	27	704,338	
	(비율)	6.2	3.7	25.0	26.0	0.0	0.0	0.0	0.1
1999년도	220,848	19,350,927	773,370	125,857,239	77	9,107	3	70,391	
	(비율)	7.2	4.0	25.1	25.8	0.0	0.0	0.0	0.0
1998년도	173,227	16,722,086	647,401	125,985,026	76	12,200	7	586,259	
	(비율)	6.9	3.1	25.9	23.3	0.0	0.0	0.0	0.1
1999년도	105,723	8,340,516	489,455	91,858,324	41	3,447	4	137,838	
	(비율)	6.1	2.2	28.3	23.9	0.0	0.0	0.0	0.0
1997년도 이전	122,874	11,935,727	1,014,068	125,441,181	263	15,729	5	19,923	
	(비율)	5.5	2.7	45.1	28.2	0.0	0.0	0.0	0.0

재 정 통 계

(단위: 건, 천원, %)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2,680	1,019,787	1,092,708	61,029,521	4,143,873	78,708,329	4,895,040	1,107,561,281
		0.1	0.0	4.5	1.8	17.1	2.4	20.2	33.1
-	-	8,701	338,489	346,954	14,689,917	4,143,834	78,708,320	1,854,089	302,649,096
		0.1	0.0	3.3	1.6	39.4	8.8	17.6	33.7
0	0	13,978	681,298	745,751	46,339,603	0	0	3,040,934	804,912,151
		0.1	0.0	5.4	1.9	0.0	0.0	22.2	32.9
		4,890	300,303	214,643	12,224,373	0	0	1,172,802	193,437,425
		0.1	0.1	5.2	2.1	0.0	0.0	28.2	32.9
		2,637	93,826	188,259	12,110,107	0	0	708,135	175,672,608
		0.1	0.0	6.1	2.5	0.0	0.0	23.0	36.1
		3,596	100,620	145,457	9,638,069	-	-	547,283	210,984,391
		0.1	0.0	5.8	1.8			21.9	39.0
		1,975	106,214	82,473	4,708,894			355,559	101,520,309
		0.1	0.0	4.8	1.2			20.6	26.4
		880	80,335	114,897	7,658,152			257,061	123,297,284
		0.0	0.0	5.1	1.7			11.4	27.8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1,885,758	220,915,103	0	0	1,993,784	112,885,932	31,269	16,544,640
		7.8	6.6			8.2	3.4	0.1	0.5
-	-	684,007	58,753,758	0	0	710,623	29,871,853	9,155	3,607,956
		6.5	6.5			6.8	3.3	0.1	0.4
0	0	1,201,744	162,161,338	0	0	1,283,154	83,014,076	22,114	12,936,683
		8.8	6.6			9.4	3.4	0.2	0.5
-	-	364,524	42,885,436	0	-	394,644	22,099,189	6,211	2,842,260
		8.8	7.3			9.5	3.8	0.1	0.5
-	-	280,811	37,468,216	-	-	319,837	20,203,059	4,699	2,552,328
		9.1	7.7			10.4	4.1	0.2	0.5
-	-	237,208	31,444,935	-	-	248,686	17,668,668	4,749	3,009,029
		9.5	5.8			10	3.3	0.2	0.6
-	-	172,076	21,686,196	-	-	156,549	9,299,817	3,248	2,059,441
		10.0	5.6			9.1	2.4	0.2	0.5
-	-	147,088	28,676,529	-	-	163,399	13,743,329	3,206	2,473,623
		6.5	6.5			7.3	3.1	0.1	0.6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2	총괄	27,378,102	3,261,203,683	432,445	650,364,561	36,350	77,879,908	2,001,211	38,354,965
	(비율)	100.0	100.0	1.6	19.9	0.1	2.4	7.3	1.2
	현년도분	11,531,033	915,894,104	172,003	194,985,909	8,457	15,312,388	241,604	4,085,780
	(비율)	100.0	100.0	1.5	21.3	0.1	1.7	2.1	0.4
	과년도분	15,846,969	2,345,309,479	260,441	455,378,631	27,893	62,567,518	1,759,605	34,269,185
	(비율)	100.0	100.0	1.6	19.4	0.2	2.7	11.1	1.5
	2001년도	6,069,019	522,715,647	78,275	74,504,916	3,746	7,546,482	176,294	3,128,308
	(비율)	100.0	100.0	1.3	14.3	0.1	1.4	2.9	0.6
	2000년도	2,964,686	424,079,976	43,522	71,689,074	2,361	4,048,373	467,608	9,479,436
	(비율)	100.0	100.0	1.5	16.9	0.1	1.0	15.8	2.2
	1999년도	2,416,731	386,763,155	31,152	54,490,176	2,449	9,891,017	419,110	8,184,607
	(비율)	100.0	100.0	1.3	14.1	0.1	2.6	17.3	2.1
	1998년도	1,996,770	397,682,859	34,073	77,140,096	6,613	8,607,435	322,287	6,409,898
	(비율)	100.0	100.0	1.7	19.4	0.3	2.2	16.1	1.6
	1997년도 이전	2,399,363	614,067,442	73,413	177,554,304	12,723	32,474,204	374,254	7,066,929
	(비율)	100.0	100.0	3.1	28.9	0.5	5.3	15.6	1.2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1,387,610	105,454,697	6,125,298	781,432,177	989	262,289	75	2,493,347
	(비율)	5.1	3.2	22.4	24.0	0.0	0.0	0.0	0.1
	현년도분	458,509	29,885,670	2,243,883	204,931,036	426	66,548	41	1,013,758
	(비율)	4.0	3.3	19.5	22.4	0.0	0.0	0.0	0.1
	과년도분	929,097	75,569,024	3,881,396	576,501,118	563	195,741	34	1,479,589
	(비율)	5.9	3.2	24.5	24.6	0.0	0.0	0.0	0.1
	2001년도	264,737	17,449,419	1,058,320	113,202,689	120	130,072	1	69,501
	(비율)	4.4	3.3	17.4	21.7	0.0	0.0	0.0	0.0
	2000년도	193,175	15,122,087	750,241	116,395,233	82	34,019	19	602,626
	(비율)	6.5	3.6	25.3	27.4	0.0	0.0	0.0	0.1
	1999년도	182,330	14,874,842	591,161	100,413,113	49	5,507	0	0
	(비율)	7.5	3.8	24.5	26.0	0.0	0.0	0.0	0.0
	1998년도	145,119	13,842,916	490,154	100,486,452	70	14,411	5	600,920
	(비율)	7.3	3.5	24.5	25.3	0.0	0.0	0.0	0.2
	1997년도 이전	143,710	14,279,746	991,428	146,003,531	242	11,732	9	206,542
	(비율)	6.0	2.3	41.3	23.8	0.0	0.0	0.0	0.0

재 정 통 계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7,241	1,170,308	1,136,978	57,142,856	6,843,581	121,446,141	5,306,392	1,108,021,974
0.0	0.0	0.1	0.0	4.2	1.8	25	3.7	19.4	34.0
0	0	8,818	227,925	367,072	13,633,966	4,489,050	78,161,966	2,080,806	290,721,823
0.0	0.0	0.1	0.0	3.2	1.5	38.9	8.5	18.0	31.7
0	0	18,422	942,383	769,902	43,508,889	2,354,492	43,284,166	3,225,567	817,300,119
0.0	0.0	0.1	0.0	4.9	1.9	14.9	1.8	20.4	34.8
0	0	5,482	227,825	212,687	9,099,279	2,347,334	43,200,916	1,156,925	205,618,327
0.0	0.0	0.1	0.0	3.5	1.7	38.7	8.3	19.1	39.3
0	0	3,717	284,788	158,260	8,626,975	3,395	75,368	789,181	153,407,019
0.0	0.0	0.1	0.1	5.3	2.0	0.1	0.0	26.6	36.2
0	0	2,191	68,502	153,648	8,479,042	1,962	4,722	547,317	145,142,444
0.0	0.0	0.1	0.0	6.4	2.2			22.6	37.5
0	0	3,001	71,582	125,518	7,782,954	1,491	2,942	442,357	140,784,837
0.0	0.0	0.2	0.0	6.3	2.0			22.2	35.4
0	0	4,031	289,686	119,768	9,520,631	271	210	289,697	172,347,344
0.0	0.0	0.2	0.0	5.0	1.6			12.1	28.1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937,316	193,048,264			2,111,214	107,980,023	31,403	16,152,073
		7.1	5.9			7.7	3.3	0.1	0.5
		702,699	51,046,475			748,982	28,526,918	8,683	3,293,942
		6.1	5.6			6.5	3.1	0.1	0.4
		1,234,611	142,001,783			1,362,226	79,453,101	22,720	12,858,130
		7.8	6.1			8.6	3.4	0.1	0.5
		371,715	29,513,196			388,074	16,804,620	5,309	2,220,097
		6.1	5.6			6.4	3.2	0.1	0.4
		262,132	26,818,859			286,351	15,170,245	4,642	2,325,874
		8.8	6.3			9.7	3.6	0.2	0.5
		219,254	27,386,352			262,114	15,472,979	3,994	2,349,852
		9.1	7.1			10.8	4.0	0.2	0.6
		203,484	24,611,240			218,509	14,542,819	4,089	2,784,257
		10.2	6.2			10.9	3.7	0.2	0.7
		177,992	33,672,111			207,140	17,462,424	4,685	3,178,048
		7.4	5.5			8.6	2.8	0.2	0.5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3	총괄	33,070,080	3,242,066,977	449,719	615,586,571	43,463	83,951,507	1,697,776	30,537,304
	(비율)	100.0	100.0	1.4	19.0	0.1	2.6	5.1	0.9
	현년도분	13,639,610	1,002,756,186	146,142	189,664,908	17,402	25,637,219	274,156	4,827,492
	(비율)	100.0	100.0	1.1	18.9	0.1	2.6	2	0.5
	과년도분	19,430,470	2,239,310,791	303,577	425,921,663	26,061	58,314,288	1,423,620	25,709,812
	(비율)	100.0	100.0	1.6	19.0	0.1	2.6	7.3	1.1
2002년도	2002년도	7,503,461	486,747,198	101,198	105,009,814	4,334	7,432,663	163,877	2,930,990
	(비율)	100.0	100.0	1.3	21.6	0.1	1.5	2.2	0.6
2001년도	2001년도	5,015,730	386,073,098	62,542	52,263,039	3,262	5,122,725	133,388	2,361,231
	(비율)	100.0	100.0	1.2	13.5	0.1	1.3	2.7	0.6
2000년도	2000년도	2,363,022	339,576,380	38,805	48,517,831	1,975	3,564,923	385,490	7,401,723
	(비율)	100.0	100.0	1.6	14.3	0.1	1.0	16.3	2.2
1999년도	1999년도	1,945,579	318,436,428	28,955	44,509,375	2,366	7,918,420	313,098	6,258,845
	(비율)	100.0	100.0	1.5	14.0	0.1	2.5	16.1	2.0
1998년도 이전	1998년도 이전	2,602,678	708,477,687	72,077	175,621,604	14,124	34,275,557	427,767	6,757,023
	(비율)	100.0	100.0	2.8	24.8	0.5	4.8	16.4	1.0
구분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총괄	1,519,041	112,631,835	6,557,917	764,071,955	1,007	139,569	119	2,324,121
	(비율)	4.6	3.5	19.8	23.6	0	0	0	0.1
현년도분	현년도분	558,784	39,850,978	2,528,903	237,287,283	386	59,660	79	765,910
	(비율)	4.1	4	18.5	23.7	0	0	0	0.1
과년도분	과년도분	960,257	72,780,857	4,029,014	526,784,672	621	79,909	40	1,558,211
	(비율)	4.9	3.3	20.7	23.5	0	0	0	0.1
2002년도	2002년도	276,765	17,766,799	1,230,974	107,834,803	199	32,388	15	397,297
	(비율)	3.7	3.7	16.4	22.2	0	0	0	0.1
2001년도	2001년도	194,377	12,622,745	774,330	80,720,717	84	13,847	1	46,970
	(비율)	3.9	3.3	15.4	20.9	0	0	0	0
2000년도	2000년도	154,877	11,767,442	595,552	95,107,693	37	6,008	15	494,739
	(비율)	6.6	3.5	25.2	28	0	0	0	0.1
1999년도	1999년도	147,805	11,987,117	474,965	82,646,670	40	5,359	-	-
	(비율)	7.6	3.8	24.4	26	0	0		
1998년도 이전	1998년도 이전	186,433	18,636,754	953,193	160,474,789	261	22,307	9	619,205
	(비율)	7.2	2.6	36.6	22.7	0	0	0	0.1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	-	26,367	1,264,729	1,273,178	58,775,329	11,007,894	161,547,818	6,038,317	1,093,655,936
		0.1	0.0	3.8	1.8	33.3	5.0	18.3	33.7
-	-	9,637	449,481	464,547	17,664,602	5,349,625	90,809,175	2,478,149	291,903,127
		0.1	0.0	3.4	1.8	39.2	9.1	18.2	29.1
-	-	16,730	815,248	808,631	41,110,727	5,658,269	70,738,643	3,560,168	801,752,809
		0.1	0.0	4.2	1.8	29.1	3.2	18.3	35.8
-	-	5,657	128,169	227,492	8,580,082	3,385,961	40,851,230	1,303,225	150,634,919
		0.1	0.0	3.0	1.8	45.1	8.4	17.4	30.9
-	-	4,116	188,141	161,245	6,509,864	2,272,308	29,887,413	854,747	161,419,448
		0.1	0.0	3.2	1.7	45.3	7.7	17.0	41.8
-	-	2,974	284,347	128,652	6,698,284	-	-	614,902	130,781,310
		0.1	0.1	5.4	2.0			26.0	38.5
-	-	1,750	60,612	127,970	6,638,320	-	-	446,853	121,126,134
		0.1	0.0	6.6	2.1			23.0	38.0
-	-	2,233	153,979	163,272	12,684,177	-	-	340,441	237,790,998
		0.1	0.0	6.3	1.8			13.1	33.6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	-	2,103,948	190,194,731	1	25	2,317,982	111,519,935	33,351	15,865,612
		6.4	5.9	0.0	0.0	7.0	3.4	0.1	0.5
-	-	852,560	61,715,820	1	25	947,845	37,235,610	11,394	4,884,896
		6.3	6.2	0.0	0.0	6.9	3.7	0.1	0.5
-	-	1,251,388	128,478,911	-	-	1,370,137	74,284,325	21,957	10,980,716
		6.4	5.7			7.1	3.3	0.1	0.5
-	-	389,692	27,204,268	-	-	408,682	16,108,687	5,390	1,835,089
		5.2	5.6			5.4	3.3	0.1	0.4
-	-	270,052	20,986,132	-	-	280,887	12,231,051	4,391	1,699,775
		5.4	5.4			5.6	3.2	0.1	0.4
-	-	212,908	21,101,300	-	-	222,866	11,925,817	3,969	1,924,963
		9.0	6.2			9.4	3.5	0.2	0.6
-	-	186,125	23,081,106	-	-	212,275	12,425,093	3,377	1,779,377
		9.6	7.2			10.9	3.9	0.2	0.6
-	-	192,611	36,106,105	-	-	245,427	21,593,677	4,830	3,741,512
		7.4	5.1			9.4	3.0	0.2	0.5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4	총괄	37,489,014	3,266,883,135	407,982	573,244,437	39,832	68,742,903	1,534,212	28,304,020
	(비율)	100.0	100.0	1.1	17.5	0.1	2.1	4.1	0.9
	현년도분	16,083,221	1,119,586,591	134,073	192,946,918	9,279	30,860,974	336,868	5,703,209
	(비율)	100.0	100.0	0.8	17.2	0.1	2.8	2.1	0.5
	과년도분	21,405,793	2,147,296,544	273,909	380,297,519	30,553	37,881,929	1,197,344	22,600,811
	(비율)	100.0	100.0	1.3	17.7	0.1	1.8	5.6	1.1
2003년도	총괄	8,224,036	686,215,738	72,813	102,336,185	11,985	15,354,674	205,324	3,609,112
	(비율)	100.0	100.0	0.9	14.9	0.1	2.2	2.5	0.5
2002년도	총괄	5,046,808	356,882,630	67,607	68,807,211	3,207	4,737,173	133,130	2,374,301
	(비율)	100.0	100.0	1.3	19.3	0.1	1.3	2.6	0.7
2001년도	총괄	3,539,522	278,242,144	45,017	39,048,558	2,397	3,252,885	111,933	2,144,492
	(비율)	100.0	100.0	1.3	14	0.1	1.2	3.2	0.8
2000년도	총괄	1,865,439	245,694,641	26,173	35,915,907	1,709	1,874,591	298,141	5,947,324
	(비율)	100.0	100.0	1.4	14.6	0.1	0.8	16	2.4
1999년도 이전	총괄	2,729,988	580,261,391	62,299	134,189,658	11,255	12,662,606	448,816	8,525,582
	(비율)	100.0	100.0	2.3	23.1	0.4	2.2	16.4	1.5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4	총괄	1,694,449	125,309,919	7,156,981	793,646,336	813	146,447	126	2,376,164
	(비율)	4.5	3.8	19.1	24.3	0.0	0.0	0.0	0.1
	현년도분	679,161	49,413,375	2,759,936	256,252,581	278	43,296	67	709,346
	(비율)	4.2	4.4	17.2	22.9	0.0	0.0	0.0	0.1
	과년도분	1,015,288	75,896,544	4,397,045	537,393,755	535	103,151	59	1,666,818
	(비율)	4.7	3.5	20.5	25.0	0.0	0.0	0.0	0.1
2003년도	총괄	336,175	23,186,725	1,451,319	132,952,573	162	55,306	35	523,018
	(비율)	4.1	3.4	17.6	19.4	0.0	0.0	0.0	0.1
2002년도	총괄	206,241	12,110,602	901,967	84,020,623	121	21,593	6	47,613
	(비율)	4.1	3.4	17.9	23.5	0.0	0.0	0.0	0.0
2001년도	총괄	156,761	9,767,243	609,147	66,183,986	54	12,186	1	54,043
	(비율)	4.4	3.5	17.2	23.8	0.0	0.0	0.0	0.0
2000년도	총괄	126,571	9,480,750	457,942	82,174,404	21	2,758	15	543,148
	(비율)	6.8	3.9	24.5	33.4	0.0	0.0	0.0	0.2
1999년도 이전	총괄	189,540	21,351,224	976,670	172,062,169	177	11,308	2	498,996
	(비율)	6.9	3.7	35.8	29.7	0.0	0.0	0.0	0.1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6,400	977,065	1,437,195	63,097,881	12,948,287	204,261,115	7,073,270	1,058,870,990
0.0	0.0	0.1	0.0	3.8	1.9	34.5	6.3	18.9	32.4
0	0	10,140	320,917	583,938	23,069,105	6,347,459	103,928,709	2,993,992	319,199,017
0.0	0.0	0.1	0.0	3.6	2.1	39.5	9.3	18.6	28.5
0	0	16,260	656,148	853,257	40,028,776	6,600,828	100,332,406	4,079,278	739,671,973
0.0	0.0	0.1	0.0	4	1.9	30.8	4.7	19.1	34.4
0	0	5,458	297,954	278,120	10,410,612	3,238,521	48,403,606	1,601,995	293,299,686
0.0	0.0	0.1	0.0	3.4	1.5	39.4	7.1	19.5	42.7
0	0	3,746	89,812	167,252	6,399,431	2,003,670	29,627,739	968,416	115,179,355
0.0	0.0	0.1	0.0	3.3	1.8	39.7	8.3	19.2	32.3
0	0	2,994	100,104	130,422	5,062,245	1,358,637	22,301,061	670,638	103,870,011
0.0	0.0	0.1	0.0	3.7	1.8	38.4	8.0	18.9	37.3
0	0	2,377	103,185	103,652	5,362,311	0	0	484,659	77,836,296
0.0	0.0	0.1	0.0	5.6	2.2	0.0	0.0	26.0	31.7
0	0	1,685	65,093	173,811	12,794,177	0	0	353,570	149,486,625
0.0	0.0	0.1	0.0	6.4	2.2	0.0	0.0	13.0	25.8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	38,517	2,369,684	208,576,072	18	152,943	2,766,259	123,980,189	33,505	15,158,137
0.0	0.0	6.3	6.4	0.0	0.0	7.4	3.8	0.1	0.5
1	38,517	1,015,628	81,661,935	12	150,332	1,199,414	50,633,580	12,975	4,654,780
0.0	0.0	6.3	7.3	0.0	0.0	7.5	4.5	0.1	0.4
0	0	1,354,056	126,914,137	6	2,611	1,566,845	73,346,609	20,530	10,503,357
0.0	0.0	6.3	5.9	0.0	0.0	7.3	3.4	0.1	0.5
0	0	473,085	32,204,023	1	26	542,572	20,566,031	6,471	3,016,207
0.0	0.0	5.8	4.7	0.0	0.0	6.6	3	0.1	0.4
0	0	278,625	20,909,769	5	2,585	309,381	11,272,441	3,434	1,282,382
0.0	0.0	5.5	5.9	0.0	0.0	6.1	3.2	0.1	0.4
0	0	215,680	16,173,967	0	0	232,812	8,988,053	3,029	1,283,310
0.0	0.0	6.1	5.8	0.0	0.0	6.6	3.2	0.1	0.5
0	0	172,832	15,681,574	0	0	188,693	9,439,377	2,654	1,333,016
0.0	0.0	9.3	6.4	0.0	0.0	10.1	3.8	0.1	0.5
0	0	213,834	41,944,804	0	0	293,387	23,080,707	4,942	3,588,442
0.0	0.0	7.8	7.2	0.0	0.0	10.7	4.0	0.2	0.6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5	총괄	43,507,728	3,201,256,401	416,716	552,899,346	50,219	72,098,380	1,386,650	26,246,563
	(비율)	100.0	100.0	1.0	17.3	0.1	2.3	3.2	0.8
	현년도분	18,494,426	1,121,926,737	135,925	209,450,806	7,255	32,580,169	342,170	5,966,529
	(비율)	100.0	100.0	0.7	18.7	0.0	2.9	1.9	0.5
	과년도분	25,013,302	2,079,329,664	280,791	343,448,540	42,964	39,518,211	1,044,480	20,280,034
	(비율)	100.0	100.0	1.1	16.5	0.2	1.9	4.2	1.0
	2004년도	9,194,049	591,328,243	66,416	96,435,687	18,878	18,927,867	204,118	3,831,411
	(비율)	100.0	100.0	0.7	16.3	0.2	3.2	2.2	0.6
	2003년도	5,946,245	373,588,023	49,388	63,272,421	9,467	8,139,517	143,746	2,593,236
	(비율)	100.0	100.0	0.8	16.9	0.2	2.2	2.4	0.7
	2002년도	3,949,317	271,111,762	51,193	47,884,815	2,723	3,302,777	100,986	1,833,921
	(비율)	100.0	100.0	1.3	17.7	0.1	1.2	2.6	0.7
	2001년도	2,900,780	230,928,319	38,539	33,228,196	2,179	1,540,672	87,602	1,671,330
	(비율)	100.0	100.0	1.3	14.4	0.1	0.7	3.0	0.7
	2000년도 이전	3,022,911	612,373,317	75,255	102,627,421	9,717	7,607,378	508,028	10,350,136
	(비율)	100.0	100.0	2.5	16.8	0.3	1.2	16.8	1.7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3,018,172	187,385,874	7,795,986	802,050,818	503	63,187	176	3,091,658
(비율)	6.9	5.9	17.9	25.1	0.0	0.0	0.0	0.1	
현년도분	1,886,823	107,149,876	2,948,967	257,925,389	0	0	125	1,536,642	
(비율)	10.2	9.6	15.9	23.0	0.0	0.0	0.0	0.1	
과년도분	1,131,349	80,235,998	4,847,019	544,125,429	503	63,187	51	1,555,016	
(비율)	4.5	13.6	19.4	26.2	0.0	0.0	0.0	0.1	
2004년도	382,559	27,781,263	1,507,186	135,896,950	114	16,249	25	304,619	
(비율)	4.2	7.4	16.4	23.0	0.0	0.0	0.0	0.1	
2003년도	234,164	14,143,798	1,045,615	92,362,421	93	10,046	12	263,714	
(비율)	3.9	5.2	17.6	24.7	0.0	0.0	0.0	0.1	
2002년도	162,231	8,643,572	716,897	63,930,255	84	13,121	0	0	
(비율)	4.1	3.7	18.2	19.8	0.0	0.0	0.0	0.0	
2001년도	132,584	7,735,414	494,733	53,783,281	41	12,352	0	0	
(비율)	4.6	1.3	17.1	8.8	0.0	0.0	0.0	0.0	
2000년도 이전	219,811	21,931,951	1,082,588	198,152,522	171	11,419	14	986,683	
(비율)	7.3		35.8	32.4	0.0	0.0	0.0	0.2	

재 정 통 계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6,850	1,140,408	1,889,699	64,268,216	16,480,915	230,780,133	7,650,590	988,055,772
0.0	0.0	0.1	0.0	4.3	2.0	37.9	7.2	17.6	30.9
0	0	9,291	404,838	956,054	24,500,216	7,589,101	103,681,639	3,015,580	319,003,344
0.0	0.0	0.1	0.0	5.2	2.2	41.0	9.2	16.3	28.4
0	0	17,559	735,570	933,639	39,767,998	8,891,773	127,098,485	4,634,994	669,052,399
0.0	0.0	0.1	0.0	3.7	1.9	35.5	6.1	18.5	32.2
0	0	5,851	200,511	318,959	13,026,393	3,735,504	52,067,129	1,796,806	176,927,310
0.0	0.0	0.1	0.0	3.5	2.2	40.6	8.8	19.5	29.9
0	0	4,161	240,025	186,199	6,336,391	2,396,114	33,066,604	1,184,536	119,537,436
0.0	0.0	0.1	0.1	3.1	1.7	40.3	8.9	19.9	32.0
0	0	3,076	77,820	126,926	4,141,280	1,581,096	22,309,974	751,934	95,338,704
0.0	0.0	0.1	0.0	3.2	1.5	40.0	8.2	19.0	35.2
0	0	2,365	100,789	106,435	3,594,804	1,133,610	18,291,449	526,456	90,125,027
0.0	0.0	0.1	0.0	3.7	1.6	39.1	7.9	18.1	39.0
0	0	2,106	116,425	195,107	12,669,123	45,289	1,363,295	375,185	187,123,786
0.0	0.0	0.1	0.0	6.5	2.1	1.5	0.2	12.4	30.6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	175	1,484,964	131,162,745	23	38,761	3,001,672	127,263,023	34,960	14,202,497
0.0	0.0	3.4	4.1	0.0	0.0	6.9	4.0	0.1	0.4
1	175	7,227	2,488,809	12	17,730	1,313,466	52,392,096	12,429	4,828,479
0.0	0.0	0.0	0.2	0.0	0.0	7.1	4.7	0.1	0.4
0	0	1,477,737	128,673,936	11	21,031	1,688,199	74,870,922	22,531	9,374,018
0.0	0.0	5.9	6.2	0.0	0.0	6.7	3.6	0.1	0.5
0	0	529,691	37,892,333	6	20,223	620,493	25,345,464	7,443	2,654,834
0.0	0.0	5.8	6.4	0.0	0.0	6.7	4.3	0.1	0.4
0	0	332,652	19,611,099	1	26	355,612	12,301,366	4,485	1,709,923
0.0	0.0	5.6	5.2	0.0	0.0	6.0	3.3	0.1	0.5
0	0	221,150	14,751,122	4	782	228,263	7,791,519	2,754	1,092,100
0.0	0.0	5.6	5.4	0.0	0.0	5.8	2.9	0.1	0.4
0	0	182,508	12,913,790	0	0	191,123	6,826,532	2,605	1,104,683
0.0	0.0	6.3	5.6	0.0	0.0	6.6	3.0	0.1	0.5
0	0	211,713	43,505,569	0	0	292,683	22,606,028	5,244	3,321,581
0.0	0.0	7.0	7.1	0.0	0.0	9.7	3.7	0.2	0.5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6	총괄	45,137,144	3,263,433,503	355,260	560,585,233	41,329	83,520,579	1,288,334	24,121,327
	(비율)	100.0	100.0	0.8	17.2	0.1	2.6	2.9	0.7
	현년도분	17,766,253	1,198,588,401	107,509	231,267,251	9,882	43,192,743	329,347	5,839,493
	(비율)	100.0	100.0	0.6	19.3	0.1	3.6	1.9	0.5
	과년도분	27,370,891	2,064,845,102	247,751	329,317,982	31,447	40,327,836	958,987	18,281,834
	(비율)	100.0	100.0	0.9	15.9	0.1	2.0	3.5	0.9
	2005년도	9,573,819	555,000,873	54,651	94,246,783	5,848	15,695,255	201,828	3,713,242
	(비율)	100.0	100.0	0.6	17	0.1	2.8	2.1	0.7
	2004년도	6,275,721	388,766,260	43,429	59,542,761	5,533	11,252,483	149,518	2,761,907
	(비율)	100.0	100.0	0.7	15.3	0.1	2.9	2.4	0.7
	2003년도	4,571,905	268,426,630	36,188	40,009,357	8,559	3,936,348	114,403	1,988,081
	(비율)	100.0	100.0	0.8	14.9	0.2	1.5	2.5	0.7
	2002년도	3,149,666	216,229,918	39,984	35,351,465	2,202	2,149,911	78,457	1,528,591
	(비율)	100.0	100.0	1.3	16.3	0.1	1.0	2.5	0.7
	2001년도 이전	3,799,780	636,421,421	73,499	100,167,616	9,305	7,293,839	414,781	8,290,013
	(비율)	100.0	100.0	1.9	15.7	0.2	1.1	10.9	1.3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3,449,257	216,804,836	8,330,459	800,250,939	360	46,396	236	3,608,369
	(비율)	7.6	6.6	18.5	24.5	0.0	0.0	0.0	0.1
	현년도분	1,744,800	111,652,838	3,135,626	272,763,204	0	0	119	1,234,557
	(비율)	9.8	9.3	17.6	22.8	0.0	0.0	0.0	0.1
	과년도분	1,704,457	105,151,998	5,194,833	527,487,735	360	46,396	117	2,373,812
	(비율)	6.2	5.1	19.0	25.5	0.0	0.0	0.0	0.1
	2005년도	941,498	51,821,044	1,548,606	128,864,521	1	84	71	892,452
	(비율)	9.8	9.3	16.2	23.2	0.0	0.0	0.0	0.2
	2004년도	253,123	16,014,685	1,061,300	93,475,076	80	14,796	21	245,677
	(비율)	4.0	4.1	16.9	24.0	0.0	0.0	0.0	0.1
	2003년도	171,277	9,328,473	815,254	70,709,099	50	3,981	12	290,327
	(비율)	3.7	3.5	17.8	26.3	0.0	0.0	0.0	0.1
	2002년도	121,836	6,941,992	577,688	51,965,680	57	9,391	0	0
	(비율)	3.9	3.2	18.3	24.0	0.0	0.0	0.0	0.0
	2001년도 이전	216,723	21,045,804	1,191,985	182,473,359	172	18,144	13	945,356
	(비율)	5.7	3.3	31.4	28.7	0.0	0.0	0.0	0.1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32,908	1,098,826	1,987,645	63,789,818	17,514,315	252,199,911	8,098,480	1,024,624,112
0.0	0.0	0.1	0.0	4.4	2.0	38.8	7.7	17.9	31.4
0	0	8,981	379,131	877,603	23,804,301	7,264,794	112,646,363	3,058,122	334,524,166
0.0	0.0	0.1	0.0	4.9	2.0	40.9	9.4	17.2	27.9
0	0	23,927	719,695	1,110,042	39,985,517	10,249,521	139,553,548	5,040,358	690,099,946
0.0	0.0	0.1	0.0	4.1	1.9	37.4	6.8	18.4	33.4
0	0	5,279	192,964	465,120	13,745,511	3,892,612	50,338,742	1,793,382	166,933,622
0.0	0.0	0.1	0.0	4.9	2.5	40.7	9.1	18.7	30.1
0	0	4,226	148,877	206,080	7,561,172	2,524,940	34,413,013	1,281,359	124,867,461
0.0	0.0	0.1	0.0	3.3	1.9	40.2	8.9	20.4	32.1
0	0	3,363	130,653	140,496	4,281,277	1,850,529	24,158,042	917,438	90,121,899
0.0	0.0	0.1	0.0	3.1	1.6	40.5	9.0	20.1	33.6
0	0	2,473	61,665	94,212	3,387,886	1,275,310	17,189,067	604,020	79,984,990
0.0	0.0	0.1	0.0	3.0	1.6	40.5	7.9	19.2	37.0
0	0	8,586	185,536	204,134	11,009,671	706,130	13,454,684	444,159	228,191,974
0.0	0.0	0.2	0.0	5.4	1.7	18.6	2.1	11.7	35.9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0	2,794,654	1,015,118	90,147,483	28	300,211	2,987,072	124,713,339	36,333	14,827,470
0.0	0.1	2.2	2.8	0.0	0.0	6.6	3.8.0	0.1	0.5
7	2,430,186	6,439	2,248,380	8	264,659	1,210,438	50,887,677	12,578	5,453,452
0.0	0.2	0.0	0.2	0.0	0.0	6.8	4.2	0.1	0.5
3	364,468	1,008,679	87,899,103	20	35,552	1,776,634	73,825,662	23,755	9,374,018
0.0	0.0	3.7	4.3	0.0	0.0	6.5	3.6	0.1	0.5
2	316,065	11,715	1,100,628	9	12,150	646,536	24,670,630	6,661	2,457,180
0.0	0.1	0.1	0.2	0.0	0.0	6.8	4.4	0.1	0.4
1	48,403	355,673	21,987,016	6	22,406	385,002	14,511,308	5,430	1,899,219
0.0	0.0	5.7	5.7	0.0	0.0	6.1	3.7	0.1	0.5
0	0	249,303	13,673,110	0	0	260,845	8,491,286	4,188	1,304,697
0.0	0.0	5.5	5.1	0.0	0.0	5.7	3.2	0.1	0.5
0	0	176,698	10,503,571	5	996	174,416	6,261,403	2,308	893,310
0.0	0.0	5.6	4.9	0.0	0.0	5.5	2.9	0.1	0.4
0	0	215,290	40,634,778	0	0	309,835	19,891,035	5,168	2,819,612
0.0	0.0	5.7	6.4	0.0	0.0	8.2	3.1	0.1	0.4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7	총괄	43,115,889	3,141,455,631	342,348	521,071,447	38,946	153,107,941	1,132,605	21,194,440
	(비율)	100.0	100.0	0.8	16.6	0.1	4.9	2.6	0.7
	현년도분	16,352,915	1,226,588,910	116,941	217,295,588	14,723	106,419,619	292,085	5,180,350
	(비율)	100.0	100.0	0.7	17.7	0.1	8.7	1.8	0.4
	과년도분	26,762,974	1,914,866,721	225,407	303,775,859	24,223	46,688,322	840,520	16,014,090
	(비율)	100.0	100.0	0.8	15.9	0.1	2.4	3.1	0.8
	2006년도	8,874,735	547,447,884	63,621	100,498,205	9,038	22,413,869	196,352	3,589,421
	(비율)	100.0	100.0	0.7	18.4	0.1	4.1	2.2	0.7
	2005년도	6,125,864	338,748,129	33,852	53,149,774	3,762	8,565,500	143,423	2,432,155
	(비율)	100.0	100.0	0.6	15.7	0.1	2.5	2.3	0.7
	2004년도	4,396,315	260,348,543	30,369	33,863,840	3,651	7,700,876	116,354	2,027,752
	(비율)	100.0	100.0	0.7	13.0	0.1	3.0	2.6	0.8
	2003년도	3,324,825	189,619,465	25,711	25,764,006	2,282	2,807,708	88,075	1,536,638
	(비율)	100.0	100.0	0.8	13.6	0.1	1.5	2.6	0.8
	2002년도 이전	4,041,235	578,702,700	71,854	90,500,034	5,490	5,200,369	296,316	6,428,124
	(비율)	100.0	100.0	1.8	15.6	0.1	0.9	7.3	1.1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3,512,372	233,607,092	8,094,671	744,860,267	125	24,976	83	1,572,070
(비율)	8.1	7.4	18.8	23.7	0.0	0.0	0.0	0.1	
현년도분	1,541,864	121,014,115	3,109,062	276,092,224	0	0	23	313,114	
(비율)	9.4	9.9	19.0	22.5	0.0	0.0	0.0	0.0	
과년도분	1,970,508	112,592,977	4,985,609	468,768,043	125	24,976	60	1,258,956	
(비율)	7.4	5.9	18.6	24.5	0.0	0.0	0.0	0.1	
2006년도	917,170	49,270,145	1,479,934	120,994,026	0	0	26	368,454	
(비율)	10.3	9.0	16.7	22.1	0.0	0.0	0.0	0.1	
2005년도	567,533	28,582,312	1,005,069	78,960,063	0	0	26	597,212	
(비율)	9.3	8.4	16.4	23.3	0.0	0.0	0.0	0.2	
2004년도	173,628	10,226,866	758,882	63,231,609	44	8,737	1	9,465	
(비율)	3.9	3.9	17.3	24.3	0.0	0.0	0.0	0.0	
2003년도	122,735	6,261,323	598,004	51,019,133	34	2,632	5	81,365	
(비율)	3.7	3.3	18.0	26.9	0.0	0.0	0.0	0.0	
2002년도 이전	189,442	18,252,331	1,143,720	154,563,212	47	13,607	2	202,460	
(비율)	4.7	3.2	28.3	26.7	0.0	0.0	0.0	0.0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3,867	924,641	2,002,200	57,375,365	16,551,743	262,411,667	7,681,633	951,802,214
0.0	0.0	0.1	0.0	4.6	1.8	38.4	8.4	17.8	30.3
0	0	7,731	363,958	745,826	21,485,535	6,543,067	124,604,028	2,839,398	296,048,574
0.0	0.0	0.0	0.0	4.6	1.8	40.0	10.2	17.4	24.1
0	0	16,136	560,683	1,256,374	35,889,830	10,008,676	137,807,639	4,842,235	655,753,640
0.0	0.0	0.1	0.0	4.7	1.9	37.4	7.2	18.1	34.2
0	0	4,055	174,286	470,140	12,034,111	3,413,956	46,381,480	1,662,095	163,785,680
0.0	0.0	0.0	0.0	5.3	2.2	38.5	8.5	18.7	29.9
0	0	3,339	115,273	367,787	7,677,124	2,366,311	29,611,564	1,177,826	112,649,665
0.0	0.0	0.1	0.0	6.0	2.3	38.6	8.7	19.2	33.3
0	0	3,113	86,214	144,006	4,414,127	1,717,554	22,336,802	902,020	92,076,885
0.0	0.0	0.1	0.0	3.3	1.7	39.1	8.6	20.5	35.4
0	0	3,559	84,165	100,804	2,871,035	1,336,952	17,091,526	638,375	65,959,701
0.0	0.0	0.1	0.0	3.0	1.5	40.2	9.0	19.2	34.8
0	0	2,070	100,745	173,637	8,893,433	1,173,903	22,386,267	461,919	221,281,709
0.0	0.0	0.1	0.0	4.3	1.5	29.0	3.9	11.4	38.2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11	1,119,790	638,998	60,125,689	1,313	171,606	3,060,991	119,041,876	33,983	13,044,550
0.0	0.0	1.5	1.9	0.0	0.0	7.1	3.8	0.1	0.4
5	167,408	5,940	1,017,231	62	113,563	1,123,839	51,840,790	12,349	4,632,813
0.0	0.0	0.0	0.1	0.0	0.0	6.9	4.2	0.1	0.4
6	952,382	633,058	59,108,458	1,251	58,043	1,937,152	67,201,086	21,634	8,411,737
0.0	0.0	2.4	3.1	0.0	0.0	7.2	3.5	0.1	0.4
3	546,049	8,072	2,159,349	6	2,679	643,834	22,739,086	6,433	2,491,044
0.0	0.1	0.1	0.4	0.0	0.0	7.3	4.2	0.1	0.5
2	352,986	4,009	1,314,935	8	12,553	448,548	13,175,661	4,369	1,551,352
0.0	0.1	0.1	0.4	0.0	0.0	7.3	3.9	0.1	0.5
1	53,347	236,451	14,109,507	1,005	37,459	305,627	8,879,609	3,609	1,285,448
0.0	0.0	5.4	5.4	0.0	0.0	7	3.4	0.1	0.5
0	0	180,003	9,187,925	0	0	225,441	5,952,801	2,845	999,507
0.0	0.0	5.4	4.8	0.0	0.0	6.8	3.1	0.1	0.5
0	0	204,523	32,336,742	232	5,352	313,702	16,453,929	4,378	2,084,386
0.0	0.0	5.1	5.6	0.0	0.0	7.8	2.8	0.1	0.4

2. 연도별, 세목별 지방세 체납액 현황 <계속>

연도	구분	합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2008	총괄	50,484,494	3,409,627,872	352,035	569,814,250	30,035	206,033,304	1,136,236	19,093,434
	(비율)	100.0	100.0	0.7	16.7	0.1	6.0	2.3	0.6
	현년도분	17,771,102	1,432,006,724	115,294	262,895,860	11,370	113,429,838	276,254	4,634,634
	(비율)	100.0	100.0	0.6	18.4	0.1	7.9	1.6	0.3
	과년도분	32,713,392	1,977,621,148	236,741	306,918,390	18,665	92,603,466	859,982	14,458,800
	(비율)	100.0	100.0	0.7	15.5	0.1	4.7	2.6	0.7
	2007년도	8,957,036	641,127,161	51,810	110,454,292	4,728	50,239,953	172,528	2,994,137
	(비율)	100.0	100.0	0.6	17.2	0.1	7.8	1.9	0.5
	2006년도	6,748,022	343,013,620	35,607	56,410,555	2,805	10,731,002	143,685	2,500,229
	(비율)	100.0	100.0	0.5	16.4	0.0	3.1	2.1	0.7
	2005년도	5,692,682	246,914,054	28,739	33,711,693	2,140	5,415,300	125,198	1,906,641
	(비율)	100.0	100.0	0.5	13.7	0.0	2.2	2.2	0.8
	2004년도	4,629,019	220,049,708	28,886	27,273,207	2,209	3,689,981	108,942	1,582,576
	(비율)	100.0	100.0	0.6	12.4	0.0	1.7	2.4	0.7
	2003년도 이전	6,686,633	526,516,605	91,699	79,068,643	6,783	22,527,230	309,629	5,475,217
	(비율)	100.0	100.0	1.4	15.0	0.1	4.3	4.6	1.0
	구분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총괄	4,624,502	289,352,998	9,345,996	782,272,997	78	19,270	155	877,252
		(비율)	9.2	8.5	18.5	22.9	0.0	0.0	0.0
현년도분	1,672,798	157,693,408	3,330,741	314,334,500	0	0	52	789,978	
	(비율)	9.4	11.0	18.7	22.0	0.0	0.0	0.0	0.1
과년도분	2,951,704	131,659,590	6,015,255	467,938,497	78	19,270	103	87,274	
	(비율)	9.0	6.7	18.4	23.7	0.0	0.0	0.0	0.0
2007년도	867,916	55,845,382	1,541,243	120,047,321	0	0	10	21,462	
	(비율)	9.7	8.7	17.2	18.7	0.0	0.0	0.0	0.0
2006년도	681,245	32,183,497	1,109,742	84,317,658	0	0	14	272	
	(비율)	10.1	9.4	16.4	24.6	0.0	0.0	0.0	0.0
2005년도	590,428	20,412,646	925,556	59,346,048	0	0	9	2	
	(비율)	10.4	8.3	16.3	24.0	0.0	0.0	0.0	0.0
2004년도	306,695	6,714,729	763,723	48,824,482	37	6,754	9	0	
	(비율)	6.6	3.1	16.5	22.2	0.0	0.0	0.0	0.0
2003년도 이전	505,420	16,503,336	1,674,991	155,402,988	41	12,516	61	65,538	
	(비율)	7.6	3.1	25.0	29.5	0.0	0.0	0.0	0.0

(단위: 건, 천원, %)

레저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0	0	20,076	746,364	2,335,575	58,986,234	19,822,515	297,844,081	8,712,855	992,603,966
0.0	0.0	0.0	0.0	4.6	1.7	39.3	8.7	17.3	29.1
0	0	6,354	268,227	816,506	24,297,137	7,270,712	145,219,842	3,096,046	336,508,803
0.0	0.0	0.0	0.0	4.6	1.7	40.9	10.1	17.4	23.5
0	0	13,722	478,137	1,519,069	34,689,097	12,551,803	152,624,239	5,616,809	656,095,163
0.0	0.0	0.0	0.0	4.6	1.8	38.4	7.7	17.2	33.2
0	0	3,684	133,025	375,564	10,825,538	3,654,356	53,682,765	1,703,354	211,853,257
0.0	0.0	0.0	0.0	4.2	1.7	40.8	8.4	19.0	33.0
0	0	2,766	111,148	302,372	7,674,677	2,730,135	32,125,444	1,262,823	99,565,461
0.0	0.0	0.0	0.0	4.5	2.2	40.5	9.4	18.7	29.0
0	0	2,350	93,791	281,592	5,238,328	2,256,848	21,534,030	1,032,962	88,051,282
0.0	0.0	0.0	0.0	4.9	2.1	39.6	8.7	18.1	35.7
0	0	2,111	52,115	200,202	3,018,036	1,797,376	16,855,906	855,702	95,495,513
0.0	0.0	0.0	0.0	4.3	1.4	38.8	7.7	18.5	43.4
0	0	2,811	88,058	359,339	7,932,518	2,113,088	28,426,094	761,968	161,129,650
0.0	0.0	0.0	0.0	5.4	1.5	31.6	5.4	11.4	30.6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28	2,948,153	431,349	44,085,278	19	115,173	3,638,003	131,017,547	35,037	13,817,571
0.0	0.1	0.9	1.3	0.0	0.0	7.2	3.8	0.1	0.4
11	2,150,636	3,745	145,446	0	82,975	1,159,537	64,606,139	11,682	4,949,301
0.0	0.2	0.0	0.0	0.0	0.0	6.5	4.5	0.1	0.3
17	797,517	427,604	43,939,832	19	32,198	2,478,466	66,411,408	23,355	8,868,270
0.0	0.0	1.3	2.2	0.0	0.0	7.6	3.4	0.1	0.4
7	189,485	2,581	93,901	4	11,429	573,380	22,666,430	5,871	2,068,784
0.0	0.0	0.0	0.0	0.0	0.0	6.4	3.5	0.1	0.3
6	608,032	2,244	726,087	1	5,505	470,051	13,843,667	4,526	2,210,386
0.0	0.2	0.0	0.2	0.0	0.0	7.0	4.0	0.1	0.6
2	0	2,121	746,091	6	11,819	441,108	9,130,455	3,623	1,315,928
0.0	0.0	0.0	0.3	0.0	0.0	7.7	3.7	0.1	0.5
2	0	188,883	9,455,980	4	2,555	370,689	6,046,801	3,549	1,031,073
0.0	0.0	4.1	4.3	0.0	0.0	8.0	2.7	0.1	0.5
0	0	231,775	32,917,773	4	890	623,238	14,724,055	5,786	2,242,099
0.0	0.0	3.5	6.3	0.0	0.0	9.3	2.8	0.1	0.4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3.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단위: 건, 천원)

	1977		1978		1979		1980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3,596,971	31,615,962	3,589,899	31,375,389	4,171,614	60,935,104	6,681,655	108,393,285
취득세	58,373	4,984,913	111,890	10,320,442	225,294	11,120,712	1,111,900	21,740,902
등록세	67,702	706,400	84,702	2,528,149	550,926	11,231,576	1,659,066	20,560,963
면허세	13,522	220,486	14,947	158,143	21,552	198,239	24,743	212,839
주민세	581,300	726,130	515,417	591,280	495,070	2,124,380	665,426	2,700,472
재산세	1,960,335	9,486,890	1,984,164	9,283,856	1,994,397	14,400,101	2,012,958	25,629,789
자동차세	16,601	616,183	17,100	649,261	38,431	1,106,076	84,925	1,792,530
농지세	438,351	9,825,621	356,503	1,876,335	316,950	4,856,921	435,915	16,464,920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주행세	-	-	-	-	-	-	-	-
도시계획세	267,853	3,540,828	278,549	4,236,214	252,401	5,512,880	352,876	8,386,742
공동시설세	190,784	859,654	223,532	874,129	193,142	1,128,748	251,959	1,468,558
사업소세	2,150	648,857	3,095	857,580	83,451	9,255,471	81,887	9,435,569
	1981		1982		1983		1984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5,691,905	137,942,746	4,859,137	123,994,468	5,357,834	172,657,439	5,040,566	150,583,835
취득세	522,981	28,524,969	312,592	30,305,810	624,253	61,981,978	311,160	34,567,111
등록세	952,050	22,905,778	337,765	26,204,084	526,885	44,464,645	279,039	30,110,900
면허세	29,191	274,919	66,539	545,697	89,163	574,683	80,744	599,731
주민세	694,103	7,697,231	581,734	1,250,616	608,284	6,846,675	660,425	1,789,529
재산세	2,239,946	29,928,529	2,166,824	28,132,187	2,315,369	34,109,425	2,328,167	42,178,724
자동차세	96,962	2,020,136	77,842	1,607,899	98,789	4,034,287	102,603	4,598,498
농지세	274,731	11,169,949	390,230	10,886,671	272,323	7,281,343	256,516	9,914,272
도축세	-	-	-	-	18,786	570,052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	-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주행세	-	-	-	-	-	-	-	-
도시계획세	455,671	14,131,725	481,488	15,692,187	464,034	5,793,710	581,199	13,500,211
공동시설세	342,287	11,586,126	339,332	3,990,429	236,118	1,595,020	334,475	8,465,978
사업소세	83,983	9,703,384	104,791	5,378,888	103,830	5,405,621	106,238	4,858,881

3.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건, 천원)

	1985		1986		1987		1988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4,495,665	139,992,945	4,239,932	140,805,357	4,254,871	134,577,132	5,631,372	224,476,104
취득세	243,033	34,950,258	162,027	43,134,949	190,010	36,505,658	528,629	91,151,555
등록세	134,257	29,650,542	92,465	25,227,463	81,151	25,385,528	78,467	42,607,483
면허세	87,008	1,145,962	68,151	475,810	71,556	502,643	51,097	366,188
주민세	632,246	1,802,072	678,155	1,912,311	609,762	2,069,236	664,714	2,166,071
재산세	2,317,450	37,185,011	2,271,453	31,325,093	2,249,800	36,561,611	2,753,319	52,936,046
자동차세	77,749	4,150,101	37,363	727,860	57,753	1,386,890	57,780	3,306,049
농지세	130,497	5,679,640	179,135	6,331,522	154,712	2,984,147	151,933	1,435,558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12	9,411,645	12	2,364,361	-	-
담배소비세	-	-	-	-	-	-	525,512	813,268
지역개발세	-	-	-	-	-	-	-	-
지방교육세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주행세								
도시계획세	543,094	17,046,111	534,679	15,120,652	610,469	18,537,091	595,596	22,867,173
공동시설세	222,561	3,276,753	202,861	2,738,809	216,042	3,590,830	214,441	4,087,523
사업소세	107,770	5,106,495	13,631	4,399,243	13,604	4,689,137	9,884	2,739,190
	1989		1990		1991		1992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6,753,352	399,556,001	10,521,660	402,120,733	11,138,921	543,788,779	13,517,729	1,587,987,708
취득세	341,413	107,254,163	509,041	175,261,037	568,472	215,882,298	1,324,231	591,268,684
등록세	157,847	158,289,436	365,581	121,165,231	423,559	145,766,273	1,019,006	544,199,123
면허세	54,494	501,337	62,399	1,211,223	64,556	725,995	73,148	1,759,219
주민세	664,491	1,695,575	662,250	4,229,452	842,406	5,284,375	586,860	4,671,500
재산세	2,690,855	51,849,984	827,328	25,950,731	1,013,734	25,604,712	999,598	75,492,483
자동차세	55,274	2,059,714	71,641	6,749,210	86,673	4,282,427	72,906	3,557,449
농지세	136,298	753,202	93,366	874,205	92,459	1,773,611	80,528	1,885,326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11	19,532,903	-	-	-	-	-	-
담배소비세	8,287	27,214	-	-	-	-	-	-
지역개발세	-	-	-	-	-	-	633,784	12,679,620
지방교육세								
토지과다보유세	1,907,997	28,770,064	-	-	-	-	-	-
종합토지세	-	-	6,629,837	35,990,764	6,985,427	95,466,000	7,539,990	310,230,905
주행세								
도시계획세	529,028	20,646,444	827,255	14,500,603	764,983	28,756,981	894,649	29,708,353
공동시설세	198,191	4,351,363	461,126	4,427,975	269,429	4,961,275	278,522	4,954,199
사업소세	9,166	3,824,602	11,836	11,760,302	27,223	15,284,832	14,507	7,580,847

3.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건, 천원)

	1993		1994		1995		1996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15,120,750	1,554,940,230	15,893,687	1,520,638,712	16,031,292	1,488,985,204	16,600,658	1,550,833,009
취득세	1,423,842	556,003,185	1,223,751	574,584,364	1,047,905	507,985,250	1,194,961	598,564,109
등록세	1,211,706	589,517,686	992,336	493,564,654	1,005,022	566,459,305	1,176,606	620,056,955
면허세	75,611	18,246,029	101,325	4,733,123	108,217	2,017,139	119,590	3,013,678
주민세	1,323,716	28,936,438	1,295,054	16,616,322	716,511	6,376,881	598,527	3,221,418
재산세	899,730	46,472,930	901,787	40,148,157	880,078	35,661,516	703,803	33,296,064
자동차세	98,535	5,701,147	110,717	69,163,805	119,705	14,922,267	198,863	27,422,725
농지세	33,621	94,354	8,987	54,791	170	49,219	16,761	149,656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893,788	17,879,766	40,552	26,410,560	109,728	32,752,961	68,406	36,699,749
지방교육세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8,075,964	250,342,016	9,559,742	232,199,771	10,181,201	219,842,470	10,679,195	133,390,457
주행세								
도시계획세	853,830	27,619,005	1,389,106	46,612,230	1,531,497	79,617,825	1,482,272	68,694,903
공동시설세	218,259	5,327,337	255,791	6,518,742	312,426	11,691,877	331,472	7,702,301
사업소세	12,148	8,800,337	14,539	10,032,193	18,832	11,608,494	30,202	18,620,994
	1997		1998		1999		2000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15,013,695	1,803,889,215	16,256,413	2,020,363,060	17,798,230	2,117,030,950	17,901,938	2,343,582,501
취득세	1,025,907	668,640,767	548,333	912,276,694	633,222	805,976,400	704,759	806,286,267
등록세	1,150,530	671,722,901	625,722	683,853,068	735,388	878,418,916	772,541	811,947,755
면허세	124,138	2,186,633	206,441	3,679,059	327,353	5,361,379	364,453	6,130,633
주민세	602,117	18,641,045	566,251	3,198,894	615,197	2,939,916	695,646	3,666,500
재산세	875,781	55,824,763	1,132,836	64,379,744	1,044,662	63,747,739	1,114,044	71,295,624
자동차세	339,236	47,652,919	297,953	50,384,221	412,792	62,363,161	579,493	84,273,567
농지세	7	393,229	19	11,749	-	-	-	-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25,525	42,143,423	6,337	55,534,952	6,672	58,458,298	10,431	67,717,291
지방교육세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9,068,346	165,825,542	10,526,777	146,822,267	11,095,722	132,249,318	10,796,999	296,654,644
주행세								
도시계획세	1,466,915	89,369,047	1,925,477	64,892,343	2,416,522	70,613,767	2,374,750	153,612,396
공동시설세	305,135	23,596,199	371,405	11,527,592	460,389	13,918,388	438,345	16,705,401
사업소세	30,058	17,892,747	48,862	23,802,477	50,311	22,984,388	50,477	25,292,423

3.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계속>

(단위: 건, 천원)

	2001		2002		2003		2004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18,516,490	2,768,317,249	20,044,232	3,241,902,986	20,919,071	2,672,555,109	22,996,293	3,215,021,268
취득세	779,898	979,610,725	959,815	1,103,765,742	804,687	960,065,870	932,167	1,206,985,385
등록세	833,156	960,530,189	1,111,029	1,318,763,743	995,669	924,252,881	1,068,600	1,158,198,385
면허세	109,591	1,764,342	88,170	1,284,135	80,905	1,128,938	71,352	1,044,957
주민세	765,384	3,958,418	770,692	3,855,845	754,000	3,991,108	777,918	4,352,642
재산세	1,284,040	101,945,134	1,439,810	104,374,380	1,522,640	121,813,536	1,502,262	123,722,998
자동차세	734,071	102,411,819	910,391	109,424,990	1,007,932	123,225,460	1,074,128	128,068,029
농지세	-	-	789	24,027	-	-	199	2,978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36	6,246,523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40,529	88,242,840	80,158	105,029,638	138,791	1,171,936	493,167	1,282,427
지방교육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0	-	-	-	-	-	-	-
종합토지세	11,211,463	369,165,418	11,822,806	351,543,571	12,555,216	375,563,518	13,730,858	403,256,612
주행세	-	-	-	-	-	-	-	-
도시계획세	2,199,011	116,377,410	2,200,149	98,316,351	2,398,261	108,599,969	2,662,051	118,043,753
공동시설세	523,121	23,074,158	623,540	26,857,482	624,245	30,795,639	650,093	39,494,935
사업소세	36,226	21,236,796	36,883	18,663,082	36,725	21,946,255	33,462	24,321,644
	2005		2006		2007		2008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건 수	세 액
합계	23,245,905	3,533,726,471	30,429,454	8,067,789,938	35,511,676	9,726,596,049	21,174,055	11,304,625,964
취득세	1,002,254	1,429,467,823	2,126,383	3,105,056,875	2,141,272	3,056,746,093	2,373,445	4,046,215,770
등록세	1,795,841	1,260,108,515	2,402,567	3,021,202,263	3,118,821	2,807,936,501	3,663,177	3,320,089,003
면허세	63,328	873,698	63,443	3,061,463	137,966	2,129,932	152,522	2,447,207
주민세	933,921	7,386,488	866,074	34,345,171	1,465,524	12,382,437	976,888	8,682,430
재산세	13,885,652	405,239,601	15,171,224	1,065,985,145	16,063,026	2,377,320,454	3,488,174	2,498,293,816
자동차세	1,941,343	196,301,820	4,044,013	336,077,305	5,699,804	545,504,763	8,582,724	548,357,404
농업소득세	-	-	-	-	-	-	-	-
도축세	-	-	-	-	-	-	-	-
레저세	72	9,904,839	81	26,428,728	76	27,176,698	44	16,558,511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50,884	1,101,135	10,152	247,495	16,731	707,702	8,749	287,648
지방교육세	-	-	-	-	252	1,831,227	253	1,556,000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주행세	-	-	-	-	-	-	-	-
도시계획세	2,670,651	146,742,472	4,772,876	363,413,428	5,443,495	647,971,592	1,371,172	679,369,386
공동시설세	869,355	46,210,316	928,931	67,955,820	1,331,309	103,711,199	491,448	69,543,168
사업소세	32,604	30,389,764	43,710	44,016,245	93,400	143,177,451	65,459	113,225,621

주: 경주마권세는 2003년부터 레저세로 변경, 농지세는 2002년부터 농업소득세로 변경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개인사업자 소득탈루율 23.6%

평균 1억7000만원 탈루
세무검증제도 도입 추진

우리나라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액이 20%대에 달하면서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소득 1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은 70%에 달해, 탈루소득이 신고소득보다도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세월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국세청이 개인사업자 3335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은 23.6%로, 실제 소득금액의 76.4%만 자진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탈루액은 1억7000만원에 달했다.

소득 규모별로는 연수입이 1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의 소득탈루율이 68.3%에 달했고 이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가 4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4.6%, 10억원 초과~50억원 이하 35.2%, 50억원 초과 13.5%로 나타났다.

소득탈루 금액으로 보면 연수입 5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의 평균 탈루액은 5억4000만원이고 연수입 1억원 이하는 평균 1억1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연수입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122명이 신고한 소득은 60억원에 불과했으나 국세청 조사결과 결정된 소득은 189억원에 달했다. 결국 탈루소득이 129억원으로 신고소득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조세연구원 전병목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정부가 시행

하는 세월투명화 조치의 핵심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확대는 유효성이 낮아지고 비용부담(소득공제로 인한 세수감소)도 상당하다"며 "추가적인 세월투명화를 위해서는 세무조사 확대와 세무검증제도 도입 등 보다 직접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연수입 5억원이 넘는 변호사·의사·학원·유형주점 등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해 소득신고 전 세무대리인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경향신문 2010-08-10일자〉

한국 공기업 자산가치 OECD 2위

1천510억달러..고용 및 경제기여도는 최저 수준

우리나라 공기업의 자산가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6일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이 발간한 <공공기관 동향>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공기업 부문의 자산 가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2천190억달러)이었으며 우리나라가 1천510억달러, 프랑스가 1천160억달러, 이탈리아가 1천130억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

미국의 공기업 자산가치는 134억달러, 영국은 281억달러에 불과했다. 이는 국가 정책상 공기업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기업 가운데 정부가 과반수 지분을 소유한 상장기관은 우리나라가 8개를 보유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았고 핀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터키가 각각 3개씩이었다. 미국은 2개였다.

그러나 이들 상장 공기업의 시장가치는 프랑스가 1천 159억달러로 가장 컸고 노르웨이(632억달러), 일본(357억달러), 우리나라(280억달러) 순이었다. 프랑스 상장 공기업의 가치가 월등한 것은 EDF와 같은 초대형 공기업이 버티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 공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지만 고용 규모나 경제 기여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고용 규모로는 미국이 110만명으로 1위였으며 프랑스(89만9천명), 영국(39만명), 일본(33만8천명), 이탈리아(28만5천명)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고용 규모는 18만4천명에 불과했다.

조세연구원은 “미국 공기업의 경우 우정사업의 고용규모가 크고 최근 제너럴모터스(GM)가 공기업으로 재분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기업의 자산가치를 비교하면 멕시코가 62%로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 공기업 비중이 GDP의 20%를 넘는 회원국은 체코(24%), 노르웨이(22%), 핀란드(20%)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회원국은 GDP 대비 공기업의 비중이 평균 3%를 밑돌고 있다.

〈연합뉴스 2010-08-07일자〉

정책에도 조화의 리더십을

원윤희 /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우리 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의 터널을 빠르고 성공적으로 탈출했다. 올 상반기 실질성장률이 7.6%에 이르고

있으며 본격적인 확장국면에 진입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위험요인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남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를 아직도 느끼고 있는 유럽국가들은 위기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영국·독일·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긴축 노력들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고 경기를 다시 위축시키는 소위 더블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규제 철폐로 질적 성장 유도해야

한편 빠른 회복과 더불어 우리 경제는 여러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기업 부문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했고 주택시장의 침체와 불확실한 전망,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가 핵심 현안으로 제기됐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우리 정책 운용의 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다양하고 어려운 여러 정책목표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 간의 조화와 리더십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제기되는 여러 정책과제들을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고 인식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조화를 이뤄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와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당국자가 해야 할 임무다.

개인과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 창업활동이나 기업투자 등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경쟁에서 처진 참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충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재정운용 측면에서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정책목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발생 가능한 재정리스크를 적절하게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다. 특히 재정의 세출 부문 전반에서 광범위한 구조조정 노력이 요구되며 필요 이상으로 확대된 사업 등은 과감하게 덜어내야 한다.

단순한 공공지출의 확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가 민간간의 경제활력을 떨어뜨리고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사회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가 핵심과제

한편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저출산 및 노령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데 막대한 규모의 재정부담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낭비 없이 제공하는 효율적인 한국형 복지제도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세계적 경제위기의 급박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현시점에서 우리의 경제 및 재정 운용은 비상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뒤로 미뤄놓았던 현실의 정책과제들을 이제는 우선적인 현안과제로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과 그에 바탕을 두는 정책과제들을 합리적으로 조화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2010-08-05일자, 오피니언)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소득신고전 세무 검증 의무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소득 신고 전 세무사를 통해 세무 검증을 받아야 한다. 세무 검증이란 세무사를 통해 의무적으로 소득 내용을 사전적으로 확인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는 제도다.

법인사업자가 회계 감사를 받듯이 개인사업자도 사전 감사를 받게 하는 제도로 눈길을 끈다. 일정 소득 이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도입되며 회피 시 무신고가산세까지 부과될 전망이다. 특히 사후 세무조사를 통해 세무사가 부실하게 세무 검증을 한 사실이 발각되면 납세자는 물론 세무사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4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 검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은 오는 9일 정부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연소득이 3억원 또는 6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이 연소득 3억원 이상이면 약 4만명이 대상이 되며 6억원 이상이면 1만5000명 안팎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해 대상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이달 하순 발표할 세제개편안에서 정부 도입안을 확정 발표한 뒤 정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세무 검증 대상은 3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의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물론 유흥업소 산후조리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도매사업자, 개인 약사 등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문제였던 고소득층 세금 탈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재정건전성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성실 신고에 따른 세원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신고납세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스스로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탈루를 방지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세무사회와 이익단체들은 이 제도가 납세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제도 도입 시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납세자들은 세무사 검증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해 제도 도입 시 인센티브를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사전 신고 후 사후 세무사가 검증하는 제도로 충분하다”며 “이미 현금영수증제도를 통해 과표가 양성화하고 있는데 과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생각하는 세무사들의 반대 이유는 다르다. 정부는 세무사들이 특별히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데도 사후 책임을 지게 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윤희 조세연구위원장은 “세원 투명성이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거래 투명성 개선 여지가 많고 납세 순응도가 낮다”며 “기존 거래 정보 투명화를 위한 개선 노력과 납세자 개인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투명한 세무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9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릴 공청회에는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납세자연합회 등 각 이익단체 관계자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최종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매일경제신문 2010-08-05일자)

“소주·맥주 제조시설기준 완화 필요”

소주와 맥주의 제조 시설기준을 하향조정해 진입 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조세연구원 개최 주류 제조면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면허제 등 주류제조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면 경제적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위원은 단기적 개선방안으로 “국세청이 계속 제조면허 관련 행정을 담당하되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수십억원 정도의 자본으로도 소주와 맥주 제조시장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양한 종류의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첨가재료의 확대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그는 “과거 시설기준을 높이 설정했던 것은 국민경제의 자원배분이 주류 제조시장에 쏠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 때문이었으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현재로서는 이런 필요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중장기적 개선방안에 대해 “시설기준의 완화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발급 추이 등 시행성과를 검토하고서 주류 제조면허제도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중장기적 개편은 단기적 개편에 따른 효과가 미미해 성과를 얻지 못하면 보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알코올도수가 높은 증류주와 세수 비중이 높은 맥주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세원관리 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면허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의 주류면허 행정을 타 부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세원관리가 과세당국 고유의 업무이고 고도의 전문성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본원적 주류행정은 과세당국이 보유, 관리하는 것이 외국에서도 일반적”이라고 말해 국세청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연합뉴스 2010-7-29일자)

재정포럼

2010년 8월호 통권 제170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조명환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주임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10년 8월 16일 발행 / 제15권 제8호(통권 제170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송파라00035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해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